

- 적용 대상별,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CONTENTS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39)

☐ 금융·재정·조세 (63)

기획재정부 (49)

1.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공무원)	47
2.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공무원)	48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근로자)	49
4.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50
5.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농·림·어업인)	51
6.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농·림·어업인)	52
7.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농·림·어업인)	53
8.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의료기관)	54
9.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일반국민)	55
10.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일반국민)	56
11.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일반국민)	57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일반국민)	58
13.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일반국민)	59
14.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일반국민)	60
15.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61
16.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일반국민)	62
17.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63
18.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일반국민)	64
19.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일반국민)	65
20.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일반국민)	66
21.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일반국민)	67
2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일반국민)	68
23.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 (일반국민)	69
24.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일반국민)	70
25.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일반국민)	71
26.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 (일반국민)	72
27.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일반국민)	73
28.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일반국민)	74
29.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일반국민)	75

목차보는 Tip



30.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76
31.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일반국민)	77
32.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일반기업)	78
33.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일반기업)	79
34.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일반기업)	80
35.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일반기업)	81
3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일반기업)	82
37.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일반기업)	83
38.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일반기업)	84
3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85
40.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86
41.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87
42.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88
4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90
44.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92
45.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93
46.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94
47.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지자체 및 공공기관)	95
48.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지자체 및 공공기관)	96
49.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97
법무부 (2)	
1.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98
2.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99
2. 10 -12 1 2 2 1/02 2 -1 (11 1 10)	,,
문화체육관광부 (1)	
1.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기업)	100
산업통상자원부 (1)	
1.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01
1. 4111 ± 0±, 241 ± 04 (0± 02/18/±002±48)/	101
국토교통부 (5)	
1 <u>1</u> 110	
1.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이상(19세 이상))	102
2.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이상(19세 이상))	103
3.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청년이상(19세 이상))	104
4.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 (청년이상(19세 이상))	105
5. 두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06

국세청 (2)

1.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전연령) 2.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전연령)			10 10
조달청 (2)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사회적책임 강화 (일반기업)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최저임금 위반자 입찰평가 감점 (일반기업) 	109 110		
방송통신위원회 (1)			
- 1.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청년이상(19세 이상))	111		

02 교육(4)

교육부 (4)

1.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영유아 및 아동(0세~7세))	115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아동 이상(6세 이상))	116
3.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아동~청소년(6세~19세))	117
4. 중·고등학교에「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청소년(13세~18세))	118

3 여성·육아·보육 (21)

법무부 (1)

업무무 (1)	
1.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가능 간이한 절차 마련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22
보건복지부 (3)	
1.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0~5세))	123
2.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영유아(0~5세))	124
3.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125
고용노동부 (2)	
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근로자)	126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통상임금 60→80%) 인상 (근로자)	127

목차보는 Tip



여성가족부 (14)

1.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청소년(13세~18세))

2.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청소년(13세~18세))	129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청소년(13세~18세))	130
4.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청소년(13세~18세))	131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청소년(13세~18세))	132
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청년이상(19세 이상))	133
7. 여성 고위공무원단·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청년~중장년(19세~64세))	134
8.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본격 운영 (청년~중장년(19세~64세))	135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중장년 이상)	136
1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전연령)	137
1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38
12.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39
13.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40
14.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41
방송통신위원회 (1)	
1. 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 (일반국민)	142
통일부 (1)	1/5
1.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45
행정안전부 (1)	
1. 휴지통 없애기 등으로 더욱 쾌적해진 화장실 (일반국민)	146
다리테O고나다 (4)	
문화체육관광부 (1)	
1.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147
보건복지부 (12)	
1.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전연령)	148
2. 입양, 장애 호전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전연령)	149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근로자)	150
4.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전공의)	152
5.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53

128

6.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54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55
8.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56
9.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57
10.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58
11.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치매어른신과 가족)	159
12.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치매어르신과 가족)	160
국토교통부 (1)	
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61
해양수산부 (1)	
1.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62
식품의약품안전처 (3)	
4 0140 0 0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0
1.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전연령)	163
2.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전연령)	164
3.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의료기관)	165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적용대상별,생애 주기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 국민, 경찰, 연구자가 함께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일반국민)	169
2.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정보보호서비스 개발기업)	170
행정안전부 (1)	
1. 전기자전거 '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 (일반국민)	171
고용노동부 (1)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일반기업)	172
기상청 (3)	
1. 상세한 해구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일반국민)	174

175

176

2.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지자체 및 공공기관)

3.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개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경찰청 (1)

020(1)	
l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일반국민)	177
공정거래위원회 (4)	
1.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심사 간이화 (일반기업) 2.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일반기업) 3.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일반기업) 4.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본격 운영 개시 (일반기업)	179 180 181 182
06 국방 · 병무 (20) 국방부 (10)	
I.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 발급('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군인)	185
2.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 (군인)	186
3.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 (군인)	187
1. 양성평등 차원의 여군 인사관리 개선 (군인)	188
5.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군인)	189
S.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 (군인)	190
7.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군인)	191
3.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 (군인)	192
).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군인)	193
0. 예비군훈련보상비 인상 (군인)	194
국가보훈처 (5)	
· .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95
l.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96
2.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97
3.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98
1. 태극·을지무공수훈자「대통령 위문품」 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99
병무청 (3)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전까지 송달(군인)	200
2.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 (군인)	201
3.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공무원)	202

방위산업청 (2)

1.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방위산업체)	203
2.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 (방위산업체)	204

07 일반공공행정 (33)

외교부 (2)

1 1 (-)	
1.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일반국민) 2. 거주여권 제도 폐지 (일반국민)	208 209
행정안전부 (3)	
1.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 (근로자)	210
2.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도 시행 (일반국민)	211
3.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12
문화체육관광부 (1)	
1.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13
고용노동부 (22)	
1.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근로자)	214
2.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근로자)	215
3.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근로자)	216
4.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자)	217
5.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근로자)	218
6.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일반기업)	219
7.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일반기업)	220
8.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일반기업)	221
9.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일반기업)	222
1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	223
11.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일반기업)	224
12.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25
13.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26
1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27
15.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28
16.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29

17.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230

목차보는 Tip



18.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31
19.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32
20.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33
21.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중장년 이상)	234
22.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중장년 이상)	235
통계청 (1)	
1.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공무원)	236
기상청 (1)	
1.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www.weather.go.kr)" 제공 (일반국민)	237
HLAF LIGIO (A)	
방송통신위원회 (2)	
1.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일반국민)	238
2. 해외로밍 제도 개선 (일반국민)	239
국민권익위원회 (1)	
1.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전연령)	240
8 농림·해양·수산 (40)	
농림축산식품부 (24)	
1.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아동(6세~12세))	245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청년이상(19세 이상))	246
3.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청년이상(19세 이상))	247
4.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청년~중년(18세 이상~39세 이하))	248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청년~중장년(19세~64세))	249
6.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농·림·어업인)	250
7.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농·림·어업인)	251
8.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농·림·어업인)	252
9.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농·림·어업인)	253
10.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농·림·어업인)	254
11.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농·림·어업인) 12.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농·림·어업인)	255
12. 숙산사당 무신인식성시(GPS) 등녹대성 확대 (동·림·어업인) 13.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림·어업인)	256 257
19. ㅇㄱㄹ에에프럼 네이ద국 츳 포이리지 럭네(ㅎ'럼'어답면	23/

258

14.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농·림·어업인)

1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농·림·어업인)	259
16.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농·림·어업인)	260
17.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농·림·어업인)	261
1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일반기업)	262
19.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63
20.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64
21.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66
22.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67
23.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68
24.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69
해양수산부 (7)	
1.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이상(19세 이상))	270
2.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예선제도 개선 (중장년(30세~65세))	271
3.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중장년(30세~65세))	272
4.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농·림·어업인)	273
5.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농·림·어업인)	274
6. 수산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 상향 (농·림·어업인)	275
7.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76
산림청 (9)	
1.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청년이상(19세 이상))	277
2. 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 (청년이상(19세 이상))	278
3.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청년이상(19세 이상))	279
4.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청년이상(19세 이상))	280
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청년이상(19세 이상))	281
6. 귀산촌인 창업자금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 (농·림·어업인)	282
7.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신설 (농·림·어업인)	283
8. 사지과리번 살이 시고 등 스리 가즈제 도인 (일반군미)	28/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적용대상별,생애 주기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09 국토개발 (3)

9.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3)

1.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이상(19세 이상))	289
2. 항공사진 해상도 25㎝급 전국공개 확대(전연령)	290
3.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전연령)	291

285

10 산업 · 에너지 · 자원 (6)

중소벤처기업부 (5)

	295
2. 정책자금에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신설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96
4. 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기업 집중 육성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97
5. 중소기업 R&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99
6. 소상공인 교육 상시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300
산업통상자원부 (1)	
1. 보일러,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실시 (일반기업)	301

1 1 환경 (16)

환경부 (15)

해양수산부 (1)

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및 아동(0세~7세))	306
2.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명령 및	307
과징금 부과율(3%→5%)과 상한액 상향(100억→500억) (청년이상(19세이상))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청년이상(19세이상))	308
4.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 (청년이상(19세이상))	309
5.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의무화(청년이상(19세이상))	310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청년이상(19세이상))	311
7.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 (청년이상(19세이상))	312
8.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청년이상(19세이상))	313
9.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 신설 (청년이상(19세이상))	314
10.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 (청년이상(19세이상))	315
11.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청년이상(19세이상))	316
12.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청년이상(19세이상))	317
13.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공공기관)	318
14.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 (일반국민)	319
15.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 (일반국민)	320

12 문화재(1)

문화재청 (1)

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 신고 의무화 (일반국민)

325

목차보는 Tip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80)

공공기관 (1) 환경부 (1) 1.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318 **공무원** (4) 기획재정부(2) 1.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47 2.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48 통계청 (1) 1.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236 병무청 (1) 1.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202 군인 (12) 국방부 (10) 1.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 발급('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185 2.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 186 3.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 187 4. 양성평등 차원의 여군 인사관리 개선 188 5.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 189 6.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 190 7.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191 8.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 192 9.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193

194

10. 예비군훈련보상비 인상

병무청 (2)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전까지 송달 2.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	200 201
근로자 (11)	
기획재정부 (2)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49 50
행정안전부 (1)	
1.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	210
보건복지부 (1)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고용노동부 (7)	150
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126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통상임금 60→80%) 인상	127
3.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4.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214 215
4. 1년 미원자 및 육이유역자에 대한 원자유가 확대 5.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216
6.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217
7.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218
농 · 림 · 어업인 (20)	
기획재정부 (3)	
1.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50
2.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51
3.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53

목차보는 Tip



농림축산식품부 (12)

1.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250
2.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251
3.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252
4.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253
5.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254
6.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255
7.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256
8.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257
9.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258
1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259
11.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260
12.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261
해양수산부 (3)	
1.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273
2.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274
3. 수산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 상향	275
산림청 (2)	
1. 귀산촌인 창업자금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	282
2.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신설	283
2. 1112 00.411(0.41) 22	250
방위산업체 (2)	
방위산업청 (2)	
1.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203
2.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	204
	20-1
의료기관 (2)	

기획재정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미나이타크	제ㅈㅂ더	사용까지	치그내여	저사버고	기해
Ι.	미代뉴	제소무디	시유까시	쉬랍내역	신산모고	시앤

165

209

일반국민 (39)

기획재정부 (23)

2. 거주여권 제도 폐지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55
2.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56
3.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57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58
5.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59
6.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60
7.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1
8.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62
9.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3
10.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64
1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65
12.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66
13.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	67
1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68
15.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	69
16.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70
17.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71
18.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	72
19.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73
20.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74
21.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75
22.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76
23.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국민, 경찰, 연구자가 함께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169
외교부 (2)	
	208

목차보는 Tip



행정안전부 (3)	
 전기자전거 '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 휴지통 없애기 등으로 더욱 쾌적해진 화장실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도 시행 	171 146 211
환경부 (2)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 	319 320
경찰청 (1)	
1.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177
문화재청 (1)	
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 신고 의무화	325
산림청 (1)	
1.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	284
기상청 (2)	
1.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www.weather.go.kr)" 제공 2. 상세한 해구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237 174
방송통신위원회 (3)	
1.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2. 해외로밍 제도 개선	238
3. 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	142
일반기업 (24)	
기획재정부 (7)	
1.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2.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3.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78 79 80 81 82

6.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7.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	
1.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100
농림축산식품부 (1)	
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262
산업통상자원부 (1)	
1. 보일러,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실시	301
고용노동부 (7)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2.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219 220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221 222
5.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23
6.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224
7.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172
해양수산부 (1)	
1.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321
조달청 (2)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사회적책임 강화	109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최저임금 위반자 입찰평가 감점	110
공정거래위원회 (4)	
1.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심사 간이화	179
2.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180
3.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181

182

4.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본격 운영 개시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적용대상별,생애 주기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전공의 (1)

보건복지부 (1)	
1.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152
정보보호서비스 개발기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170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7)	
기획재정부 (8)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85
2.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3.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86 87
4.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88
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90
6.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92
7.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93
8.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94
법무부 (1)	
1.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98
문화체육관광부 (1)	
1.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213
농림축산식품부 (5)	
1.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263
2.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264

266

267

268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5.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4.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1) 1.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 101 보건복지부(1) 1.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153 고용노동부 (4) 1.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25 2.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226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227 4.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228 해양수산부 (1) 1.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276 중소벤처기업부 (5) 1.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95 2. 정책자금에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신설 296 3. 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기업 집중 육성 297 4. 중소기업 R&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 299 5. 소상공인 교육 상시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300 지자체 및 공공기관 (5) 기획재정부 (2)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95 2.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96

125

285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적용대상별,생애 주기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1)

산림청 (1)

1.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1.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기상청 (1)

1.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9)	
기획재정부 (1)	
1.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97
통일부 (1)	
1.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	145
법무부 (2)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가능 간이한 절차 마련 	99 122
행정안전부 (1)	
1.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212
농림축산식품부 (1)	
1.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269
보건복지부 (5)	
1.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154 155 156
4.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5.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157
	158
고용노동부 (5)	
1.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2.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229
2. 프니센서, 시약인급기업사 중 고용모임 미역중사에 대한 역업문인 사원 확대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230
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232
5.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233

175

여성가족부 (4)

10 111 (1)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 2.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3.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4.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138 139 140 14
국토교통부 (2)	
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 두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	16 ⁻ 10 <i>0</i>
해양수산부 (1)	
1.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162
국가보훈처 (5)	
1.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195
2.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	190
3.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195
4.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198
5. 태극·을지무공수훈자「대통령 위문품」 지원 확대	199
기상청 (1)	
1.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개시	176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적용대상별,생애 주기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치매어른신과 가족 (2)

보건복지부 (2)

1.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159
2.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160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59)

영유아(0세~5세) (2)

보건복지부 (2)	
1.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123 124
영유아 및 아동(0세~7세) (2)	
교육부 (1)	
1.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115
환경부 (1)	
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306
아동 이상(6세 이상) (1)	
아동 이상(6세 이상) (1) 교육부(1)	
	116
교육부 (1)	110
교육부 (1)	116
교육부 (1) 1.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110
교육부 (1) 1.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아동(6세~12세) (1)	245
교육부 (1) 1.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아동(6세~12세) (1) 농림축산식품부 (1)	

교육부 (1)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1)

문화체육관광부 (1)

청소년(13세~18세) (6)

1. 중·고등학교에「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교육부 (1)

여성가족부 (5)	
1.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128
2.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129

118

317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130

 4.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131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132

청년이상(19세 이상) (26)

농림축산식품부 (2)

11.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246
2	이스 창언·경영 역량 가하 지워	247

환경부 (11)

1.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명령 및	307
과징금 부과율(3%→5%)과 상한액 상향(100억→500억)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308
3.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	309
4.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의무화	310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311
6.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	312
7.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313
8.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 신설	314
9.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	315
10.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316

목차보는 Tip



여성가족부 (1)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133
국토교통부 (5)	
1.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289
2.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102
3.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103
4.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104
5.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	105
해양수산부 (1)	
1.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270
산림청 (5)	
1.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277
2. 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	278
3.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279
4.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280
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28′
방 송통 신위원회 (1)	
1.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111
청년~중년(18세 이상~39세 이하) (1)	
농림축산식품부 (1)	
1.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248
청년~중장년(19세~64세) (3)	
농림축산식품부 (1)	

249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여성가족부 (2)	
1. 여성 고위공무원단·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2.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본격 운영	134 135
중장년 이상 (3)	
여성가족부 (1)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136
고용노동부 (2)	
1.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2.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234 235
중장년(30세~65세) (2)	
해양수산부 (2)	
1.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예선제도 개선 2.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271 272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적용대상별,생애 주기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전연령 (10)

2.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2)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확대 입양, 장애 호전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148 149
여성가족부 (1)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137
국토교통부 (2)	
1.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전국공개 확대	290

291

식품의약품안전처 (2)

,	
1.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2.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163 164
국세청 (2)	
1.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2.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107 108
국민권익위원회 (1)	
1.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240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39)

기획재정부 (49)

금융·재정·조세 (49)

1.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78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85
3.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86
4.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87
5.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88
6.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90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55
8.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49
9.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50
10.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97
11.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79
12.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80
1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81
14.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56
15.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57
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58
17.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59
18.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60
19.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1
20.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62
21.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51
22.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52
2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3
2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64
25.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65
26.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92
27.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53
28.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93
2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82
30.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66
3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95
32.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83
33.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	67
3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68
35.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	69

목차보는 Tip



36.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37.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38.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39.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40.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 41.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42.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43.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44.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45.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46.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47.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8.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49.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70 71 47 48 72 73 74 75 84 54 94 76 96
교육 (4)	
1.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117
2.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3.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115 116
4. 중·고등학교에「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공공안전 및 질서 (2)	
1. 국민, 경찰, 연구자가 함께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169
2.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170
외교부 (2)	
일반공공행정 (2)	
1.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208
2. 거주여권 제도 폐지	209

통일부 (1)

보건, 사회복지 (1)

1.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

145

법무부(3)

금융·재정·조세 (2)

1. 전자어음 죄장만기 단계적 단축	

2.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98 99

여성·육아·보육 (1)

1.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가능 간이한 절차 마련 122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적용대상별,생애 주기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국방부 (10)

국방·병무 (10)

1.	성실한 군 목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 말급('선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내제)	185
2.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	186
3.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	187
4.	양성평등 차원의 여군 인사관리 개선	188
5.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	189
6.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	190
7.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191
8.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	192
9.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193
10). 예비군훈련보상비 인상	194

행정안전부 (5)

공공안전 및 질서 (1)

1. 전기자전거 '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

보건·사회복지 (1)	
1. 휴지통 없애기 등으로 더욱 쾌적해진 화장실	146
일반 공공 행정 (3)	
1.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	210
2.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도 시행	211
3.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212
문화체육관광부 (3)	
금융·재정·조세 (1)	
1.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100
보건·사회복지 (1)	
1.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147
일반공공행정 (1)	
1.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213
농림축산식품부 (24)	
농림·해양·수산 (24)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249
2.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3.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245 250
4.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251
5.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252
6.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253
7.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8.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248 254
9.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255
10.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269
11.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12.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263 264
1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264

14.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256
15.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257
16.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258
17.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247
18.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259
19.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266
20.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260
21.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267
22.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268
23.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262
24.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261

산업통상자원부 (2)

금융·재정·조세 (1)

1.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	101

산업·에너지·자원 (1)

1	보익러	<u> 안려요기</u>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이 토보 5	민 조사 신시	l 30 ⁻	1
١.	포글니,	1101	등 급시네하기기	기끄러 공포 :	친구에 크게	30	ı

보건복지부 (15)

보건·사회복지 (12)

1.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154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155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156
4.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157
5.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152
6.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153
7.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159
8.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확대	148
9.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158
1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150
11.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160
12 인양 자애 중제시 으조여그 시면이 아니 제지로 벼겨	1/.0

목차보는 Tip



여성·육아·보육 (3)

1.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3
2.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124
3.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125
5.7 H (4.5)	
환경부 (15)	
환경 (15)	
1.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명령 및	307
과징금 부과율(3%→5%)과 상한액 상향(100억→500억)	00.
2.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306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308
4.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	309
5.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의무화	310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311
7.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	312
8.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313
9.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318
10.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 신설	314
11.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	315
12.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316
13.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317
14.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	319
15.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	320
781 FH (25)	
고용노동부 (25)	
공공안전 및 질서 (1)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172
여성·육아·보육 (2)	
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126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통상임금 60→80%) 인상	127

일반공공행정 (22)

1.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25
2.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214
3.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215
4.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216
5.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226
6.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217
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227
8.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229
9.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230
10.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234
1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219
12.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235
1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231
1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232
15.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220
16.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221
17.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222
18.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23
19.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218
20.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224
21.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233
22.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228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적용대상별,생애 주기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14)

여성·육아·보육 (14)

1. 여성 고위공무원단·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134
2.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128
3.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129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	138
5.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135
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130
7.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131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132
9.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137
10.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139
11.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140
12.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141

13.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133
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136
국토교통부 (9)	
국토개발 (3)	
1.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289
2. 항공사진 해상도 25㎝급 전국공개 확대	290
3.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291
금융·재정·조세 (5)	
1.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102
2.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103
3.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104
4.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	105
5. 두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	106
보건·사회복지 (1)	
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161
해양수산부 (9)	
농림·해양·수산 (7)	
1.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270
2.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273
3.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274
4.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276
5.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예선제도 개선	271
6.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272
7. 수산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 상향	275
보건·사회복지 (1)	
1.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162

환경 (1)	
1.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321
중소벤처기업부 (5)	
산업·에너지·자원 (5)	
 1.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 정책자금에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신설 3. 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기업 집중 육성 4. 중소기업 R&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 5. 소상공인 교육 상시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295 296 297 299 300
국가보훈처 (5) 국방·병무 (5)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태극·을지무공수훈자「대통령 위문품」지원 확대 	195 19 <i>6</i> 197 198 199
식품의약품안전처 (3)	
보건·사회복지 (3)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163 164 165
국세청 (2)	

107

108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적용대상별,생애 주기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금융·재정·조세 (2)

1.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2.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조달청 (2)

1.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금융·재정·조세 (2)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사회적책임 강화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최저임금 위반자 입찰평가 감점	109 110
통계청 (1)	
일반 공공 행정 (1)	
1.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236
병무청 (3)	
국방·병무 (3)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전까지 송달 2.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 3.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200 207 202
방위산업청 (2)	
국방·병무 (2)	
1.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2.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	202 204
경찰청 (1)	
공공 안전 및 질서 (1)	

177

문화재청 (1)

문화재 (1)

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 신고 의무화	32
------------------------------	----

산림청 (9)

농림·해양·수산 (9)

1.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285
2.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277
3.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	284
4.	귀산촌인 창업자금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	282
5.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신설	283
6.	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	278
7.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279
8.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280
9.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281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적용대상별,생애 주기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기상청 (4)

공공안전 및 질서 (3)

1.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175
2. 상세한 해구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174
3.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개시	176
일반 공공 행정 (1)	
1.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www.weather.go.kr)" 제공	237

방송통신위원회 (4)

금융·재정·조세 (1)

1.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여성·육아·보육 (1)	
1. 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	142
일반공공행정 (2)	
1.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2. 해외로밍 제도 개선	238 239
공정거래위원회 (4)	
공공안전 및 질서 (4)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심사 간이화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179 180 181
4.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본격 운영 개시	182
국민권익위원회 (1)	
일반공공행정 (1)	
1.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240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1. 금융·재정·조세
- 2. 교육
- 3. 여성·육아·보육
- 4. 보건·사회복지
- 5. 공공안전 및 질서
- 6. 국방·병무
- 7. 일반공공행정
- 8. 농림·해양·수산
- 9. 국토개발
- 10. 산업·에너지·자원
- 11. 환경
- 12. 문화재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조달청

방송통신위원회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기획재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Sefore After 소득세 최고세율 소득세 최고세율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2 기획재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시행일: 2018.1.1.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9.1.1.)

Before After

신설



3 기획재정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일: 201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Before



After



기획재정부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Before



After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6 법무부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시행일: 2018년 5월 30일

Before



After



7 법무부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Before



After



8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
세행일**: 2018년 1월

Before

디딤돌대출 이용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 대상 우대금리 0.2%p 지원

After

생애최초 주택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최대 0.55%p 우대금리 적용 (2.05~2.95%p→1.70~2.75%p)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9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Before

-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
- · 수도권 1.4억원, 수도권 외 1.0억원 한도 내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
- · 우대금리 0.7%p 적용



After

-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 · 대출비율 10% 확대(70% → 80%) ·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수도권 1.4억→1.7억)
- · 최대 1.1%p 우대금리 적용(1.6~2.2%p→1.2~2.1%p)



10 국토교통부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 시행일: 2018년 1월

Before

버팀목전세 단독세대주 : 만 25세 이상 월세대출 : 월 30만원 대출 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



After

버팀목전세 단독세대주 : 만 19세 이상~25세 미만 주거안정 월세대출 : 월 40만원 대출 연장 시 대출잔액의 10%를 상환(우대형 한정)



11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Before



After

신용카드를 활용, 인터넷상 본인확인 가능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세관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징계절차에서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가 금이 부과될 수 있음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납세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 추진배경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의 청렴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가능
 - 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거나 변상책임 등 이행한 경우 감면 가능
 - 납부기간 내에 징계부과금 미납 시.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
 - ②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하여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 부과
 - 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은 경우 과태료 미부과 또는 부과 취소
- 시행일 2018.1.1.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납세자는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됨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결정서 주문의 범위 내에서 재조사 가능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 추진배경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간 부정·비리 방지

- 주요내용 ①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관세 수시 조사 가능
 - ② 불복청구 절차에서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서 주문 범위 내에서 재조사 가능
 - ③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재조사 가능
- 시행일 2018.1.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7)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 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도 한도 폐지

>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시행일 2018.1.1.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7)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 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한도 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내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추진배경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

① (공제율)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30%→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 30% (신설)

② (공제한도) 200~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100만원 추가

• 시행일 (전통시장 등) 2018.1.1. (도서·공연비) 2018.7.1.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하여 8년간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 니다.

혀 행 〈신 설〉

개 정

●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 100%
- (적용대상)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
 - *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육상양식장 토지 등
- (감면한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적용기한) '20.12.31.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추진배경 어업인 경영 지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등을 고려

• 주요내용 감면율 100%, 감면한도 1년 1억원(5년 2억원), 적용기한 '20.12.31.까지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현 행 〈신 설〉



개 정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 (감면율)

자경 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시행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추진배경 어업인 경영 지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등을 고려

• **주요내용** 감면율 100%, 감면한도 1년 1억원(5년 2억원), 적용기한 '20.12.31.까지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영농·영어 승계 지원을 위해 어업용토지(40,000㎡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 이내) 에 대해서도 증여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증여자·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현 행

농지, 초지, 산림지 등

개 정

농지, 초지, 산림지 등 + 어업용토지, 어선, 어업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영농·영어승계 지원

① 현행: 농지(40,000m² 이내), 초지(148,500m² 이내), 산림지(297,000m² 이내) 등 • 주요내용

② 개정: 위 농지, 초지, 산림지 이외 어업용토지(40,000m²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m² 이내) 추가

• 시행일 2018.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 받는 기관이 확대됩니다.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관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현 행

일부 연구중심병원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



개 정

모든 연구중심병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 등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 추진배경 의료 관련 연구개발 지원

• 주요내용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 기관 확대

- 현행 대상 : 일부 연구중심병원(학교법인, 특수법인) 등

- 개정 대상: 모든 연구중심병원(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 등

• 시행일 2018. 2월 중(잠정,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6)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추진배경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

• 주요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

〈종전〉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
4,600~8,800만원	24%	_	4,
8,800~1억5천만원	35%	7	8,
1억5천만원~5억원	38%		1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3억원	38%
-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개정〉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1)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나,
 -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 추진배경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종전	개정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0/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0%	25%

• 시행일 2018.1.1.(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9.1.1.)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2)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엔젤투자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출자시 소득공제 혜택을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였으며,

현 행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개 정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기술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추진배경 혁신창업 활성화

• 주요내용 ①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현행〉			〈수정안〉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	3천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5천만원 초과분	30%

- ② (투자대상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을 추가
 -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선합니다.

- (세제 지원 확대) 일반적인 경우 만기 인출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400 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 농어민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소득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중도인출허용)
 -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가입 기한) '18.12.31.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제도 개선 • 추진배경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①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형) 현행한도(200만원) 유지

- (서민형) 250만원 → 4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②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가입기한** '18.12.31.까지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경농지 감면 사례 등을 감안하여 면적한도 요건을 폐지하되. 감면한도를 5년간 3억원에서 2억으로 축소 되며.

현 행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 *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신설〉



개 정

- (좌 동)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 시행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 추진배경 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

• 주요내용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 감안을 위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3억원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정비 대상

근거조항	감면내용
조특법 §66,67,68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조특법 §69, 69의2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조특법 §77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 시행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 추진배경 '16.1.1.부터 연간 감면한도를 축소한 점, 비과세·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고려

• 주요내용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정비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0년말까지 연장됩니다.

현 행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매수청구·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한 토지
 -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년 내 공익 수용된 토지 포함
- ⊙ (적용기한) '17.12.31.

■ 시행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 정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 (적용기한) '20.12.3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고려한 감면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

•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 세가 중과됩니다.

- *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기본세율(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 (시행일)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
 - (시행일)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시행일)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 **추진배경** '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 주요내용 '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시행일** ① (분양권 중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다주택자 중과):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서민 주거 안정,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등을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말까지 연장합니다.

혀 행

●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의무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 제한규제가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
 - ·준공공: 1호 이상 임대
 - ·기업형: 100호 이상 임대
- (감면대상) '15.1.1.이후 신규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주택
- (감면요건) 85m²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 (적용기한) '17.12.31.까지 취득분



개 정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18.12.31.까지 취득분

■ 시행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서민 주거 안정,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

• 주요내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18.12.31.까지 연장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현 행

'18년 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
'19년 이후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추진배경 공제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신공세액공제 공제율

- 현행 : 공제율 7%

- 개정 : ('18년) 공제율 5%, ('19년 이후) 공제율 3%

• 시행일 2018.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 요건을 추가하였 습니다.

-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이외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 공시대상 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하였습니다.
-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현 행

- ⊙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40%)×(주식보유비율-10%)



개 정

- ⊙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
-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추진배경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 주요내용
- ① (적용요건 추가)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 기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 ② (계산방법 변경)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차감율을 15%→5% 및 40%→20%로, 주식보유비율 차감율을 각각 3%→0% 및 10%→5%로 줄여 증여세 과세 강화
- 시행일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확대합니다.

현 행

적용기한('17.12.31.), 감면한도 200만원



개 정

적용기한('20.12.31.), 감면한도 300만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 추진배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 시행일 '18.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허위의 납세의무자를 내세워 관세 포탈·면탈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포탈·면탈 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강화됩니다.

-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포탈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대납세의무 강화
 -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 가산세 등 연대하여 납부 의무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 • 추진배경 세액 포탈행위 방지 및 성실납세신고 유도

①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 • 주요내용

-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② 관세포탈·부정감면의 경우 공범 등에게 연대납세의무 부과
 - 적용: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지 않고, 관세포탈·부정 감면 범죄 유죄 확정된 경우
 - 연대납세의무자: 수입신고인,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예외 : 범칙행위로 인한 이득이 없는 자는 제외
- 시행일 2018.1.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체납 세액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 및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적사항과 체납액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체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체납세액에 대한 자진납세 유도 및 효율적인 징수권 확보

• **주요내용** 공개 대상이 되는 체납액 하향 조정 : 3억 원 ⇒ 2억 원

• 시행일 2018.1.1.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해야 하는 밀수출 우려 물품을 수출하면서,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

• 추진배경 보세구역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법(§243*)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 한 자

-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밀수출 우려 등 감시단속이 필요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함

• 시행일 2018.1.1.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 하는 범칙사건이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범칙 사건 확대
 -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 사건 ⇒ 모든 관세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 강화

• 주요내용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범칙사건 확대

- 기존 :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 사건

- 개선 : 관세법상 모든 범칙사건

※ 환특법상 부정환급, 소요량계산서 허위 작성, 기납증 또는 분증 부정발급 등 화특법위반 사범 포함

• 시행일 2018.1.1.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된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주소도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출대상이 확대됩니다.

- 당초 목록통관 대상이었으나 일반 수입신고한 물품
 -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배송되는 경우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 추진배경 소액 특송물품의 부정수입 및 세액탈루 방지

• 주요내용 일반 수입신고한 탁송품이 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주소와 다른 곳에 배송된 경우

-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

• 시행일 2018.1.1.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등 관세법 상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게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공무원 의제 대상 위원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 위원회,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
- 적용 되는 형법상 벌칙
 - 공무상 비밀 누설(제127조), 수뢰·사전 수뢰(제129조), 제3자 뇌물 제공(제130조), 수뢰 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제131조), 알선 수뢰(제132조)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

• 추진배경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 주요내용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 추가

- 관세체납정리위원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관세심사 위원회·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원산지확인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시행일 2018.1.1.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는 해외 카드 사용 내역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제출 주기도 단축됩니다.

■ 제출대상

현 행 개 정 '물품 구매액 + 인출 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5천 달러 이상 건당 600달러 이상

■ 제출 주기

현 행	개정
매분기 다음 달 말일	실시간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원활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 주요내용 해외 카드 사용 내역 확대 및 제출 주기 단축

- 제출 대상 :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인 경우

- 제출 주기 : 실시간

• 시행일 2018.2.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44-215-4453)

국세당국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관세 과세가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따라 소급 적용한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청구 기간 확대 •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주요내용 ① 경정청구 기간 확대

- 현행: 세액의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일로부터 2개월 - 개정: 세액의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일로부터 3개월

② 적용대상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 및 세액경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따라 소급 적용한 거래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시행일 2018.1.1.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44-215-445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의 제기 기간이 신설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
 - 과세가격 = 국내판매가격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또는 수수료 + 수입국 운임·보험료 + 수입국 조세 및 공과금)
 - * 동종·동류 비율: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인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에 대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비율. (동종·동류 비율을 적용하여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 추진배경 과세가격 조기 확정으로 명확성 제고

• 주요내용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 현행: 납세의무자의 이의제기 기간 규정 없음

- 개정 : 동종·동류비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시행일 2018.2.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금지금 시장의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거래소 거래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됩니다.

현행 적용기한
'17. 12. 31.까지
'19. 12. 31.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금지금 시장의 양성화 지원

• 주요내용 금거래소 거래용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 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 시행일 2018. 1. 1.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422)

종전 거주국(우리나라)·이주국간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한 자가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예: 이민)하는 경우 국내주식을 국외 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세율: 20%)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종전 거주국(우리나라)·이주국간 과세권의 합리적 배분 및 조세회피 방지 • 추진배경
- 주요내용 ①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비상장)
 - ② (납세의무자)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이민 등)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 i)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 ii) 국내주식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
 - * (상장주식)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비상장주식) 일반 양도세율 (20%) 적용대상인 대주주
 - ③ (과세표준) 국외전출일 당시의 국내주식 등의 시가
 - ④ (세율) 20%(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 ⑤ (신고·납부)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며, 무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일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주요내용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현행		
공제 (1년간) *다른 고용· ^토	투자지원 제도	드와 중복 배제	- , , , , , , , , , , , , , , , , , , ,
⊙ 청년정규직 :	고용시 정액 등	공제 (1년간)	
중소	중견	대기업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공제 (1년간) *다른 고용·• ③ 공제한도: 상 ③ 청년정규직 -	공제 (1년간)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 ③ 공제한도: 상시근로자 증: ③ 청년정규직 고용시 정액 등 중소 중견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배저 ② 공제한도: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1,00 ② 청년정규직 고용시 정액 공제 (1년간) 중소 중견 대기업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추진배경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 확대

• 주요내용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인원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적용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구분	중소 (2년간)	중견	대기업
(단위:만원)	수도권	지방	(2년간)	(1년간)
상시근로자	700 (1,400)	770 (1,540)	450 (900)	-
청년정규직, 장애인등	1,000 (2,000)	1,100 (2,200)	700 (1,400)	300 (300)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여력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 과거 법인세율 인하 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 적용 기준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며,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 추진배경

구조적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확충 등

• 주요내용

과표	세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현행〉

〈개정〉

과표	세율
0~2억원	(좌동)
2~200억원	(좌동)
200~3,000억원	(좌동)
3,000억원 초과	25%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4)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됩니다.

- 이에 따라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되며.
 -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병* 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분할도 동일하게 적용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 추진배경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 주요내용 ①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②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에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흑자 전환 기업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연간 공제한도가 축소됩니다.

-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가 2018년 귀속부터는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부터는 6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다만,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현행 기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 *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100%
- 개정내용은 공제한도 70%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60%는 2019년 1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추진배경 흑자 전환 기업의 세부담 강화
- ①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를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18년 • 주요내용 귀속분은 70%로, 19년 귀소분은 60%로 축소
 - ② 중소기업은 현행 기준 유지
- 시행일 (70%)2018년 1월 1일. (60%)2019년 1월 1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고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됩니다.

- 기존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 사업자가 당초 수입 신고시 물품 가액 등을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경미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입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후 5년이내 또는 경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26의2)과 동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제고

• 주요내용 세관장의 관세조사 등 실시 후 부가가치세 경정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다만, 당초 신고시 납세자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나 경미한

과실인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 당초: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 변경: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맥주의 재료범위를 확대합니다.

현 행 개 정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를 제조 가능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 맥주의 원료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 • 추진배경
- 주요내용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 '18.1.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44-215-4453)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범위가 다음과 같이 일부 확대됩니다.

- 세관장이 요구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간 '내부 가격결정자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가격산출 내역을 포함하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국세 당국에 제출하는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가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 추진배경 특수관계자 과세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합리화

• 주요내용 ① 내부가격 결정자료 범위 명확화

- 현행 : 내부가격 결정자료

- 개정 : 수입물품 가격산출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②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추가

• 시행일 2018.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액을 확대하였습니다.

- 적용요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 (중견기업)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 고용유지기간: 2년
- 적용기한 : 2018.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 주요내용 ① 적용요건 :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 ②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 (중견기업)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 ③ 고용유지기간: 2년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대상 근로자: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 적용기한: 2018.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중소기업의 사회 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대상 근로자: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③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④ 적용기한: 2018.12.31.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공제율 인상(중소 10%→30%, 중견 15%)
 -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중소 10%→ 30%, 중견 15%)
 - *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 적용기한: 2020.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지원

- 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확대 • 주요내용
 - (대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②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대상)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재고용 및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17.6.30.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 적용대상자

-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자*
-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하
- (재기사업자) '17.12.31. 이전 폐업한 후 '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조세범 등 제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을 받거나 재판·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제외
-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
 - '17.6.30.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
- (신청기간) '18.1.1. ~ '19.12.31.
- (소멸한도) 인당 3.000만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 추진배경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 주요내용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대상 (①과 ② 요건 충족)

- 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 ② '17.6.30.기준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 없는 체납액
 - * ①'12년 이전 결손처분, ②체납처분 중지, ③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④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⑤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01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

• 주요내용 적용대상자 (①~⑤ 요건을 모두 충족)

- ①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 ② '17.12.31. 이전 폐업
- ③ '18.1.1.~'18.12.31.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 ④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을 것
- ⑤ 신청일 현재「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없을 것

다음의 경우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 속행

- ① '17.6.30.기준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 ② 사업자등록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등

소멸신청: '18.1.1.~'19.12.31.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소멸한도: 1명당 3,000만원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2 044-215-4153)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18.1.1.~'20.12.31.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 (적용대상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 * ①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②무한책임사원
- 적용요건(1)~(3) 요건 모두 충족)
 - ① (업종)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등
 - ② (수입금액)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엔지니어링업 등 30억원 이하
 - ③ (R&D)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 또는 ⑥에 해당
 - @ R&D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 10% 이상
 - (b)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특허권 보유
- 면제한도: 1명당 2억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추진배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 활성화

• 주요내용

- '18.1.1.부터 '20.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
- * ①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②무한책임사원

• 주요내용 적용대상

- ① (업종기준)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 개발·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 **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둘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
- ②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전문디자인업 등 30억원 이하
- ③ (연구개발)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요건* 충족
 - * ⓐ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10% 이상 또는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특허권을 보유

적용제외

①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은 경우 등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현 행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 15년 이상 300억원 한도 20년 이상 500억원 한도



개 정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 20년 이상 300억원 한도 30년 이상 500억원 한도

■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거치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현 행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시 2년 거치 5년 납부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납부



개 정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시 총 10년 납부 (3년 거치 가능) 50% 이상시 총 20년(5년 거치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 추진배경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와 과세형평성 등 감안하여 제도 개선

• 주요내용

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가업영위기간				
등세원포	현행	개정			
200억원	10년 이상	(좌 동)			
300억원	15년 이상	20년 이상			
500억원	20년 이상	30년 이상			

②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선택 적용

• 시행일 20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2년간)으로 상향합니다.

- 대상사업자 및 공제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1~6월, 7~12월)의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 공제세액: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9/109 (당초 8/108)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 추진배경 영세자영업자 지원

• 주요내용 개인 음식점사업자의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 대상: 연매출 4억원이하 개인 음식점사업자 (반기매출 2억원이하)

- 공제율: 8/108 → 9/109

- 적용기한: 2년간 (19.12.31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되고,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현행 적용기한

'17. 12. 31.까지

•

개정 적용기한

'19. 12. 31.까지

■ 관세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개정 적용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

• 주요내용

①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 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② 관세 감면 대상 확대

- 현행 적용대상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 개정 적용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 시행일 2018. 1.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합니다.

■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현 행

기본세율 30원/kg 탄력세율 27·33원/kg(저·고열량탄)



개 정

기본세율 36원/kg 탄력세율 33·39원/kg(저·고열량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연료(유연탄·LNG)간 형평 등을 감안 • 추진배경

• 주요내용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 시행일 '18.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장 등의 제작·건설 또는 경기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감면됩니다.

■ 감면대상: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 감면율: 관세액의 5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 추진배경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 지원

• 주요내용 ① 감면대상: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② 감면율 : 관세액의 50%

• 시행일 2018. 1. 1.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 및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하였으며,
 - * 최고 금액(만원): 단독 77 → 85, 홑벌이 185 → 200, 맞벌이 230 → 250
-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신청자격 중 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 려금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 주요내용 ①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최대지급액	종 전	개정
단독 가구	77만원	85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200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	250만원

- ②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 ③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허용
- ④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 포함
- 시행일 2018.1.1

법무부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256)

장기의 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 현재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까지입니다.
- 어음제도 폐해 해소 위해 최장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6. 5. 29. 공포)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18년 5월 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선 시행한 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별 단계적 단축 내용〉

시행시기	최장만기	
'18. 5. 30. ~ '19. 5. 29.	6개월	
'19. 5. 30 '20. 5. 29.	5개월	

시행시기	최장만기
'20. 5. 30 '21. 5. 29.	4개월
'21. 5. 30 ~	3개월

- 최장만기 단축은 해당 시행시기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어음만기 단축으로 경제활성화 및 기업환경개선

어음만기 단축 위한 '16년 5월 전자어음법 개정

• 추진배경 장기의 만기 어음으로 인한 어음 폐해 해소 및 기업환경 개선

• 주요내용 전자어음 최장만기의 단계적 단축

공포 후 2년부터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최종 공포

후 5년이 되는 때부터는 "3개월"로 단축

• 시행일 2018년 5월 30일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256) 금융위 서민금융과 (☎ 02-2100-2612)

서민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①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②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입니다.
 - 2018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춰질 계획입니다.

구분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대상	사인 간의 일반 금전대차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현행	연 25%	연 27.9%
'18. 2. 8. 부터	연 24%	연 24%

■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 니다.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18, 2, 8.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 • 추진배경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 및 가계부채 해소대책 마련

• 주요내용 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최고금리 일원화

②이자제한법 및 대부업의 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

※ 공포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 시행일 2018년 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044-203-2871)

외국인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숙박요금 인하효과로 외국인관광객 증대를 위해 실시할 예정 입니다.
 - 환급대상 호텔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숙박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전표를 발급받아 환급창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년에 실시하였을 때보다 환급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 2박 이상 조건을 1박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세구역외의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 추진배경 숙박요금 인하효과로 외국인관광객 증대

•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 시행일 2018년 1월 1일(예정)

산업통상자원부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044-203-4822)

2018년 5월 1일부터 분양된 대규모 점포(대형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계획 입니다.

- 지금까지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경우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에 관리비 관리규정이 미비하여 입점 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 2018년에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납부하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고 관리비 사용에 대해 년 1회 회계 감사를 받게 될 계획입니다.
- 또한, 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가 이를 점검하고 법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알림·뉴스>보도자료>대규모 점포관리자 관리비내역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대규모 점포 관리비 관리개선 계획

• 추진배경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① 관리비 청구·집행 내역 공개

② 연 1회 회계감사 의무화

③ 행정기관 대규모점포 관리·감독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을 '18.1월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 금리 0.2%p를 지원하였습니다.
-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 (0.2%)에 더하여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2.05~2.95%p→1.70~2.75%p)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관련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금포털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상품 출시

• **추진배경** 19대 정부 국정과제(#47) 추진(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연소득 : 신혼부부 6천 → 생애최초 신혼부부 7천

구분	디딤돌 주택구입대출(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안)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 생초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연소득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면소득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2천만원 이하	2.05%	2.15%	2.25%	2.35%	2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금리	2천~4천만원	2.35%	2.45%	2.55%	2.65%	2천~4천만원	2.10%	2.20%	2.30%	2.40%
	4천~7천만원	2.65%	2.75%	2.85%	2.95%	4천~7천만원	2.45%	2.55%	2.65%	2.75%

② 우대금리: 0.2%p → 0.4p ~ 0.55%p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 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18.1월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 그간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4억원, 수도권 외 1.0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하였습니다.
-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대출비율 10% 확대(70% → 80%),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수도권 1.4억→1.7억) 및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하여 최대 0.4%p 추가 인하(1.6 ~2.2%→1.2~2.1%)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 관련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금포털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상품 출시

• 추진배경 19대 정부 국정과제(#47) 추진(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대출한도: 수도권 1.4억원 → 1.7억원, 수도권 외 1.0억원 → 1.3억원 등

② 우대금리: 0.7%p→ 0.8p~ 1.1%p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0 대출 수도권 1.4억원, 수도권외 1억원 수도권 1.7억원, 수도권외 1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	3억원
	711
보증금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보증금 5천만원 1억원 15억 연소독 이하 ~ 1억원 초과 연소독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원 1.5억원 초과
대출 2천만원 이하 1.60% 1.70% 1.80% 2천만원 이하 1.20% 1.30% 1.40%	1.50%
급리 2천~4천만원 1.80% 1.90% 2.00% 2천~4천만원 1.50% 1.60% 1.70%	1.80%
4천~6천만원 2.00% 2.10% 2.20% 4천~6천만원 1.80% 1.90% 2.00%	2.10%

국토교통부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18.1월중 만 19세 이상의 청년에게도 저리의 버팀목전세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그간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서 보증금 3천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원 이내에서 취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금포털 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 **추진배경** 19대 정부 국정과제(#47) 추진(청년 주거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대출대상 : 만 19 ~ 25세 미만

② 대출한도 : 2천만원

③ 대출대상: 보증금 3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18.1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 제도를 개선합니다.

- 그간 월 3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출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것 으로 운영하였으나
 - * 대출기간 :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 * 대출상환: 2회차 연장시부터 대출잔액의 25%씩 상환
-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하향(25%→10%, 우대형)할 계획입니다.

참고

기금포털 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청년 특성에 적합한 월세 자금 지원 강화

• **추진배경** 19대 정부 국정과제(#47) 추진(청년 주거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대출한도: 760만원 → 960만원

② 연장시 상환: 대출잔액의 25% → 대출잔액의 10%

국토교통부

두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18.1월중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구에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를 신설합니다.

- 그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0.5%p)를 지원하였으나 최근 2자녀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0.2%p)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금포털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아동이 있는 가구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아동을 양육하는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필요

• 주요내용 ①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2자녀 양육 가구

② 우대금리 : 0.2%p 신설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 044-204-349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도 확대. 조정됩니다.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그 범위가 단계적 으로 확대됩니다.
-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우대세율(100분의 10)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서도 시가 총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단계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이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법령정보>법령>개정세법해설(2017)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조정

• 추진배경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 주요내용 ①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구분	현행('16.4.1.)	'18.4.1.이후	'20.4.1. 이후
유가증권시장	1%·25억원	1%·15억원	1%·10억원
코스닥시장	2%·20억원	2%·15억원	2%·10억원
코넥스시장	4%·10억원	4%·10억원	4%·10억원

②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구분	현행('17.1.1.)	'18.4.1.이후	'20.4.1. 이후
비상장주식	4%·25억원	4%·15억원	4%·10억원

• 시행일 2018년 4월 1일

• 적용시기 및 2018.4.1.(2020.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례

국세청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 044-204-3492)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가 조정됩니다.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예정신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 횟수가 축소, 조정됩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법령정보〉법령〉개정세법해설(2017)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 추진배경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 주요내용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예정신고기한이 변경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적용시기 및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사회적책임 강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 070-4056-7464)

고용·근로분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입찰 가·감점 강화

-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에서 '18.1.1. 입찰공고 분부터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감점(-2점)이 적용됩니다.
- 또한. 고용·근로분야와 관련하여 '17.12.1. 입찰공고 분부터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 가점(0.5~2.0점)이 적용되고.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한이 최대 +7점까지 상향(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만 적용) 됩니다.
 - 이외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신인도 가점 확대(0.5점 → 1.0점),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 확대 (1.7점 → 2.0점)가 적용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가점(+2점)이 신설됩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개정 내용

• 추진배경 고용·노동분야 사회적책임 조달 강화를 위한 신인도 가·감점 강화

- 주요내용 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최저임금 위반자 감점(-2점)
 - ②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른 가점(0.5~2.0점)
 - ③ 신규채용 우수기업 신인도 배점한도 확대(최대 +7점까지 가능)
 - ④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신인도 가점 확대(0.5점 → 1.0점)
 - ⑤ 사회적기업 신인도 가점 확대(1.7점 → 2.0점)
 - ⑥ 사회적협동조합 신인도 가점(2.0점) 신설
- 시행일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은 2018.1.1. 입찰공고 분부터, 기타사항은 2017.12.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조달청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최저임금 위반자 입찰평가 감점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070-4056-6116)

新정부 경제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달기업에 고용·노동분야의 '사회적 책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조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18.1.1.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대하여 입찰 감점(-2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17.5.1 이후 공표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17.10.1, '17.12.1부터 입찰 감점(-2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달청홈페이지>조달청뉴스>보도자료> 2290번 고용·노동분야 사회적책임 조달 강화

최저임금법 위반자 입찰 감점 • 주요내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타. 고용노동관련 법령 준수

"B.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점

• 시행일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8..1.1)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2110-1521)

2018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지금까지는 아이핀, 휴대폰 및 공인인증 방식만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대부분 편의성을 이유로 휴대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신규 대체 수단)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 추진배경 신규 본인확인 수단 도입으로 이용자. 사업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
- 주요내용 신용카드를 활용, 인터넷상 본인확인 가능
 - ARS, APP카드, 홈페이지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본인인증 실시
- 시행일 2018년 상반기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02

교육

교육부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교육부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 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Before



After



2 교육부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 급여 대폭 인상

// 시행일: 2018년 3월

Before



After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444)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합니다.

-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옴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 한편, 2017. 1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되었으나 어린이집 소요 액의 58.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논란 해소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 교부금 1조 2.275억원 / 2017년도 어린이집 총 소요액 2조 875억원(나머지 41.2%인 8.600억원은 국고로 부담)
- ▣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여 2018년도 정부안에 어린이집 누리과 정비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하였고 동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원천적 으로 해소되었습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누리과정 예산 논란 재연 없이 안정적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추진배경 안정적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 주요내용 일부만 국고 지원('17년 기준 41.2%) → 전액 국고로 지원('18년 기준 100%)

• 시행일 '18.1월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교육부 교육시설과 (☎ 044-203-6183)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성능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유·초중등학교는 법령개정*을 통해 재해특교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하여 지진위험 지역**은 '24년, 그 외 지역은 '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법사위 회부(17.12.1.)
 - ** 지진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지역
- 또한, '18년 국립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개정 • 추진배경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 신설

② 특수학교 및 강당·실내체육관은 내진특등급으로 설계

• **시행일** 2018년 1월(잠정, 개정안 행정예고 중)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044-203-6524)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 * 중위소득 50%(예: 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18년 교육급여 항목별 연간 지원금액 (1인)〉

지급대상	지급항목	2017	2018
구 드라내	부교재비	41,200원	66,000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50,000원
ᄌᄀᄃᇶᅛᆘ	부교재비	41,200원	105,0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54,100원	57,000원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납부금 감면	납부금 감면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 추진배경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초등학생 학용품비 신규 지원(5만원)

② 초·중·고등학생 항목별 지원 단가 대폭 확대 지원

• 시행일 2018년 3월

•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차상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교육부

중·고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044-203-6469)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을 위해 2018년 3월 1일부터 중·고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 새 교육과정은 문·이과 칸막이 없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 새 교육과정을 통해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로 하여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게 되며.
 -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도입하여 1학년 때 배우도록 함으로써,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초 학력을 다지게 됩니다.
- 특히, 기존의 지식 전달 일변도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토론·토의,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수업을 전개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 *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

참고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코너에 교육과정 원문 및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일정

• **시행일** ①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2학년

②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4학년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③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6학년 /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2학년

④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단,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2020년 신입생부터 적용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03

여성·육아·보육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위원회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법무부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한하 여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가능 간이한 절차 마련

Before

기존에는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만이 '소송' 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만 친생추정 배제가 가능 이혼 진생부인의 소 를 제기

After

개정 후에는 이혼한 아버지, 어머니 뿐만 아니라 생부도 '소송'보다 간이한 '비송'절차를 통해서 친생추정 배제가 가능 이혼 생부인의 허가 청구

2 보건복지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세행일**: 2018년 1월

Before



After



3 보건복지부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 시행일: 2018년 1월

Before



After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시행일: 2018년 상반기

Before



After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 시행일: 2018년 1월

Before



After



6 여성가족부

여성 고위공무원단·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 시행일: 2018년 1월

Before



After



7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

// 시행일: 2018년 상반기

Before



After



법무부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가능 간이한 절차 마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아닌 생부 (生父)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한 가사비송절차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및 「가사소송법」이 2018. 2.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기 위해 가정법원에 엄격한 소송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 아야 했습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18. 2. 1.)되면 이혼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칠 필요 없이.

-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가 마련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민법 가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요내용

간이한 친생추정 배제절차 마련

- 추진배경 엄격한 친생추정 배제 절차에 의해 어머니, 자녀 등의 기본권 침해
 - ①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비송절차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음
 - ② 생부가 가정법원에 비송절차인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음
- 시행일 2018년 2월 1일

보건복지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44-202-3545)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3,129개소('17년 11월 기준)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비율은 7.8%, 이용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습니다.
 - 2018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 확충을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 추진배경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450개소 확충(신축·공동주택리모델링·민간장기임차) • 주요내용

• 시행일 2018년 1월

보건복지부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2)

'18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 단가가 '18년 1월부터 전년 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됩니다.

-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인상되며,
-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21.8% 인상될 계획입니다.
- 또한, '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1월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료 인상 시기를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18년에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모든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 2.6% 인상

②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21.8% 인상

③ '18년 1월부터 보육료 인상으로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44-202-3545)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야 되는 등의 기준을 적용 하였으나,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13일부터 지자체 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의 비용부담 경감과 함께 공공 출산인프라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17.12.12.) 및 시행('18.6.13.)

지자체 산후조리원 입지관련 설치기준 완화

• 추진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하여 공공 출산인프라를 강화하고

산모의 산후조리원 선택권 확대

• 주요내용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입지관련 설치기준 완화

※「모자보건법 시행령」개정 및 관련「고시」폐지 추진 중

• 시행일 2018년 6월 13일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현재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 하한인 최저임금이 '18년 월 157만 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하여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시안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추진배경 '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100%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최저임금)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통상임금 60→80%)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 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주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최대 1년 사용가능,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 지원
- '18년1.1 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80%로 인상합니다.

Х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일·가정 양립 및 10to4 더불어 돌봄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5)

가춤,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확대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 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4개에서 226개로 확대 운영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146명 에서 1,26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 CYS-Net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또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가 123개에서 130개로,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이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 *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여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참고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 전화 ☎ (지역번호)1388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지역 기반의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상담・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주요내용 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지역 확대(224개→226개)

② 청소년동반자 확대(1,146명→1,261명)

③ 청소년쉼터 확대(123개→130개)

④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 확충(30명→60명)

• 시행일 2018년 상반기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297)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추진되던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서비스가 2018년 3개 거점지역으로 확대됩니다.

* 3개 거점지역: 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 '현장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청소년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와의 면담·중재 등을 통해 체불 임금 지급을 연계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임금체불, 성희롱·폭언 등 부당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전화 1388, 문자 (#1388), 카카오톡, 사이버상담도 지속 추진됩니다.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현장도우미가 현장을 방문하여

중재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청소년(13세~19세)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9세~24세

② (지원내용)

- 사업주와의 현장면담을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부당처우 확인해결, 경찰·노동관서를 연계한 사건 처리 등
- 근로청소년 기관 및 시설 등을 연계하여 근로청소년의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건강·진로·학업복귀·직업 등) 실시
- ③ (이용방법) 청소년전화(1388) 및 문자상담(#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를 통한 상담 및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9)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0개소가 추가됩니다.

-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보충학습,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에 25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260개소로 확대 운영되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년	250	23	15	13	9	6	6	6	3	43	16	12	17	16	24	13	19	9

참고

지원문의: 방과후 아카데미 홈페이지(www.youth.go.kr/yaca),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31~4)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 추진배경 청소년의 방과후 아카데미 접근성 제고 및 지원 강화

• 주요내용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250개소→260개소)

• **시행일** 2018년 1월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02-2100-626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시 '위생'분야가 포함되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 2018년부터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하여 '위생'분야 점검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하여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 추진배경 청소년수련시설 내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 분야 점검

•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6개분야 → 6개분야+위생)

• 시행일 2018년 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9)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꿈드림 센터* 4개소가 신규 설치됩니다.

- * 꿈드림 센터: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
- ** ('17년) 202개소 → ('18년) 206개소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	202	24	15	9	9	6	3	5	1	31	9	13	15	10	16	15	18	3
'18	206	25	15	9	9	6	3	5	1	31	10	13	15	10	16	15	20	3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1개소가 추가됩니다.

- *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동기강화 및 취업의지 고취
- ** (17년) 7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전북, 충북) → (18년) 8개소(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 전북, 충북)

참고

지원문의: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청소년 전화(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 추진배경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센터 접근성 제고 및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꿈드림센터 확충(202개소→206개소)

②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추가(7개소→8개소)

• 시행일 2018년 1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100-6394) 복지지원과 (☎ 02-2100-6424, 6426)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시설이 확충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의 피해 회복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가 신규 공급되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가 확대됩니다.
-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은 주거공간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쉼터를 통해 보호 및 상담 및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 ('17년) 295호 → ('18년) 315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17년) 26개소 → ('18년) 28개소

또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 센터 7개소를 신규 운영합니다.

■ 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또래상담. 일시보호. 치료회복 및 사회복귀 등 성매매피해자 현장지원을 강화 하고,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진로탐색과 직업훈련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참고

지원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 추진배경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지원 내실화

• 주요내용 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확대(295호→315호)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확충(26개소→28개소)

③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7개소 신규 지정·운영)

• 시행일 2018년 상반기

여성 고위공무원단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02-2100-6200)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이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별 달성 목표 〉

	부 문		지급항목	2017	2018	
	ユフレ	고위공무원단	6.10%	6.50%	10.00%	
공무원	국가	본부 과장급 (4급 이상)	14.00%	15.70%	21.00%	
	지방	과장급 (5급 이상)	13.00%	13.90%	20.00%	
7 7 7 7 7 L		임원	11.80%	13.40%	20.00%	
공공기관		관리자	21.90%	22.90%	28.00%	
70		국립대 교수	16.20%	16.50%	19.00%	
교원		교장·교감	38.60%	39.90%	45.00%	
군인		간부		6.20%	8.80%	
경찰		일반경찰		11.70%	15.00%	
성걸 		해양경찰	11.30%	12.00%	14.40%	

■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도 '18년에 최초 시행됩니다.

여성 고위 공무원단·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 추진배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 구현

- 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여성 비율을 ('17년) 6.1% → ('22년) 10%로 확대
- ② 공공기관의 성 평등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여성 임원 목표제」를 최초 도입하고 여성 임원 비율을 ('17년) 11.8% → ('22년) 20%로 확대하여 OECD 평균 (20.5%) 수준 달성
- 시행일 2018년 1월

• 주요내용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가 본격 운영됩니다.

- 지금까지 주로 시설종사자 취업실적 입력 등 내부용이었던 'e-새일시스템(saeil,mogef.go.kr)'이 '경력 단절여성 취업정보 서비스(saeil.mogef.go.kr)'로 개편되어, 국민들이 직접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특히,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경력단절여성 38만명 이상이 직업교육훈련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새일센터 취업정보서비스 오픈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 추진배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고로 여성고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직업교육훈련 신청)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육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

* (개편 전) 직업교육훈련 센터 방문 신청 → (개편 후) 온라인 교육 신청

② (인턴 온라인 접수) 인턴 채용 절차 등 관련 정보는 항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신청자를 오프라인과 병행하여 접수

③ (구직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구직자의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정보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④ (일자리정보 공개) 워크넷 일자리 정보 등을 공개하는 '일자리 정보코너' 개설

• 시행일 2018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2100-643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및 치료지원을 확대합니다.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자 치료사업 확대〉

부문	지급항목				
1인당 지원금	월	462천원 🕆			
- 생활안정지원금	월	39천원 🕆			
- 간병비	월	33천원 🕆			
- 건강치료비	월	390천원 🕆			

'17년							
2,775천원							
1,298천원							
1,087천원							
390천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원 등 확대

• **주요내용** ① 월지원금 확대('17년 월 1,298천원 → '18년 월 1,337천원)

② 간병비 확대('17년 월 평균 1,087천원 → '18년 월 평균 1,120천원)

③ 건강치료비 확대('17년 월 평균 390천원 → '18년 월 평균 780천원)

• **시행일** 2018년 상반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 제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31)

이웃간 자녀돌봄을 매개로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안전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장난감과 도서 이용·대여 서비스. 가족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가족품앗이 :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
- 2017년 66개 지역에서 2018년 11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예정 입니다.
 - * 신규 운영 지역은 지자체 공모신청에 따라 선정

참고

이용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1577-9337)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 추진배경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지원

• 주요내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 '17년 66개 지역 → '18년 113개 지역

• 시행일 2018년

※ 시군구별 개소(開所)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기 상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02-2100-638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새롭게 지원됩니다.

- 2018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불법영상물 삭제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종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창구로 운영하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1366'을 통해 편리하게 종합서비스로 연계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유포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 피해사례 수집(채증) 등 경찰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 종합 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지원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영상삭제 등) 개시 • 추진배경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범죄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이 미흡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창구(gateway)로 운영

②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④ 전문적인 상담, 의료비, 무료법률서비스 등 지원

• **시행일** 2018년 상반기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26)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에게 가족상담, 가족돌봄, 일시돌봄, 자녀 학습·정서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도 2017년 전국 47개소에서 2018년부터 61개소로 확대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향후 취약·위기가족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정서지원을 위한 서비 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운영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이용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1577-9337)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 추진배경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① (지원대상)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재난·사고 • 주요내용 등을 경험한 긴급위기가족
 - ② (지원내용) 사례관리, 가족상담, 긴급가족돌봄, 학습·정서지원 등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외부자원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 ③ (수행기관) 61개소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시행일 2018.1.1.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5,6346)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18년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8년부터는 월 1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한부모 (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추진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

* ('17년)월 12만원 → ('18년)월 13만원

* ('17년) 만 13세 미만 \rightarrow ('18년) 만 14세 미만

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17년)월 17만원 → ('18년)월 18만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3,6344)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 *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하여,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 정부지원 비율 상향: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시간제 ('17) 25~75% → ('18) 30~80%
 -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20.0%)
- 또한, 출·퇴근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480시간→연600시간)합니다.
 - * (예)월 20일 기준: (17)일 2시간(연 480시간) → (18)일 2.5시간 이용(연 600시간)

참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서비스제공기관(통합 안내) 2 1577-2514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 추진배경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로 양육 부담 경감과 시설보육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① 시간제정부지원시간(가형~다형): ('17) 연 480시간→('18) 연 600시간

② 시간제·영아종일제정부지원비율(가형~다형): ('18)소득계층별 5%p상향

※ 시간당 이용단가(돌봄수당): ('17) 6,500원→('18) 7,800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 02-2110-1548)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KT 및 LGU+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SKT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18년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KT의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 내용 • 추진배경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게임,음악 등)를 이용하여 과다한 정보이용료 가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① (문자발송 기준금액) 3천원, 5천원, 1만원, 1만5천원, 2만원, 2만5천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② (문자발송 내용) 010-XXXXX-XXX 님이 사용하신 정보이용료가 00원을 초과하였습니다

※ 상기 기준금액을 넘을 때마다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휴대폰에 문자가 전송됨

• **시행일** KT 2006년 7월 시행 LGU+ 2017년 9월 시행

• 주요내용

SKT 2018년 1월 시행 예정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04

보건·사회복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보건복지부

소득하위 50%까지 본인 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Before



After



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 보상수준 확대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Before



After



3 보건복지부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 검진기관 지정

// 시행일: 2018년 5월

Before



After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 02-2100-592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편입시 지원하는 주거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주거지원금은 2007년 300만원 상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2018년부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300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1인 세대 1,600만원, 2인 세대부터 4인 세대까지 2,000만원, 5인 세대 이상 2,300만원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
- 이에 따라. 최소한의 주거지원금 인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생활 여건을 마련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8년도 북한이탈 주민 주거지원금 인상 계획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금 인상 • 추진배경

• 주요내용 세대별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

> ① 1인 세대: 1.300만원 → 1.600만원 ② 2~4인 세대 : 1,700만원 → 2,000만원 ③ 5인 세대 이상: 2,000만원 → 2,300만원

• 시행일 2018년 1월(예정)

행정안전부

휴지통 없애기 등으로 더욱 쾌적해진 화장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02-2100-4369)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집니다.

- 그동안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동반하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2018년부터 없어지게 되며,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됩니다.
- 다만, 물에 녹지 않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였습니다.

다른 성별이 청소·보수 시에는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됩니다.

- 내부가 훤히 보여 모두를 민망하게 하던 화장실에 대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앞으로 신축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하고, 이미 설치된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공중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없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① 대변기칸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 (기존 + 신축화장실)

- ② 청소·보수를 위해 작업자 출입시 안내표지판 설치(기존 + 신축화장실)
- ③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치, 남자화장실 소변기가림막 설치 (신축+리모델링하는 화장실만 해당)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 044-203-2518)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액이 1만 원 오릅니다.

-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액은 연 6만 원이었습니다.
 - 현실적인 문화 활동 비용 등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1인당 연 10만 원까지 올려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문화누리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구분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 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개선 계획

• 추진배경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향유 지원

• 주요내용 ①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액 상향 ('17년) 연 6만 원 → ('18년) 연 7만 원

② 문화누리카드 디자인 변경

• 시행일 2018년 2월 1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21)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하여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 금을 지급하였으나.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7. 5. 29., 시행 '18. 1. 1.)되었고,
 - 이에 장애(장해)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의 세부사항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예방접종 피해보상 장애(장해) 보상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추진배경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① (적용대상)「장애인복지법」이외「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그 밖에 국가가 장애(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을 받은 경우로 확대

② (보상기준 및 금액)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10으로 함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고시 추진 중(행정예고 진행)

• 시행일 2018년 1월 1일(시행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2)

국민연금법 제75조의 유족연금 소멸 사유에서 입양과 장애호전을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76조의 유족연금 정지 사유에 추가하여 영구적인 소멸 대신 일시 정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영구히 소멸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수급권 소멸 대신 정지로 변경됨에 따라 입양 후 파양 또는 장애가 다시 악화(2급 이상)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재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국민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28일 국회본회의 통과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추진계획

• 추진배경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소멸→정지) • 주요내용

- 유족연금 수급 중 다른사람에게 입양되었다가 파양된 경우
- 장애2급 이상으로 유족연금을 수급 중 장애가 호전되었다가 다시 장애2급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 시행일 2018년 4월 25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5)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군의 신고의무자에게만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2018년 4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중 5개 직군에만 국한 하던 교육의무를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근절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의무교육 확대 계획 • 추진배경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확대로 신고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기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 확대: 24개 직군으로 확대(붙임 참조)

• 시행일 2018년 4월 25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연번	신고의무자					
1	가정위탁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5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6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9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 겸임교사 등					
20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2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3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4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044-202-2454)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 2017년 12월 23일부터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어,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 전공의를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공의 수련환경 주당 80시간 추진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시행

• 추진배경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주요내용 (전공의특별법 제7조)

① 4주간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는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

②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받을 수 있음

• 시행일 2017년 12월 23일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044-202-2905)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 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다수였습니다.
 - 2018년에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할 것입니다.

2018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 추진배경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 센터 설치·운영

• 주요내용 ① 보건산업분야의 우수기술 발굴, 기술가치 향상, 시장진출지원 등

②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위한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

• 시행일 2018년 1월(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시작) 센터 입주 및 운영(1월), 홈페이지 구축(1월), 업무매뉴얼 작성(1월~2월) 개소식(3월), 신규직원 채용(17년 11월~12월, 18년 4~6월)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4)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하였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 *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 유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개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 보험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 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3

• 주요내용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 *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 *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 유지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708)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 되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되어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2천만 원)로는 부족한 의료 비와.
 -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 추진배경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질환 범위 확대(4대 중증질환 → 전 질환)

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

③ 지원한도 초과 시 가구·질환 특성 등 고려 심사를 통해 추가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 ※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를 위한「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진행 중(국회 법사위 계류)으로, 입법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3)

'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18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에는 약 135.6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7) 134만원 → ('18) 135.6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1.56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18년 기준 중위 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추진배경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18년 기준 중위소득: '17년 대비 1.16% 인상

- 4인가구 기준 ('17)약 446.7만원 → ('16)약 451.9만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17년 대비 15.547원 인상

- 4인가구 기준 ('17)약 134만원 → ('18)약 135.6만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5)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p 낮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필요합니다.
- 2018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 검진기관 지정

• 추진배경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개선

• 주요내용 ①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② 검진시 보조인 조력 서비스, 수화통역, 서면안내문 비치 등 제공

• 시행일 2018년 5월(1분기 지정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기관 지정)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9)

2018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7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 13세로 한정하였으나,
 -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12~17세 가입)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아동 가입 연령 확대 • 추진배경 대상 범위 확대로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 주요내용 2018년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대상

- 만 12세(2006년생), 만 13세(2005년생) → 만 12세(2006년생) ~ 만 17세(2001년생)

• 시행일 2018년 1월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44-202-2931)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 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치료법 개발을 지원합니다.

- 지금까지는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 니다.
 - 2018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연구가 병행하여 지원될 것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3월 배포예정)

국가 치매극복기술 개발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국가치매관리 정책과 연계한 치매 예방, 조기발견, 치료, 돌봄 등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R&D 지원

① (예방) 치매의 위험요인·보호요인 규명 및 지역사회 예방프로그램 개발 • 주요내용

② (진단)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③ (치료) 신약재창출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및 치료 효과검증을 위한 모델 개발

④ (돌봄) 치매환자 안전강화 기술 및 생활보조 기술 개발

• 기대효과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도출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경제적 이익 창출

• 시행일 2018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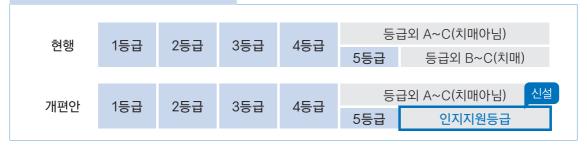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2, 3497)

'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합니다.

-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으나.
-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행 및 변화되는 장기요양 등급 체계



치매어르신 인지지원등급 신설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 주요내용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

• 시행일 '18.1.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9)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18년 기준중위소득('17년 대비 1.16% 상승)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 다.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 또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18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 보다 추가 인상하여 '17년 보다 2.9~6.6% 상향* 조정하였으며.
 -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17년 대비 8% 상향하였습니다.
 - * (경보수) 350→378만원, (중보수) 650→702만원, (대보수) 950→1,026만원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18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인상

• 추진배경 주거급여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17년 대비 1.16%상승

> ②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2017년 대비 기준임대료 2.9~6.6% 상승,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8% 상승

• 시행일 2018년 1월1일

해양수산부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 수급자(중위 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 당이 지원 대상이며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 * 지원조건 : 1일 1회 12천원(국비 70%, 수협 30%)
- 가사도우미는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조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가사 일 지원과 방문 가구 구성원의 건강상태 등을 돌보게 됩니다.

가사도우미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조생활 유지

• 주요내용 (가사도우미 수행사항)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조리 포함),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
- 기초 가사서비스 외 수혜자의 위생 및 건강상태 등에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통보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 (☎ 043-719-1734)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되어 위생용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통합·관리됩니다.

- 그 간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식품용기구 등***이 위생용품 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숫가락·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위생물수건
 - ** 화장품, 일회용면봉, 일회용기저귀
 - ***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타월
- 위생용품 수입업이 신설되고 품목제조보고. 수입신고 의무화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가 확충됩니다.
 -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 신뢰 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2018.4.18.)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의 관리체계 정비

• **주요내용** ① 복지부 → 식약처로 위생용품 안전관리 소관부처 조정

② 위생용품의 범위 확대(9종 → 17종)

• 시행일 2018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043-719-3253)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중금속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 *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 :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후 인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해 수산물 차단 및 사전예방 안전관리계획(중점관리 품목, 유해물질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
-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은 기준이 설정된 물질에 대해 검사하는 안전성 조사와 달리 국내· 외 위해정보나 문제제기 위해요소 등 기준이 없는 위해요소에 대하여도 잔류조사를 실시하여
 - 기준 초과 시 신속히 폐기 등 조치하고, 원인 추적조사를 통해 사전 예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 기준이 없는 유해 잔류물질 검출 시 검사 및 관리대상으로 관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매년 잔류조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도가 높은 품목·항목에 대하여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합니다.
-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구축으로 항생제 사용 및 항생제 내성율 저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 프로그램(NRP) 구축·운영 • 추진배경 소비량 세계 1위인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 부재에 따른 수산물 지표

세균 항생제 내성(페니실린 내성 약 81.8%) 문제로 체계적인 잔류물질 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운영 필요

• 주요내용 ①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② 위·공판장 출하·유통되는 다소비·다생산 수산물에 대한 잔류조사 실시

③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해평가 실시 및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시 반영

• 시행일 2018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 043-719-2894)

2018년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까지 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으로 전산보고 하는 제도를 일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마약류 취급내역을 (수기)관리대장으로 기록·보관하고, 일부사항은 10일 또는 월 1회 보고 하던 것을 2018년 5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으로 7일이내 또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산 보고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 의료현장에서 마약류취급자의 환자치료 행위와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과 일반* 으로 구분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중점관리대상(마약, 지정 향정성분)은 일련번호 기반으로 추적관리, 일반관리대상(기타 향정성분)은 제조번호·수량 기반 으로 관리 예정
- 또한, 5만 7천 마약류취급자의 업무부담 해소 및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의원·약국에서 사용 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간 연계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화 제도 전면 시행

• 추진배경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 차단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무보고 제도 전면 시행

•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사용 등 全 취급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 보고하거나, 취급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연계

하여 취급정보를 온라인 전송 보고

• 시행일 2018년 5월 18일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05

공공안전 및 질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경찰, 연구자가 함께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02-2110-2413)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 02-3150-0662)

치안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민, 경찰, 연구자가 협업하여 현장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을 추진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안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과학·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 실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연구자와 경찰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리빙랩(Living-Lab) 방식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시범사업

• 추진배경 치안현장 문제해결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을 통해 국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

• 주요내용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수 있는 생활치안 연구개발 과제 지원

> * 일반국민 대상 치안현장 문제 발굴 및 경찰청 주도의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 선정 추진

• 시행일 2018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02-2110-2928)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정 공고 시에 한해서만 가능하였으나, 희망기업이 상시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정공고를 해야만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신규지정이 가능하였으며, 14년 이후 공고('14년 11개사 신규지정)를 하지 않아 신규진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01년에 제도 도입. '17.10월 현재 18개사 지정 중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제도 개선방안(안) 의견 조회('17.9.5~9.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24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홈페이지 게시 ('17.10.11~ 상시접수 진행 중)
-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 시장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문기업수가 증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 추진배경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 신청 절차 개선으로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① (기존) 정부의 지정공고 후 신규 신청 가능

② (개선) 필요기업에서 언제든지 신규 지정·신청 가능

• 시행일 2017년 10월 26일

전기자전거 '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02-2100-4262)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 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18.3.22.부터 ▲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 ▲ 속도가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 전체 중량 30kg 미만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조는 금지됩니다.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것과 이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 갖춘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이용하세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전기자전거의 이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추진배경

• 주요내용 ① 전기자전거를 정의하여 자전거에 포함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②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마련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의 안전 확보

• 시행일 2018년 3월 22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83)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 2017.10.19.부터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안내

• 추진배경

산재 은폐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산재 현황을 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산업재해 은폐 행위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17,10,19, 시행)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
 - ※ 출근 강요로 3일 이상 휴업을 은폐,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를 은폐하여 보 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산재은폐 교사·공모 등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5 공공안전 및 질서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②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지1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 (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위반시: 일반재해 미보고 1차 위반 700만원 / 2차 위반 1,000만원 / 3차 위반1,500만원, 거짓보고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 중대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
 - ※ 중대재해: ①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③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
 -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도 인정
 - 위반시: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
-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기상청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기상청 해양기상과/예보기술과 (☎ 02-2181-0750/0661)

해상활동을 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상청은 1,331개 해구별 바다날씨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 2016년부터 12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해구별 바다날씨를 2018년에 최신의 바다날씨 정보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생산주기를 3시간 간격으로 단축합니다.
- 또한,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해 해구별 바다날씨 정보에 하늘상태, 시정, 수온 요소를 추가하여 제공합니다.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날씨〉바다날씨〉해상예보〉해구별예측정보

바다날씨 상세화 및 개선 사항

• 추진배경 해양기상정보 서비스의 상세화를 통한 국민 체감만족도 향상

주요내용
 ① 해구별 예측정보 생산주기단축: 12시간 간격 → 3시간 간격

② 해구별 예측정보 제공 요소 추가: 5종(유의파고, 파향, 파주기, 풍향, 풍속) → 8종(유의파고, 파향, 파주기, 풍향, 풍속, 시정, 수온, 해상날씨)

• 시행일 2018년 5월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 02-2181-0043)

국가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방재기상과정)을 실시합니다.

- 지금까지 기상청에서는 대국민 기상교육의 일환으로 '기상재해 이해과정'을 운영해왔으나, 2018년 4월부터는 실시되는 「방재기상과정」은 분야별·기관맞춤형(풍수해, 교통, 산림, 해양, 항공 등) 교육 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 방재기상교육은 '18. 4. 19.~12. 20.까지 90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기상법

2018년도 기상 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실시 • 추진배경 방재기상교육을 통한 국가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제고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자(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의 방재 • 주요내용 기상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기상예보 및 관측 자료의 이해,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법 등

• 시행일 2018년 4월 19일

기상청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개시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 02-2181-0928)

기상청은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더위체감지수'를 '18년 5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 통해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번 서비스는 수요층과 생활환경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더위 위험도 정보와 대응요령을 제공하여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제공대상) 대상(일반인, 노인, 어린이)·환경(농촌, 비닐하우스, 실외작업장, 취약거주환경)별로 세분화하여 제공
 - (제공정보) 3시간 간격(오늘~모레)의 더위체감지수와 단계별 대응요령
 - (제공기간/지점) 5~9월/읍면동 지점
 - (제공방법) 대표홈페이지, 모바일 웹페이지
 - ※ 기상청 홈페이지 〉 날씨 〉 생활과 산업 〉 생활기상정보 〉 더위체감지수
- 또한 정보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그들의 관리자에게 별도로 문자서 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농어촌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 이 서비스는 웹기반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상청에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서비스 신청 주소: https://lifesms.kma.go.kr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개시 • 추진배경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차별화 된 정보 제공 필요

• 주요내용

① 서비스 내용: 대상(일반인, 노인, 어린이)과 환경(농촌, 비닐하우스, 실외작업장, 취약거주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더위체감지수와 대응요령

② 서비스 방법: 기상청 홈페이지, 모바일 웹페이지, 문자서비스(취약계층)

• 시행일 2018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1)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 마련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근거규정 마련('17. 10. 24 시행) ▲특별교 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신설 등이다.

- *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미포함(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이어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간 간 약정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 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위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라도 양국 간의 협정만 으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 으로 기대된다.
 - ※ 도로교통법 공포 당일('17년 10월 24일) 시행
- 또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견인의 근거와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 운전자가 술에 만취되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견인조치가 필요하나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도로 상'의 사고에만 적용되고 '도로외'의 사고는 포함되지 않아 건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도로외의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 ※ 도로교통법 공포 당일('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문콕사고는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명확히 구분하면서 특별사면으로 면제된 자, 보복운 전자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신설하였다.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찰청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고 고속도로의 앞지르기차로의 통행 기준도 18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종전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였고.
- 이와 함께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만 통행할수 있었으나 도로 정체 시에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① 즉시 시행('17.10.24)
 -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 의무 적용
 - * 도로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17. 6. 3부터 시행 중 (위반시 범칙금 12만원)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에도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 현재는 제네바협약(1949년)·비엔나협약(1968년)에 따른 국제운전 면허증만 유효
- ②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18.4.25)
 - 음주운전자 적발시 해당 차에 대한 견인 및 그에 따른 비용 부담 규정 마련
 -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
 - * 의무교육 대상자에 보복운전자 및 특별사면 등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자를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자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추가
- 시행일 2018년 4월 25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①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 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간소화
- ② 고속도로에서 차량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 허용

• 시행일

2018년 6월 19일

05 공공안전 및 질서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심사 간이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044-200-4364)

해외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회사를 해외에 설립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일반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심사기간이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어 15일 이내에 심사가 종료됩니다.

기업들의 기업결합 심사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신속한 기업결합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합작회사 설립심사 간이화 • 추진배경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해외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업의 신고부담 완화

• 주요내용 심사기간 축소(최대 120일→15일)

• 시행일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428)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631)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계획입니다(2018. 4. 19.).

-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 또한, 제품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며,
 -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 소식〉보도〉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 추진배경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②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등을 입증 시,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

③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제조업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 부담

• 시행일 2018년 4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044-200-4467)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하여도 신고가 가능하 도록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 고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기상법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소식〉보도자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 추진배경

첨부하여야 하는 부담 존재

• 주요내용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하여

도 신고가 가능

2017년 12월 말 • 시행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본격 운영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 (☎ 044-200-4912)

상품·안전 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2018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 동 포털은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 안전 정보를 종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관별·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 상품구매단계에서 소비자가 상품 등의 정보를 조회하면 과거 리콜, 피해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행복드림에 상품 구매 사실을 등록하면 사후 위해 발생 시 모바일 등을 통해 고지 및 피해구제 안내
 - ** 행복드림과 피해구제기관을 연계하여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상담접수, 피해구제 신청 및 결과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올해 3월 33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1단계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57개 기관과의 추가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본격 운영 개시 • 추진배경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 주요내용 종합적인 상품 안전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통합창구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

• 시행일 2018년 1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06

국방·병무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산업청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국방부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 발급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 시행일: 2018년 2월 1일



2 국방부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





After

현역병사들과 5년 미만 복무자들에게도 제공 - 찾아가는 진로도움 교육(연 350회, 3.5만 명) - 찾아가는 1:1 취업상담(5천 명, 30여 사여단급 부대)



3 국방부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Before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 병원

After

치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을 국가가 지급 국가 병원

4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시행일: 2018년 1월

Before



After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 발급 -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2018년 2월 1일부터 병 전역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그동안 병 전역 시 발급해왔던 '전역증'은 1991년도에 도입되어 병역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되어 왔으나, 1999년 7월 예비군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대학생의 경우 복학할 때 병역이행여부가 전산 처리 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2013년부터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하고, 취업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병을 대상으로 발급해왔습니다.
 -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그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전역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4만여 명의 인원들이 취업 등을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신청했습니다.
 - 군 경력증명서는 격오지·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성실하게 복무 후 전역한 병의 군 생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 대한민국 남성의 82.8%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병의 성실복무를 유도함은 물론,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저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 추진배경 전역증에 대한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목 적: 현역병의 성실복무 유도와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성과 증명

② 활 용:취업시 자기소개서에 군 복무성과 증명서류로 활용

③ 행정사항: 전역 시 전역증을 발급하던 것을 군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대체

• 시행일 2018년 2월 1일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2017년 9월 11일부터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해군은 親해군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한 민간인을 해군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명예계급을 수여해 왔으며, 특정직공무원인 경찰·소방은 명예경찰관·명예소방관 위촉제도를 조직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활용해 왔습니다.
- 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는 민간인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시비의 소지가 있어 왔고.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따라서 군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 명예계급을 수여해 예우를 하고, 대군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제도와 관련 훈령를 만들었습니다.
 -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 신뢰도 제고 및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인에 대하여 2년의 임기 내에서 명예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고.
 - 명예계급은 명예 하사~대령 사이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군무에 종사할 의무는 없도록 하였습니다.
- 본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군 문화 및 정책홍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군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 • 추진배경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하여 명예계급을 부여함으로써 친군화 및 대군 신뢰도 제고를 추진

• 주요내용

① 대상: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 신뢰도 제고 및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인원

② 위촉권자: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③ 수여범위: 명예 하사~대령

④ 임기: 위촉된 날부터 2년(재위촉 가능)

⑤ 권리·의무의 한계: 명예계급은 개인의 명예에 한정되며, 군무에 종사할

권리·의무는 없음

⑥ 복장착용 및 계급장 부착 : 군 관련 대내·외 행사시에만 가능

• 시행일 2017년 9월 11일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 -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인사가점 부여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2018년부터 임용되는 부사관은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를 할 때, 직무와 관련된 학위·학점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게 됩니다.

- 이전에는 법적근거 없이 각 군의 자체 규정으로 장기심사 및 진급심사 가점을 부여하다보니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이 부족하고. 직무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있어 군사전문성 향상과 야전부대 근무 우대정책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직무관련 학위·학점을 취득하거나 격오지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부사관을 위한 우대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부사관 직무관련 학위 및 학점 취득자(자격증 포함) 및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게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 및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우대 정책을 통해 부사관의 자기계발 촉진 및 군사전문성 향상, 격오지 등 야전부대 우대정책 확 산을 유도하여 유능한 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연장

• 추진배경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직무관련 지식 취득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격오지 등 근무인원에 대해 우대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학위·학점 취득자: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

② 격오지 근무자: 그 경력기간만큼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

③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가점을 부여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양성평등 차원의 여군 인사관리 개선 -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2018년 1월 1일부터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군인사법과 관련 국방부 훈령 상으로는 군인은 보직, 진급, 전역 등 인사에 있어서 평등하게 대우 받아 야 하며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여군의 신체적 특성과 부대환경을 고려하여 전투병과 여군의 경우 보직 제한 기준을 설정해 왔는데,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 평등 인사관리 체계 정립이 요구되었습니다.
- 이에 국방 인사관리 훈령상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 1단계(~'17.12월): 후령상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우선 폐지하여 양성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 제도 정립
 - 2단계(~'18.3월): 미래지향적 여군 인사관리 제도 정립 양성 평등 여군 인사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군 구조 개편과 외국군 여군 인사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여군의 성장을 촉진 및 견인할 수 있는 인사제도 마련
- 군내 여군인력 확대 추진에 따라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여군의 우수한 역량이 발휘될 것입니다.

양성평등 차원의 여군 인사관리 개선

• 추진배경

국방개혁과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로 여군의 성장을 촉진하고 견인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①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보직에 있어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 지휘관(자) 및 특정 직위에 대한 남·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
- ③ 여군 지휘관(자)은 신병교육대, 동원·향토사단, 교육기관 위주로 보직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상비사단을 포함한 전 부대로 확대하여 보직
- ④ 여군 배치 제한부대와 제한직위 규정은 모두 폐지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17년까지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나, 병영생활 필수 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부족한 비용을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서 각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 따라서, 2018년부터는 병 봉급을 외부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일부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사회 진출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 이러한 우대 정책을 통해 부사관의 자기계발 촉진 및 군사전문성 향상, 격오지 등 야전부대 우대정책 확산을 유도하여 유능한 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분	병 장	상 병	일 병	이 병
금액(원)	216,000 405,700	195,000→ 366,200	176,400 - 331,300	163,000→ 306,100

2018년 병 봉급 인상 • 추진배경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

병 봉급 인상(병장 기준 216,000원→405,700만원) • 주요내용

• 시행일 2018년 1월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7)

우리 군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보급합니다.

■ 그간 우리 군의 북한군 AK-74소총의 강심탄인 7N10을 방호할 수 있는 다목적방탄복을 업체투자로 개발하여. '14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보급을 해왔습니다.

※ 탄환의 관통력은 권총탄 → 보통탄(납탄) → 개량탄(강심탄) → 철갑탄 순

- 그러나, '16년 3월 감사원에서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에 대한 지적이 있은 이후,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조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 국방기술품질원에 의뢰하여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조달을 위한 국내기술수준조사를 실시(16.1월~17.2월)하였으며, 국내 방탄복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업체 설명회(16.8월)를 개최하였습니다.
 - 올해 두 차례 실시한 방탄성능시험결과('17.8월, 10월) 국내 복수업체가 군에서 요구하는 방호성능을 충족하여.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경쟁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 동안 특전사 대테러 요원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병력에 한하여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 복을 해외에서 구매해 보급해왔으나, '18년부터는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각 군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 철갑탄를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보급에 따라, 우리 군 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여건 속에서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갑탄까지 방호가능한 방탄복 보급 • 추진배경 장병들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개인 전투역량 강화

• 주요내용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보급

• 시행일 2018년 3월 (업체 납기시부터)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02-748-5184)

병사들의 맞춤형 자기개발지원을 위해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취득 어학능력 향상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병사들의 80%가 대학재학 중 입대하는 바,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을 위해 대학원격강좌 수강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강료 부담 등으로 병사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 또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관련 일부 자격(83개)을 국방부가 위탁받아 무료로 수행하고 있으나, 그 외 자격(444개)은 개인적으로 외부 기관을 통해 응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내년부터는 병사 본인의 자기개발 분야와 학습방식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20년부터 전체 병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 추진배경 군 복무 중 학업단절 해소 및 자기개발 기회 확대

• 주요내용 병사들에게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취득·어학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 지원

- * 연간 최대 1인당 5만원(자기개발비용의 50%) 지원
- * '18년 10개 부대, 2,000명 시범사업 추진
- 시행일 2018년 4월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 02-748-6635)

현역병 및 단기 복무 간부 등 청년 군장병들의 진로 고민을 해소할 복무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전역예정 장병에 대한 전직교육이나 취업상담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를 중심으로 이뤄 졌습니다.
- 내년부터는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도움 교육이 현역병 및 단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연대급 전(全) 부대에서 실시됩니다.
 - 교육은 장병 준비 여건에 맞게, 진로탐색 및 설계를 위한 '진로지도반'과 전역 후 구직활동에 대비한 '취업역량 강화반'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 또한, 전문상담관이 부대로 직접 찾아가 청년 장병 대상 심층 1:1 취업상담을 제공합니다.
 - 2018년에는 청년 장병 5천 명을 대상으로 전역 전 1~2회의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0여 사·여단급 부대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2년까지 전 부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청년 장병 진로·취업 도움 프로그램 • 추진배경 청년 장병들의 진로 고민 및 경력 단절 부담 해소

• 주요내용 ① 찾아가는 진로도움 교육(연 120회, 1.2만 명 → 연 350회, 약 3.5만 명)

② 찾아가는 1:1취업상담(단기 의무복무 장병 5천 명, 30여 사·여단급 부대)

* 육군 1·7·9·15·25·27·30·32사단, 해군 3함대사령부, 해병1사단, 공군 작전사령부, 10·11·16전투비행단, 계룡대근무지원단 등

• 시행일 2018년 2월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7)

공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군병원 진료가능여부와 상관 없이 공상 직업군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였습 니다.
-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 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군인연금법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부담 • 추진배경 하던 직업군인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① 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급 토록 개선
 - * (현행) 군병원에서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치료비 전액 지급
 - ② 신설규정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하여 권리구제
- 시행일 2018년 2월말 경 시행예정(「군인연금법」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예비군훈련보상비 인상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가 인상됩니다.

-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1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 '18년부터는 1만 5천원으로 보상비가 인상됩니다.
- 또한, 현재 예비군훈련 교통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7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18년부터는 30km를 초과하여 통합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게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116.14원/km)를 적용하여 교통비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예비군에게 인상된 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증액 • 추진배경 예비군훈련보상비 현실화 필요

• 주요내용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인상

• **시행일** 2018년 3월(예비군훈련 시작 시부터)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44-202-5420)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은 1인에 한정하여 지급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께 매달 생활지원금(335천원~468천원)을 지급합니다.
 - 생계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손)자녀분들 께 개별안내 하고 있으며, 나라사랑신문, 일간지 등을 통해서 '생활지원금 지급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공지사항〉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팝업창으로도 확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 추진배경 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 ① 소득·재산조사 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자격: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68천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335천원
- 시행일 2018년 1월

• 주요내용

※ 신청접수 받아 소득·재산조사(4주~8주 소요)를 통해 지급여부 최종 결정

국가보훈처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044-202-5644)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75세이상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60%를 감면 지원하였습니다.
 - 2018년 1월부터는 진료비 감면율을 90%로 대폭 확대하고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7급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판정자 등의 상이처 또는 인정 질병외 질병 진료시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였습니다.

잠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2018년 달라지는 의료지원제도

2018년도 의료비지원 강화 계획

• 추진배경 고령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예우 강화

• **주요내용** ①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60%→90%)

- 보훈병원 연령 제한 없음 / 위탁병원 75세이상(비급여, 약제비용 제외)

② 7급 상이자 등 상이처외 질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율 완화(20%→10%)

• 시행일 2018년 1월 시행 예정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044-202-5585)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산재묘소의 벌초비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산재묘소에 대한 벌초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2018년부터는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벌초, 떼입히기 등 유지·관리비를 기당 연 2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계획

• 추진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신설

•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유지·관리비 지원(연 20만원)

> % (기존) 지원 없음 \rightarrow ('18년)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벌초, 떼입히기 등 유지·관리비 기당 연 20만원 지원

2018년 1월 1일 • 시행일

국가보훈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044-202-5585)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께서 사망 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또는 장례주관자 등)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장례지도사 등 인력 지원, 수의·관 등 장례용품 등 1인당 20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극·을지무공수훈자「대통령 위문품」지원 확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044-202-5588)

- '18년도부터는 호국 관련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본인에게도 대통령 명의 위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태극·을지 무공수훈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위문품을 연 3회(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관할 보훈관서장이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 또한, 추석 및 연말 계기 국가보훈처장 위문 시 상이 국가유공자에 한정된 보훈병원 위문 대상 범위를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극· 을지무공수훈자 「대통령 위문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호국 관련 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위문품 지원대상 확대

• 주요내용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대상 위문 추가(156명)

※ (기존) 지원 없음 → ('18년) 계기별 대통령명의 위문품 지원(연 3회)

• 시행일 2018년 2월경

병무청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전까지 송달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15)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병역법이 개정(2017. 11. 28.) 되어 시행됩니다.

- 그동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은 병역법이 아닌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송달 기한이 불명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개정 병역법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 소집점검 등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 • 추진배경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통지서 송달기한을 병역법에 명시

• 주요내용 ① 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제2항 및 제3항 신설

② 개정내용: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기한 30일전으로 명시, 병력동원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일전까지 송달, 그 밖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7)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로 인하여 병역의무자의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불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하여 '18년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처분 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 이번 장기대기 면제 기간 단축으로 병역 이행 종료 시기 예측과 적기 사회진출로 의무자의 불편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 • 추진배경 소집 대기기간 장기화로 인한 의무자 학업·사회진출 지연 대책 마련 요구

• 주요내용 장기대기 사유 면제 대기기간 단축

① (현행) 전시근로역 처분 → 기산시점으로부터 4년 경과자 ② (개정) 전시근로역 처분 → 기산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병무청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5)

2018년 5월 29일부터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이를 공개합니다.

- 지금까지 인사청문 대상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만 국회에 병역 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였습니다.
 - ※ 국무총리, 헌법재판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 2018년부터는 이들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도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국무위원 후보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시성 있는 병역사항 공개 및 사전 검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역사항 공개대상자 확대 계획

- 추진배경 고위공직자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
- 주요내용 병역사항 공개대상 확대(인사청문 대상)
 - ① (현행)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
 - *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 ② (개정) 국회에 임명동의안, 선출안 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공직후보자
 - * 국무위원 후보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포함
-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02-2079-6474)

업체대상 지원사업인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의 연구개발자금 지원대상을 방산업체에서 일반 업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 국방R&D 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18년 3월부터는 방위산업체 뿐 아니라 일반 민수기업에게도 R&D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18년부터 기존 방산분야 참여 일반민수기업의 재정여건 개선 및 우수 민간기업의 신규 방산분야 진입 유도를 위해, 방산육성자금 중 연구개발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방산육성자금 연구개발 지원대상 확대 계획 • 추진배경 국방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방위산업 육성자금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기존 "방산업체"에서 "일반업체"까지 확대

② 방위산업 육성자금 지원 분야 중 연구개발 분야 최우선 지원

• 시행일 2018년 3월

방위사업청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 02-2079-4271)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가 분할될 경우 분할된 신설업체에 대한 인증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청「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인증업체가 합병한 경우에 대한 요건은 있었지만 기존 인증업체에서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여 분할 예정인 인증업체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업체 간 규정해석상의 이견발생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인증을 신청하면, 방위사업청은 ERP시스템 평가 및 원가자료 성실제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업체로 지정합니다.
 -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분할일부터 분할하는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개정내역)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인증업체 분할 시 분할된 신설업체에 대한 인증절차 마련 • 추진배경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절차 마련으로 제도보완 및 업체 애로사항 해소

•**주요내용** ① 인증절차 마련

- 인증신청 :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인증신청 - 인증요건 : ERP시스템 평가 및 원가자료 성실제출 확인(심의위원회 생략)

② 인증유효기간 명시(분할일부터 분할하는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시행일 2018년 1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_

집니다

07

일반공공행정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Before 17년 최저 시간급 6,470원



2 고용노동부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2년차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만큼만 비례 부여



After

신입사원도 입사 1년 미만기간 동안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

정상 연차 휴가 일수 모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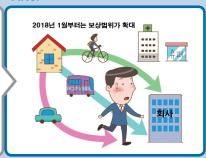
3 고용노동부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Before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 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After



4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Before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 고용안정 위해 사업주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After



5 방송통신위원회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세행일: 2017년 12월



6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Before After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빈름없는 신고자 보호 ① 공익신고 대상 분야 및 법률 5개 추가 (284개) · 채용절차변, 자본시장반, 방산기술보호반, 방위사연반, 중소기연장연법 추가 ②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간 3개월 →1년 연장

외교부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외교부 여권과 (☎ 02-720-2736)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표기된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여권상 로마자 성명의 변경은 로마자 표기 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명백하게 불일치하거나 표기에 부정적 의미가 있는 특별한 경우(Gang, Sin 등)에 한하여 그 변경을 허용하지만, 미성년자 시기 사용하던 로마자 성명도 성인이 된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간 발음 유사성의 기준을 외교부장관이 고시하여 국민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전까지는 유사성의 기준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 앞으로는 고시로서 유사성의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권수록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 추진배경 로마자 성명 표기와 관련한 민원 제기 증가

• 주요내용 ①미성년자의 로마자 성명 표기를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 허용

②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간 발음의 유사성 기준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공개

• 시행일 2017년 12월 중

거주여권 제도 폐지

외교부 여권과 (☎ 02-720-2736)

「해외이주법」상 거주여권 발급 요건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여권법 시행령」에서도 거주여권 관련 조항이 삭제됩니다.

- 지금까지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17년 12월 21일부터 거주여권 발급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해외이주자들도 거주여권 대신 일반여 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이미 소지 중인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까지는 2017년 12월 21일 이후라도 사용 가능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거주여권 제도 폐지

• 추진배경 해외이주자에 대한 신분증명용으로 발급하던 거주여권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행정목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해외이주법」상의 거주여권

발급 요건 조항이 폐지되었고, 「여권법」 거주여권 관련 조항 또한 삭제 및 수정

• 주요내용 해외이주자도 거주여권 대신 일반여권 발급 가능

• 시행일 2017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044-205-4295)

앞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대상 법정교육인 승강기 관리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승강기 관리교육은 집체교육 방식으로만 실시되어 왔으나, 2018년 1월부터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언제·어디서든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교육 수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보도자료〉승강기 안전관리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받는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 수강 가능 • 추진배경 교육 실시 방법이 집체교육으로 한정됨에 따른 수강생 불편 등 개선

• 주요내용 승강기 관리교육의 인터넷 교육 실시

- 1단계 : ('17) 법적 근거 마련(승강기법 시행규칙 개정, '17.9.4.) 및 시스템 구축

- 2단계: ('18) 승강기 관리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실시

• **시행일** 2018년 1월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842)

학업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유학생, 주재원 등이 장기간 외국에 나가는 경우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기도 했으나.
 - 2017년 12월 3일부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 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하여 해외체류신고 하면 출국 후 신고한 주소로 국내 주소가 관리됩니다.
- 해외체류신고 이후 사정변경 시 신고 철회도 가능하며,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신고(거주할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하여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 거주불명등록되는 불편 해소를 위한 해외체류신고, 12월 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도 시행

• 추진배경 해외체류자가 거주불명등록되는 불편 해소

- ①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로 신고
- ② 해외체류 신고 이후 사정변경 시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해외체류자 귀국 시 귀국신고(혹은 전입신고)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 주요내용

※ 보도자료 기 배포('17.11.21.)

행정안전부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842)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도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습니다.
 - 2018년 3월 20일부터는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 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 배우자 등은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외국인 배우자· 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 추진배경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

• 주요내용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 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 가능

② 외국인 배우자 등이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신청 가능

• 시행일 2018년 3월 20일(예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044-203-2846)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외국인 관광접점 분야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다양한 관광분야 인증제도를 통합한 단일 품질 인증제도 운영
- 체계적이고 일관된 인증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여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브랜드 관리를 통해 관광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
- 우수 숙박분야와 쇼핑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야영장, 식당 등으로 확대 추진
 - ※ 우수숙박시설 인증제는 재인증 및 신규인증을 전면 중단하여, 기존 인증업체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한국관광 품질인 증을 받도록 유도

한국관광 품질 인증제 추진계획

- 추진배경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품질인증제 시행
- 주요내용 ① 숙박, 쇼핑 등 내·외국인 관광접점별 품질인증제 시행
 - * 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 등
 - ② 인증업소 대상 지속가능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 * 인증업소 서비스·운영 역량 강화, 사후관리,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 ③ 내·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증 확대 추진
 - * 야영장, 음식 등 위한 신규분야 시범 적용
- 시행일 2018. 상반기 시행 예정
 - * 관광진흥법(한국관광품질인증) 개정안 발의('16.12.30)
 - *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17.11.21), 교문위 전체회의('17.12.1 예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3,770원(7,530원×209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 '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으로 고시(2017.8.4.)

•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7,530원

* 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 1,573,770원(7,530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주당 요급주휴 8시간 포함)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 044-202-7546)

'18.5.29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하여,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 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 추진배경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 주요내용 ①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에서 공제하지 않음

②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 산정

· 시행일 2018.5.29

고용노동부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4)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취약 노동자·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위한「산재보험법령 개정안」입법예고(10.25~12.3)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추진배경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주요내용 ①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

②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하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 시행일 2018년 1월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0)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 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종전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은 40~9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18년 두루누리 사회 보험지원사업 변경 내용 • 추진배경 10인 미만 기업의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고보, 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월 보수 : 140만 원 미만 → 190만 원 미만

② 지원비율 : 신규가입자 60% \rightarrow 90%(5~9인 80%)

기가입자 변동 없음(4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을 폐지

- * 단순노무직종(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예시: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 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 최저임금법 개정('18.9.19)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정비 및 고시 제정 필요
 -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 제외 및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 삭제(시행 '18.3.20.)

최저임금 감액규정 개정

• 주요내용 현행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 2.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개정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12.31.자로 종료 될 예정이었으나.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

- (목 적)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장년고용안정 도모
- (지원요건)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장년 노동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 ⊙ (지원금액) 지원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 *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기업 1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장년 노동자 고용안정

• **주요내용** ① 지원기간 연장: '17년 → '20년

② 분기당 지원 금액 인상: ('17년) 18만원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1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륰에 미달 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에서 최대 1,573,7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됩니다.
-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 '17년의 경우 2018년 1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전자신고는 http://www.esingo.or.kr) 하여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결정 고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 주요내용

- 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 대비 3/4이상 고용: 945,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2~3/4미만 고용: 1,001,7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1/2미만 고용: 1,134,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미만 고용: 1,323,000원
 - ②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573.770원

적용기간

• 부담기초액 2018.1.1. ~ 2018.12.31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18년부터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 및 6급 장애인에 대한 4년 한시지원이 폐지됩니다.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18년부터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중증남성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단가를 10만원 인상(40만원→ 50만원)합니다.
 -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근속연차에 따른 감액 없이 장려금 단가 전액(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을 지원하며, 6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기간 제한 없이 장려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확대
- 주요내용 ① 중증남성장애인 장려금 단가 인상
 - 중증남성 장려금 단가: 40만원→ 50만원(10만원 인상)
 - ② 경증장애인 장려금 감액 폐지
 - 경증장애인 근속연차별 장려금 감액(3년 근속 30%, 5년 근속 50%)없이 전액지원→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 ③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 7급) 4년간 한시지원 폐지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4)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강화 및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17년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만 지원하였으나 사회적경제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2년차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 또한, 지원받은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추가로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는 등 총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확대 • 추진배경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자립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확대

• 주요내용

- ① (지원내용) 창의적·혁신적 수익 창출 모델이 있으나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사업비(브랜드·기술개발, R&D, 홍보·마케팅 등)를 지원
- ② (지원 한도) 최대 지원기간 5년(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3억원 한도
- ③ (대응 자금) 지원회차에 따라 참여기업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 자부담 비율: 지원 1회차 10%→ 지원 2회차 20% → 지원 3회차 30%

• 시행일 2018. 1. 1.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8)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나.
- 2018. 1. 1. 이후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부정수급액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고발 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기준 강화

• 주요내용 ①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제도

- 지원기간동안 지원금을 300만 원 이상 유용 또는 횡령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② (기준강화)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형사고발 조치

• 시행일 2018. 1. 1.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9)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18년 2월 1일부터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원청)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 추진배경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 및 상생협력
-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일정요건 하에 기본재산 사용 가능
 -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
- **시행일** 2018년 2월 1일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 044-202-735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 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 지원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제외: 국가 등 공공부문, 고소득(과세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지원요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고용 유지

③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2018년 1월 1일 부터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2018년부터 지원비율을 50%로 인상합니다.
 - * 지원금액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내용

- ⊙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직접 지원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융자로 지원
 - * 직접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 융자지원: 총 투자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지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 인상 • 추진배경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활용·확산을 촉진하여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촉진

• 주요내용 ① (종전) 시스템 구축비용을 총 투자금액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② (개정) 시스템 구축비용을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66)

2018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 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1호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044-202-7741)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대폭 확대 지원합니다.

- 현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측정 20인 미만, 특검 10인 미만) 의 일부 사업장에 대해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 '18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전체*가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측정 대상 20인 미만 사업장 50,000개소 추정('16년 전체 측정사업장 65,020개소)

작업환경측정·특수 건강검진 비용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 주요내용

- ① 측정·특검 비용지원 수혜 사업장 증가 (예산: '17년 121억원 → '18년 392억원)
 - * (측정) '17년 1.6만개소 → '18년 5만개소 (특검) '17년 10만명 → '18년 35만명
- ② 특검 비용 지원 대상 사업장을 기존 10인 미만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2)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74)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 *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18년도 54.216원 예정
 -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추진 계획

- 추진배경 '18년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한액(5만원)과 하한액 ('18년 54,216원) 역전이 예상되므로 상한액 인상 필요
- **주요내용** '18년 상한액 인상(5만원 → 6만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 상한액 인상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10.20.) → 입법예고(~11월, 40일) → 차관회의·국무회의(~12월) → 공포(~12월) → 시행('18.1.1.~)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21)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어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은 해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 2018년부터는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컨소시엄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확대 계획

• 추진배경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훈련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 주요내용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예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 수당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 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18년부터는 12 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수당 수당 확대

• 추진배경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 지원

• 주요내용 ①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 ('18년 신설)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 90만원까지 지원 *'17.11.1.부터 신설하여 운영 중

② 취업성공수당 지원 확대

- ('17) 최대 100만원 → ('18년) 최대 150만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단가를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합니다.

-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지원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시간당 기준 단가를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1,060원 인상(6,520원→7,580원)하게 됩니다.
- 참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일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 추진배경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

• 주요내용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를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

• 시행일 2018년 1월 1일(예정)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2018. 1. 1.부터 혼례비 융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2018년도 혼례비 융자 한도 상향 • 추진배경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한 혼례비 융자한도 상향

• 주요내용 (혼례비 융자한도액 상향) 기존 1,000만원→ 1,25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 진단 및 인생 후반부의 미래 설계를 통 해 중장년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2018년에는 연령 별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구직자 대상 및 재직자 대상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2018년에는 재직자 과정에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 내 성과와 평판 관리가 필요한 40대, 현직 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50대.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60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또한, 워크넷을 통한 자가진단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PC나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현재 상태를 체크 하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lifeplan)

2018년도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다양화

• 추진배경 중장년층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하여 사업의 다양화 추진

• 주요내용 ① 구직자 대상 프로그램을 40대-50대-60대로 구분하여 제공

② 워크넷을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개시

• 시행일 2018년 1월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장년 근로자들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하여 장년 노동자들이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 노동자의 인생 2·3모작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

- (목 적)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 지원으로 점진적 은퇴 및 인생 2·3 모작 지원
- (지원요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18개월 이상 재직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50%를 최대 2년간 지원,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 (제한요건)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개인 질병이나 부상, 쟁의행위, 교육, 육아,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은 제외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활성화를 통하 장년 노동자의 점진적 퇴직과 인생 2·3

모작 준비 지원

• 주요내용 근로시간단축 사유 확대

(현행 사업주 중심 →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포함)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통계청 통계조정과 (☎ 042-481-2065)

국가통계 승인마크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승인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에 부여하는 마크로,

- "국가통계"로서의 의미와 공신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국가통계 승인마크가 새롭게 바뀝니다.
- 국가통계 승인마크를 조사표, 보도자료, 간행물, DB 등 통계 결과 공표 시에도 표기하도록 활용을 확대합니다.

참고

통계청 홈페이지〉새소식〉보도자료〉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계획 • 추진배경 국가통계로서의 의미와 공신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 주요내용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구분	현 행	-	개 정
국가통계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중인(협의) 번호 호	→	THO OPAL STATIST
국가통계승인마크 활용 확대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에 표기	_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 식 및 보도자료, 간행물, DB 등 통계결과 공표 시에 표기

• 시행일 2018년 2월 10일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www.weather.go.kr)" 제공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02-2181-0415)

국민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기상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날씨정보만으로 메뉴체계를 간결하게 구성한 "날씨누리" 사이트(www.weather.go.kr)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기상청 웹사이트(www.kma.go.kr)는 연인원 2억 5천여만 명의 전체 방문자 중 95% 이상이 날씨 정보 이용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나, 지난해 경주 인근의 대형지진 발생 시 방문자가 평소의 10배 이상 순간적으로 급증하면서 웹사이트 접속이 지연되어 큰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고, 방문자 대상설문조사 등에서 날씨메뉴가 행정정보와 혼재되어 필요한 기상정보를 찾기 불편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이에 따라 사이트 첫 화면의 용량을 대폭 경량화하고, 메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날씨정보로 만 구성된 "날씨누리"사이트(www.weather.go.kr)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기상청은 날씨누리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날씨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보강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www. weather.go.kr)" 제공 • 추진배경 웹사이트를 통해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성 증대

• 주요내용 www.weather.go.kr 을 통해 종합날씨정보 제공

- 첫 화면 경량화 및 메뉴 구성 개선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 기존 www.kma.go.kr 은 기상행정정보 제공

• 시행일 2018년 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2017년 12월부터 광역시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과 평창, 강릉 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지상파방송 3사는 2017년 5월 31일부터 수도권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여 다양한 UHD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UHD 프로그램을 10% 이상 편성할 계획입니다.
 - 방통위는 2017년 9월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의결하였으며, 12 월부터는 해당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UHD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상파방송3사는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기종목(컬링, 아이스하키, 스 피드스케이팅)을 UHD로 전 세계에 중계할 계획입니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 계획

- 추진배경 차세대 방송기술인 UHD 방송을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에 도입
- 주요내용 ① UHD 방송은 DTV보다 4배 이상의 선명한 화질과 음질을 구현
 - ② 지상파 UHD 방송환경에서는 IP기반의 양방향·맞춤형 서비스, 이동형 HD 방송, 재난·안전 정보 고지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 ③ '17.5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17.12월 광역시권으로 확대하고, '21년까지 전국 지상파 UHD 방송망을 구축할 계획
- 시행일 2017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해외로밍 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 02-2110-1542)

2017년 12월부터 정액형 해외 데이터 로밍서비스 이용 시 로밍 마지막 날은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이통3사(SKT, KT, LGU+)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 24시간 단위로만 제공되는 정액형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12시간 단위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해외 데이터 로밍서비스 개선 • 추진배경 해외 출국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4시간 단위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4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경

우 이용시간 대비 과도한 요금이 발생

• 주요내용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2017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 044-200-7754)

민간분야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채용절차법', '자본시장법',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중소기업창업법' 위반사항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또한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계약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아울러 신고자를 지원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소식〉보도·해명자료〉공익신고자 보복시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2018년 공익신고제도 주요 변경사항 •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① 공익신고 대상 분야 및 법률 추가(279개→284개)

②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보호조치 신청 기간 연장(3개월→1년),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긴급구조금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보호의무 위반시 벌칙 강화

• 시행일 2018년 5월 1일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_

집니다

08

농림·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농림축산식품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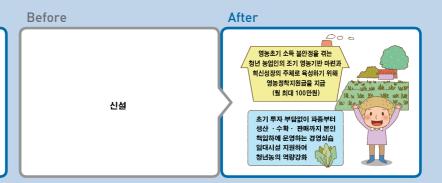
돌봄교실 어린이의 간식은 핫도그, 토스트, 빵, 음료 등 패스트푸드를 많이 제공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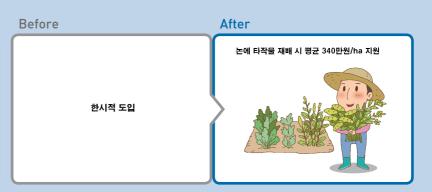
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3 농림축산식품부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 직불 지급기한 폐지

/ 시행일: 2018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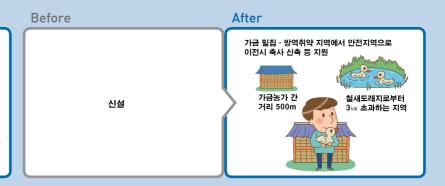
Before

발재배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After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6 농림축산식품부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3.3㎡ 당 35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After



해양수산부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Before

Port-MIS가 지방청 및 항만공사에 분산 운영됨 에 따른 민원불편 초래 항만공사 지방청 부산 부산청 인천

울산

여수광양

After

① Port-MIS 등 7개 항만물류정보시스템 통합 및 서비스 개시 ② 공공정보 연계를 통한 해운관련 민원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 민원 확대

8 해양수산부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Before

인천청

여수청

수산직불금 지원금액이 어가당 55만원

After

수산직불금 지원금액이 어가당 60만원으로 확대 어가당 5만원인상!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9 해양수산부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10 산림청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시행일: 2018년 6월 28일







11 산림청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



After



12 산림청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Before

Before



After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4)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식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돌봄교실 어린이의 간식은 주로 빵, 과자 등 패스트푸드가 제공되었으나, 2018년부터 친환 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합니다.
 - 2018년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식생활 교육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우리 과일에 대한 선호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과일간식 공급

2018년도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과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24만 여명)

② (공급기준) 학생 1인당 1회 150g, 주 1회, 연간 30회 공급 예정

③ (과일종류) 친환경 또는 GAP 인증 과일·과채, 농산물 표준규격 상(上)품 이상

④ (공급형태) HACCP 인증 시설에서 제조한 조각과일로 컵과일 등의 형태

⑤ (지원조건) 과일간식비(교육 포함) 전액 보조(국고50%, 지방비50)

• 시행일 2018년 5월(잠정)

*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지방선거로 늦추어질 경우 공급시기 다소 지연 전망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2)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함)합니다.
 -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 추진배경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필요

• 주요내용 ①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대하여 전액 감면

②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시설과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12.31.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하여 50% 감면

• 시행일 2018년 2월

※「농지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중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4)

2018년부터 청년들이 외식창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경영주 대상 경영역량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추었습니다.
 -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39세이하)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기회 제공 (사업장,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인큐베이팅 시설 이용기간도 기존 4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외식경영주 대상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외식업 경영주들이 희망하는 교육과목, 시간,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 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공모

외식창업 준비 및 외식경영주 교육 지원 확대 주요내용 • 추진배경 외식창업 희망 청년들에게 사업장 운영기회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외식 경영주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

주요내용
 ①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확대(1개소→ 5개소),
 참가자부담 축소(50%→30%), 이용기간 확대(4주→최대3개월)

② 외식경영주 대상 경영역량 강화교육 지원사업 신설

• **시행일** 2018년 1월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7)

2018년부터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농업법인 청년 취업지원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촉진 및 청년층의 영농정착 지원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18~39세 이하 미취업자, 일정 경영모 이상의 농업법인

②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대 600만원(6개월)까지

• 시행일 2018년 1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2)

청년농의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금)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 명을 선발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임대농장) 청년 농업인(희망자 포함)이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체 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임대형 경영농장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확대를 도모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개선하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청년농업인육성대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신규도입 • 추진배경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애로사항(자금 및 영농기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 경영안정자금 지급과 경영실습 시설지원을 추진

- 주요내용 ①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초기 생활·경영안정 자금 지급 (월 최대 100만원)
 - ②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체과정을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영실습 임대시설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2~3)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 재배 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여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타작물 자급률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 '18년에는 5만ha, '19년에는 10만ha(누적)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쌀 생산조정제

쌀 생산조정제 도입

• 추진배경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쌀 수급 안정 도모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

• 주요내용 논에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 시행일 2018년 1월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2)

친화경농업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친화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 종류별·품목별 차등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3년)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 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 또한.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기한 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친환경농업직불

2018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준

• 추진배경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

• 주요내용

① 직불금 단가 인상(만원/ha): 논 +10, 채소·특작·기타 +10, 과수 +20

'17년			
논	유기	60만원/ha	
	무농약	40만원/ha	
밭	유기	120만원/ha	
	무농약	100만원/ha	

'18년		
유기	70	
무농약	50	
채소·특작·기타	130	
과수	140	
채소·특작·기타	110	
과수	120	

②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3년)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 가능

• 시행일 2018년 1월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6)

2018년부터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 40%('18년 90억원)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자부담은 20%)함으로써 지역 단위로 축산 개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시·군·구에서 가금 밀집지역 내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밀집지역 내에 농가를 지원할 것입니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금농가는 관할 시·군·구(축산 담당과)에 지역단위 축산개편 계획,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에 AI 발생 예방 및 발생시 대규모 피해 방지

• 주요내용 ①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이전시 축사 신축 등 지원

- 지원조건 : 국가 보조 40%, 지방비 보조 40%, 지부담 20%

② 의무사항: 가금농가는 안전지역(가금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초과하는 지역)으로 이전

- 강화된 축산업 허가기준 및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

- 방역중점관리지구에 적용되는 엄격한 방역기준을 준수

- 기존 축사는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축사 재건축을 금지

• 시행일 2018년 1월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7)

새로이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려는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 사업을 통해 영농 규모화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3.3㎡ 당 35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 2018년부터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55세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확대(3.3㎡ 당 45천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맞춤형농지지원사업

2018년도 생애첫농지취득 지원제도 • 추진배경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 젊은농업인의 농업자본 형성 지원 강화도 농업·농촌 유입 확대

• 주요내용

- ① 영농경력이 2년 초과이고 만55세 이하의 농업인 중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 농지 취득 지원
- ② 45천원/3.3㎡(136백만원/ha) 이내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매입 후 해당농가 에게 매도, 농가는 연리 1%로 11년~30년간 분할상환
- ③ 지원한도: 1인 1ha 이내(최대 100명), 1회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맞춤형농지지원 사업)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60)

'18년부터 농식품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경험 축적을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를 실시합니다.

-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 를 제공하고.
 - 인턴 기간(최대 6개월) 동안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월 1백만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 대상: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자
- 인턴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평가를 거쳐 창업 보육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 추진배경 농식품분야 예비창업가에게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 제공,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인재양성 및 창업정보 접근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지원내용: 농식품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벤처기업에 매칭, 인턴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창업보육 제공

②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자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사고·질병·영농교육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을 위한 단가를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 겠습니다.
- 또한, 영농과 육아 및 가사활동으로 영농교육에 참여할 수 없던 여성농업인의 영농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육참여시 여성농업인이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2018년도 영농 도우미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농촌 임금 현실에 따른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 필요

• **주요내용** ①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6만원→7만원)

② 영농교육참여 여성농업인의 지원 기준 단계적 완화 (3일교육참여시→2일, 잠정)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2)

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됩니다.
 - * 기존등록대상: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 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GPS 장착대상에 추가되는 차량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 추진배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 주요내용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을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추가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및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보장범위 및 보험료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57개로 확대됩니다.
- 사과·떫은감은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의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사과·떫은감: 30개 시·군→전국)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합니다.
 - ※ 농가별 손해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사업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2018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추진배경 현장 수요에 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주요내용** ① 대상품목 확대(53품목→57품목)
 - ② 종합위험보장방식 사업범위 확대
 - 사업범위: ('17) 배·단감(전국), 사과·떫은감(30개시군) → ('18) 배·단감·사과·떫은감(전국)
 - ③ 전년도 무사고 농가 보험료 5% 추가 할인
- 시행일 2018년 2월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2018년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이 출시됩니다.

-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 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 연금 지급기간 종료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면, 일반기간형 상품 보다 약 20% 내외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

농지연금 맞춤형 신 규상품 개요

구분	개요	특성	법령 등 개정소요	시행시기
전후후박형 (종신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일반종신형 보 다 약 20% 많은 월지급금 지급, 11 년째부터는 적게 지급	종신형 유도 및 젊은 연령 대의 생활자금 필요수요에 대응 가능	업무처리 요령	'17.3월
일시인출형 (종신형)	종신형 연금, 총 대출한도액의 30% 이내 금액을 필요한 시점에 인출 가능	경조사, 질병 등 목돈이 필 요한 경우 대비 가능	공사법 시행령	'17.11.14
경영이양형 (기간형)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 정하고,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반기간형보다 월 지급금 약 20% 내외 수준 증가	공사법 시행령 업무처리요령	'17.11.1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9)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농지법시행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 추진배경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간소화 필요

• 주요내용 농지 훼손이 미미하고, 농한기 등에 단기간 사용하는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은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로 절차 간소화

• 시행일 2018년 5월 중(잠정)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80)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가 2016년 3월 도입되었으나,
 -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공동경영주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2018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 개선 • 추진배경 공동경영주 등록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경영주 동의규정 삭제

• 주요내용 공동경영주 등록제도 개선(경영주 동의 필요 → 배우자 스스로 표기하여 등록)

 (현행〉
 〈개정안〉

 ③ 공동경영주 여부
 ③ 공동경영주 여부(○, ×)

 [] 공동경영주
 ★

 [경영주 동의]성명
 (서명 또는 인)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79)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 됩니다.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 (①공통기준)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②작물별 개별기준)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화훼·채소 990㎡ 이상, 식량 250㎡이상),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 구비 등
 - **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의 피해와 분쟁을 줄이고. 육묘시장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추진배경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육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 : 일정한 시설+16시간 이상의 육묘교육과정 이수

②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 판매 시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

③ 육묘로 인한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시행일 2017년 12월 28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1-204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산림청장)이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단,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2018년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 • 추진배경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수리 간주 규정 도입

• 주요내용 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②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농림축산식품부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20)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중소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합니다.

- 지금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융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 원료 구매자금 확보가 힘들었지만 '18년부터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해 드립니다.
 - 보증보험(최대 5천만원)을 통해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 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원료 농산물 구매 자금의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지원 제도 신규 도입

2018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지원 제도 신규도입 • 추진배경 담보력이 부족한 식품 중소기업의 국산 농축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원료 구매 자금에 대한 부담 경감

지금에 대한 구급 중급

• 주요내용 ① 국산 원료 구매 시 신용거래 보증(최대 5천만원)

② 보증보험료 지원(보험료의 50%)

• 시행일 2018년 3월(잠정, 민간 보증보험사와 상품개발 협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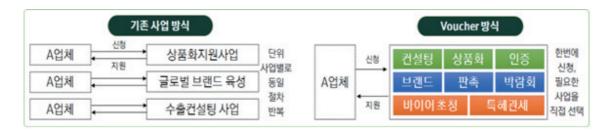
*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리스크 분석 등 상품도입에 필요한 사항 검토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044-201-2176)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수출업체들은 수출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별 사업마다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2018년부터 농식품 수출실적, 국산원료 사용비중 등 수출역량을 진단하여 선정된 수출업체는 수출 바우처 대상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지원한도 270백만원, 자부담 20%)

수출바우처 대상사업

- 글로벌브랜드 육성
- ⊙ 상품화사업
- ⊙ 해외인증
- ⊙ 수출컨설팅

- 해외판촉(국내공모판촉)
- FTA특혜관세활용
- ⊙ 개별박람회
- ⊙ 개별바이어
- * (수출체계에 맞는 지원) 역량진단 ⇒ 상품화 ⇒ 해외인증 ⇒ 해외마케팅(판촉, 박람회 등)
-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업체의 경우에도 기존 8개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지원 사업은 신선농산물, 국산원료 사용업체 중심으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여 농가소 득과 연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신규 도입

농식품 수출업체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여 사업별로 • 추진배경

매번 신청·선정해야 하는 수출업체의 번거로움을 해소

① 수출바우처대상사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상품화사업, 해외인증, 수출컨설팅, • 주요내용

해외판촉(국내공모판촉), FTA특혜관세활용, 개별박람회, 개별바이어

② 지원내용: 지원한도 270백만원, 자부담 20%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62)

동물보호법을 개정(2017.3.21.)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기존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
 -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에 전환됨에 따라 허가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 이전 동물생산업 신고를 마친 업체는 2020년 3월 22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기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동물보호법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 산업 허가제 전환 • 추진배경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 영업(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주요내용 ①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②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③ 미허가·미신고시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

• 시행일 2018년 3월 22일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4)

식품명인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식품명인의 경제적 가치와 식품윤리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였습니다.
- 이에 2018년 1월부터는 기존 평가기준에 산업성, 윤리성도 추가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 산업성은 매출액 등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윤리성은 관계 법률 위반과 사회적 평판 및 직업윤리를 평가합니다.
- 또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8년도 식품명인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 강화 • 추진배경 식품명인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① 지정 평가기준 강화

- (기존) 전통성, 정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보호가치 + (추가) 산업성, 윤리성

②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 위임(농촌진흥청)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진행 중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친환경 농축산 자재 기술 개발 및 국산화, 농식품 안전성 확보 관련 R&D 지원 확대를 통해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8년에는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을 신규 지원('18년 10억원)하고.
- 또한, 농축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관리 및 유통·품질관리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신규 지원('18년 34억원)할 예정입니다.
 - 농협과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농축산물 판매·유통 분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사업안내서비스〉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2018년도 농림축산 식품연구개발 신규 분야 R&D 확대 • 추진배경 농축산 자재 기술 개발 및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R&D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R&D 신규 지원 ('18년 964백만원)

> ② 농식품 생산 및 유통 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신규 지원 ('18년 3.417백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8)

- '14년부터 농촌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18년부터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하여 시행될 계획입니다.
- 또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직접 공모·선정하여 추진했던 방식에서 각 시·도의 자율 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아울러, 농촌형 교통모델을 더욱 세분화·구체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중심지와 낙후된 배후지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농촌형 교통모델사업

2018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 • 주요내용 ① (대상지역) 일부 지자체('17년 18개 시·군) → 전 군지역(82개 군)

* 78개 시 지역은 국토교통부 담당

② (회계개편) 농특회계 → 지특회계(지자체 자율성·권한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044-200-5235)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기반 구축, 사업 아이템의 제품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사업화 R&D)에 창업기업 의무지원비율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R&D 신규과제가 선정되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창업기업이 사업화 R&D 지원을 받는 비중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 2018년에는 창업기업에 대한 의무지원비율을 40%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50%, 2022년까지는 5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 R&D 지원 확대를 통해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창업기업 의무지원비율 설정(선택사항→의무화)

- 1단계 : ('18) 창업기업 의무지원비율 도입(40%) - 2단계 : ('20) 의무지원비율 단계적 확대('18년 40% → '20년 50% → '22년 55%)

②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 신규 지정 및 운영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예선제도 개선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2)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의 수급계획 마련,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및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큰 폭의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그동안은 적정 예선척수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예선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예선 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 되었습니다.
 - 이에 2018년 상반기부터는 항만별 적정예선 척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는 예선 수급조절 제도를 시행하여 예선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 또한, 예선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대조치나 증선에 있어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평가제 등이 도입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선박입출항법 예선제도 주요 개선 사항 • 추진배경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과 공공재적 성격 강화

• 주요내용 ① 예선운용선령 도입(운용 예선의 선령을 제한하여 노후 선박 퇴출)

② 정계지 여건에 따른 등록 제한(정계지가 부족한 경우 등록 거부 가능)

③ 예선 수급조절 및 서비스 평가제

④ 예선배정 자율선택 및 행정관청의 검사·확인권 강화 등

• 시행일 2018년 5월 1일

해양수산부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6211)

지방청·PA 등 7개 기관*으로 분산·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이 '18년부터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 * 지방청(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 Port-MIS가 지방청 및 항만공사에 분산·운영됨에 따른 민원불편 초래 및 유사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 * 업무 관할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은 지방청. 입출항 신고 등은 공사 제출
- '18년부터 단일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화됩니다.
- 또한, 무료대용량민원신고(ebXML*) 체계를 구축하여 EDI 이용료 절감 등 민원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중계망(유료)을 활용한 방식이 아닌, 인터넷기반 무료대용량 신고지원 표준 전자문서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사업 추진 • 추진배경 지방청·PA 등 분산·운영 중인 Port-MIS 및 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막힘

없는 해운항만물류 정보서비스 체계 마련

• 주요내용 ① Port-MIS 등 7개 항만물류정보시스템 통합 및 서비스 개시

② 공공정보 연계를 통한 해운관련 민원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 민원 확대

• 시행일 2018년 1월 29일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6)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육지와의 거리 8㎞ 이상 떨어졌거나 그 미만인 경우 1일 여객선 3회 이하 운항 도서
- 한·미 FTA 여·야·정 합의사항('11.10)에 따라 조건불리 수산직불제가 시범사업('12~'13년)을 거쳐 '14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특히,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원금액이 어가당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 * ('12~'16년) 어가당 50만원/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수산직불금 지급단가 60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인상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 확대 지원

• 주요내용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 지원

(' 12~' 16년) 어가당 50만원/년 \rightarrow (' 17)55 \rightarrow (' 18)60 \rightarrow (' 19)65 \rightarrow (' 20)70

해양수산부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사고·질병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하여 어업일을 해주는 어업도 우미의 지원단가는 인상하고,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비율은 인하할 계획입니다.

- '17년까지는 어업도우미 지원단가(일당)가 7만원이었으나 '18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 어업도우미의 정부부담율을 인상*하고 어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20%로 소폭 인하됩니다.
 - * 정부 70%(국비) → 정부 80%(국비50, 지방비3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 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 등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어업도우미 추진 계획

- 추진배경 ① 어업현장의 평균 일당이 어업도우미 지원단가(1일 7만원)를 상회하여 도우미 구인이 어렵고 자부담 지출이 과다하여 활용실적 저조
 - ② 이에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 어업도우미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기존) 일당 7만원 기준(국비 70%, 자부담 30%) (변경) 일당 10만원 기준(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 상향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어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2%)로 융자 해주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 수산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후계어업경영인),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 '17년까지 단계별 지원한도(기 대출액 차감)는 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 영인 3억원 이었으나.
- '18년부터 단계별 지원한도(기 대출액 차감)는 어업인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5억원, 선도우수 경영인 3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 사업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 주요내용 (기존) 단계별 지원한도(기 대출액 차감): 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변경) 단계별 지원한도(기 대출액 차감): 어업인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5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15)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BBCHP 포함)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자는 노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에서 당해 연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지원액은 해체 또는 매각 대상 선박의 GT당 13만원을 곱하고, 여기에 선종별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 LPG운반선(2.1), 견인용예선(2.9), 광석운반선(0.5), 냉동냉장선(1.5), 산물선(벌크선)(0.6), 석유제품/케미칼겸용(3.4), 석유제품운반선(3.3), 석탄운반선(1.1), 세미(혼재)컨테이너선(0.9), 원유운반선(0.6), 일반화물선(0.6), 자동차운반선 (1.0), 철강재운반선(1.8), 케미칼운반선(5.0), 풀컨테이너선(1.1)
- 사업기간은 1차적으로 3년간(2018년~2020년) 시행 후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여 2년간(2012년 ~202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 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 등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에너지효율이 낮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선박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조기 폐선 후 신조·대체를 유도함으로써 해운기업의 선대 효율화 및 조선소 수

주량 확보를 도모하는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 기반 구축

• 주요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의 보조

금 지원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38)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8년 6 월 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나무의사는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에 있는 수목의 병충해 등의 상황을 진단·처방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됩 니다. 또한 교육만 이수해도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 다만 2018년 6월 28일 당시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기술자는 5년 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산림보호법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 추진배경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여 생활권역 수목의 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현행)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실시하거나 • 개선내용 불법으로 실내소독업체가 대행

(개선) 국가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고 수목진료 수행 가능

• 시행일 2018년 6월 28일

산림청

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 042-481-4106)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레포츠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사무실·매표소·교육장·대피소 등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점·임산물판매장·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도한 건축물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건축물 등의 총 바닥면적은 5천㎡ 이하, 개별건축물은 900㎡(음식점 200㎡) 이하 및 층수를 2층 이하로 제한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

- 추진배경 산림레포츠 민간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주요내용 ①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 설치허용
 -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주차장, 매표소, 사무실, 물품보관소 등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주요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② 산림레포츠시설 건축물의 시설규모 제한
 - 건축물의 총 바닥면적은 5천m²이하, 개별건축물은 900m²(음식점 200m²) 이하, 층수 2층 이하로 제한
- 시행일 2017년 12월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6)

분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면적을 3만㎡로 한정하였으나, 사설수목장림의 설치 면적상한을 10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상향 • 추진배경 산림보호 및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을 확대

• 주요내용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장림 면적상한과 동일하게 확대함

* 사설수목장림 면적상한 : (현행) 3만m² → (변경) 10만m²

산림청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6)

산림보호법에서 위임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산림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혼선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 학교시설 :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시설

* 농로시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농어촌도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산업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와 방위사업법

제3조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의 항공우주산업 시설

*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군사시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 추진배경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국민 혼선 방지

• 주요내용 산림보호법 개정법률(2016.12.27. 공포, 2018.6.28. 시행)에서 위임한 학교

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시행일 2018. 6. 28(잠정, 법제처 심사예정)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 042-481-881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최소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중 공동 저장·건조·가공 시설에 임산물을 적재하기 위한 운반장비·기자재를 지원품목에 포함하였습니다.
- 위장전입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자의 경우 백두대간보호지역에 3년 이상 거주토록 하는 등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추진체계 개선

• 추진배경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지원항목 추가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장비·기자재 (지게차 3톤 미만, 차량 제외 등)

②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최소 거주기간 설정

- 사업 신청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산림청

귀산촌인 창업자금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2)

사유림경영 및 산촌정착 활성화와 임업인 확대를 위해 귀산촌인 창업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7년 대비 100억원 증액한 340억원을 편성하여 보다 많은 임업인의 조기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 * 귀산촌인 창업자금 : ('17년) 240억원 → ('18년) 340억원
- 또한 임업분야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구입·신축 등 정착자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주택구입·신축 자금 융자한도를 50백만원에서 75백만원으로 높이고, 목조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 지원하여 목조주택 건축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공지사항〉2018년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안내

2018년도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 추진배경 귀산촌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 확대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

• 주요내용 융자규모 및 한도

- ('17) 규모 240억원, 한도 세대당 (창업) 3억원, (정착) 0.5억원

- ('18) 규모 340억원, 한도 세대당 (창업) 3억원, (정착) 0.75억원

* 목조주택의 경우 1억원 한도로 지원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신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2)

임업인의 단기 자금난 완화를 위해 경영자금을 신설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소득창출과 경영안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임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기 운영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 임업인경영자금: 100억원
- 지원대상자는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유통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며, 임업경영에 필요한 경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창업초기 임업인이 사업 활성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직면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공지사항〉2018년 임업인경영자금 지원 안내

2018년도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 추진배경 임업인의 단기 자금난 완화를 통해 임업 경영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산림경영,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

② 융자 지원조건

- (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 (융자기간) 2년(거치 1년, 상환 1년)
- (융자한도) 10백만원
- 시행일 2018년 1월

산림청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

산림청 산지정책과 (☎ 042-481-4141)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및 지연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신고수리 간주제를 통해 일선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 적용대상: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의 변경신고, 토석채취허가의 변경신고, 토사채취신고 또는 변경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또는 변경신고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지관리법 개정안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 추진배경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 주요내용 산지에서의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신고자에게 미통보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적용대상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25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10일),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변경신고(10일),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10일), 산지전용신고의 변경신고(10일), 토석채취허가의 변경신고(15일),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15일),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또는 변경신고(15일)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 일부에 한하여 우선구매를 할 수 있었으나. 국산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의 우선구매는 국산재의 소비 촉진을 통한 산림의 선순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목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한 관한 법률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 추진배경 공공부문의 국산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해 국산 목재자급률 제고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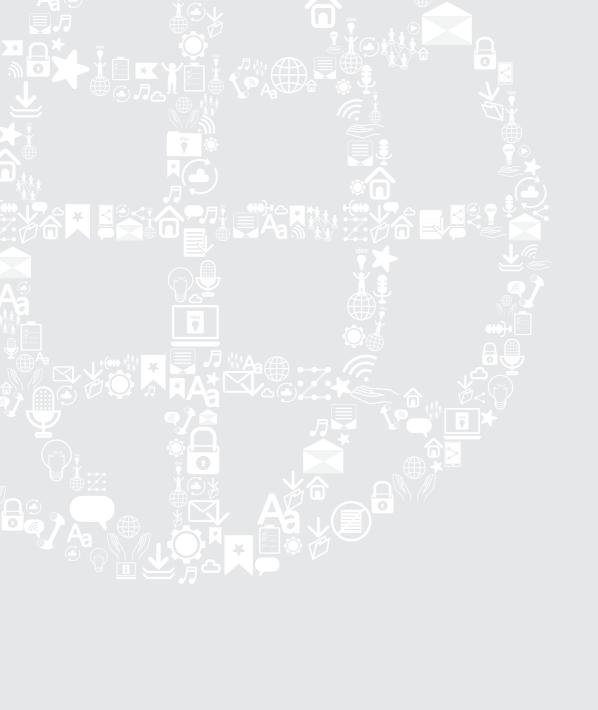
목재산업 발전 도모

• 주요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한 일정금액 미만의 목재 또

는 목재제품을 조달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우선구매하여야 함

•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09

국토개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7)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이 시행됩니다.(18.2.)

- 특례법에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정비계획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보수. 개량. 철거 또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 추진배경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①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간소화, 인센티브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시행일 2018년 2월

국토교통부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전국공개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044-201-3462)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공개는 일부지역에 한하여 공개가 가능하였으나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는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안기준은 안보를 이유로 큰 변화 없이 국가보안기 관에서 통보한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등을 활용하여 AR, VR 등 ICT 관련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산업 분야 창출을 도모 하고자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25cm보다 정밀한 사진도 일반인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17.12월말 게제예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 정보 보안관리규정 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공간정보 공개를 통한 관련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①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공개지역 범위 조정

- 국가보안기관 통보지역 → 전국확대

②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5cm보다 정밀한 사진도 일반인에게 제공판매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044-201-4652)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7년 10월 19일부터 분할 납부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 납부횟수를 4회 이내로 늘려서 토지소유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 지금까지는 조정금의 분할 납부기한 및 납부횟수가 6개월 3회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중 조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납부 기한이 단기간이고 납부횟수가 적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납부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를 통해 단기간에 조정금의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17.10.19. 시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① 지적소관청은 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회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① 지적소관청은 법제21조제5항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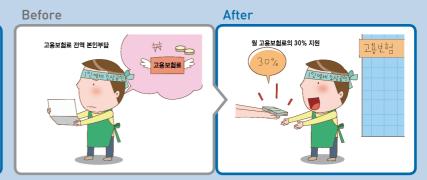
집니다

산업·에너지·자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중소벤처기업부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36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는 1등급(154만원)~7등급(269만원)이 존재
-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영세 소상공인(기준보수 1등급만 해당)은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에 기준보수 1등급인 자에게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 가까운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추진배경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인 1인 소상공인

② (지원금액) 월 고용보험료의 3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에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2-481-4382)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을 신설합니다.

-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을 대 상으로 제조현장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자금입니다.
 - 자금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전용 평가모듈을 활용하여 스마트제조 역량 진단 및 로드맵 제시를 위한 기업 진단을 실시하고.
 - 이와 별도로 자금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계 연수를 실시하여 중소기 업 제조 현장인력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대비 제조현장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주요내용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신설

-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 지원범위 : 제조현장 공정혁신, 자동화 등 시설자금 및 초기 운영자금

대출한도 : 시설 70억원, 운전 10억원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기업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2-481-1679)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융복합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역주력산업 개편에 따라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산업은 63개에서 48개로 조정되고, 이 중 융복합산업은 14개에서 35개로 확대됩니다.
 - * 제조+ICT(7개→24개), 제조+서비스(7개→11개) 등 융복합형 산업 확대
- 개편된 48개 산업에 대해서는 연평균 2,500억원(지방비 포함)을 투입하여, 관련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8년부터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지정하여 '전담PM' 매칭, 사업화 촉진, 상용화R&D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향후 5년간('18~'22)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 성장을 집중 지원하여 그 중 200개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지역특화 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방향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 변화 대응 및 지역 중추기업 육성

주요내용
 ① 지역주력산업 조정 및 융복합산업 비중 확대
 (전체산업수: 63개 → 48개로 조정, 융복합산업 14개 → 35개로 확대)

② 지역스타기업 육성 (향후 5년간 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하여 종합 지원)

• 시행일 2017년 12월 (신규 사업공고 예정)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지역주력산업 개편 주요 내용

- 주력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제조+ICT/서비스 등 융복합 확대로 고부가가치화, 다각화 추진
 - 4개 시·도 주력산업 63개 → 48개(△15개)로 구조조정
 - 제조+ICT(7개→24개), 제조+서비스(7개→11개) 등 융복합 산업 확대

•		- 11 - 2 1-1	,	11	1-1-(7-11	111/1/						제조+(ст 🦲	제조+서비스
	현행 (2015-17년. 63개)					개편(안) (2018년 [~] , 48개)								
지역	바이오의약 식품뷰티	기계소재 화학,	l/전기 /세라		정보통신 서비스	에너지 환경		바이오의약 식품뷰티			/전기전자/ 세라믹		정보통신 서비스	에너지 환경
부산	바이오 헬스		:정밀 융합 쿠품	금형 열처리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메디컬	지능학 기계부				지능 정보 서비스	클 린 에너지
대구	의료기기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정밀성형		스마트 지식 서비스	스마트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의료 헬스케어	첨딘 소재부					분산형 에너지	
광주	생체의료 소재부품		복합 금형	초정밀 생산 가공 시스템	디자인			디지털 생체의료	스마트 가전	광원	융합	복합 금형		
대전	메디 바이오	로봇 자동화	금	속가공	지식재산 서비스 무선통신 융합			바이오 기능성 소재	로 5 지능 ³				무선통신 융합	
울산		. – –	조선 자재	정밀 화학		에너지 부품 환경			친환경 자동차 부 품	조선 해영		첨단 화학 신소재		친환경 에너지
강원	웰니스 식품			네라믹 신소재	스포츠 지식 서비스			웰니스 식 품			트	라믹 루 합 <u> </u> 소재	레저휴양 지 식 서비스	
충북	바이오 의약	반도체	·마트 IT 부품	수송 기계 부품		태양광		바이오 헬 스	스마트 IT부			송기계 재부품		
충남	동물 식의약		인쇄 전자	디스 플레이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식 품	친환? 자동 부 품	타	- 1	h세대 디스 들레이		
전북	건강기능 식품	기계부품 경량소재 성형	기 복	양설비 ' 자재 합섬유 소재				농생명 소재식품	지능형 기계 부품	해 설 기자	비	탄소· 복합 소재		
전남	바이오 식품	금속소재 가공		유화학 기반 분자소재		에너지 설비	\Rightarrow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첨딘 운송기 부품	기				에너지 신산업 청색· 청정환경
경북	기능성 바이오 소재	모바일 글	지털 기기 쿠품	성형 가공		에너지 소재부품		바이오 뷰 티	기능성 섬유	지는 디지 기	티털	하이테크 성형가공		
경남	항노화 바이오	생산	기계 소재 쿠품	항공		풍력 부품		항노화 바이오	지능형 기 계	나 <u>></u> 융합 부吾	할	항공		
제주	물응용 청정 헬스푸드				관광 디지털 콘텐츠	풍력 · 전기차 서비스		청정 헬스푸드					지능형 관 광 콘텐츠	스마트 그리드
세종	바이오 소재	자동차 부품						정밀의료	첨단수 기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 042-481-440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및 수행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집시기를 확대하고, R&D중단 제, 최종평가 유예제를 도입합니다.

- 종래는 연초에 집중된 모집시기 탓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수요에 적기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R&D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과제 신청·접수 등 시행 주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존에는 기업이 희망해서 과제를 중단할 수는 없었으며, 최종평가가 성공 혹은 실패의 두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 2018년에는 장기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의 희망에 따라 R&D를 중단하는 제도와, 기업이 자체자금으로 과제 완성을 원할 경우 최종평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중소기업 R&D 혁신방안 발표(예정)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 추진배경 수요자 중심 R&D 제도 선진화

•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 R&D 모집시기 분산·확대

- 창업성장(연 5회), 기술혁신(연 3회)

② R&D 중단제, 최종평가 유예제도 도입

• 시행일 2018년 상반기(지침 개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교육 상시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 접근성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소상공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위주였으나, 2018년 사이버 평생 교육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존 플래시 기반 E-러닝이 개방형 모바일 교육 환경 트렌드에 부적합한 단점이 개선되어, 온라인 교육이 강화됨으로써 교육 비용의 감소, 교육 기회 확대, 교육 실적 및 성과 확산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2018년도 소상공인 사이버 평생 교육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생업의 어려움, 물리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 교육 환경 개선

• 주요내용 ① 개방, 공유, 참여형 온라인 공유 교육 플랫폼 구축

② 풍부한 소상공인 교육 콘텐츠 개발 제공

• 시행일 2018년 9월(잠정, 시스템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보일러,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 044-203-5383)

고온·고압 검사대상기기(산업용 보일러, 압력용기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검사대상기기 사고통보 및 조사규정이 없어 사고원인 조사가 미흡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한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 1일부터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대상기기의 사고원인 규명을 보다 신속·명확하게 하여 조사결과를 통한 제도개선과 유사사고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으로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도 안내

• 추진배경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

* '17.10.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2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개정 및 공포

주요내용① (대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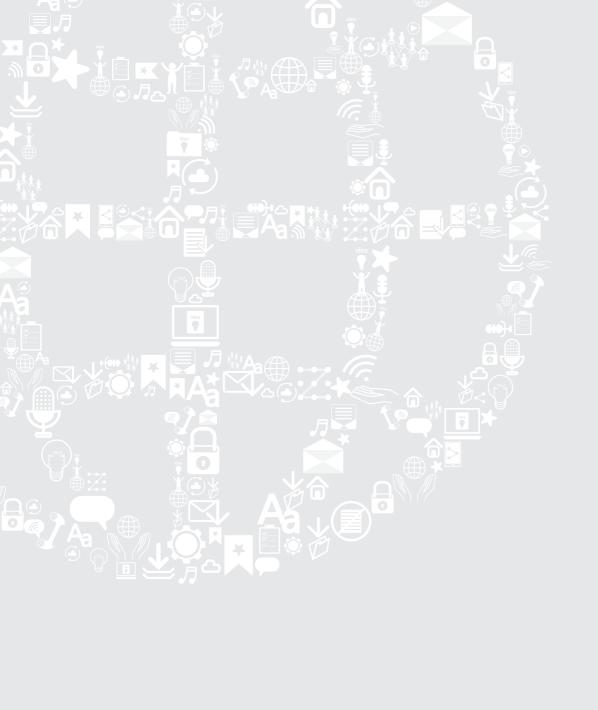
① (대상기기) :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② (적용대상)

- 사고통보: 검사대상기기설치자

*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 조제1항제3호)

- 사고조사 : 한국에너지공단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11

환경

환경부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Before 2009년 이전에 설립된 어린이활동공간 미관리



2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치량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 상향

**//>
세행일**: 2017년 12월 28일





3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Before





4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

//>//>// 시행일: 2017년 12월 28일

Before



After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의무화

Before





6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 시행일: 2017년 12월 28일

Before



After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54)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유 치원으로 확대합니다.

-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시설규모, 설립시기 등에 따라 법 적용 시기가 달랐습니다.
 -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m²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환경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증축,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환경보건법(2016.1.27. 공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확대 • 추진배경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활동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

• 주요내용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의무 부여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3%→5%)과 상한액 상향(100억→500억)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24)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①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②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수 없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만 가능함에 따라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한 소비자 구제방안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18년부터는 생산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부품교체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작자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고 인증 서류 위조 등 새로운 위법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과징금 상한액이 산출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서류 위조등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이 부재하였으나
 - '18년부터는 이러한 입법공백이 해소되고 처분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 환불·재매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 상향

• 추진배경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계기로 자동차제작자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대 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개정·공포('16.12.27. 개정)

• 주요내용 ① 부품보증기간내에 제작사에 결함 발생시 차량의 교체외에 환불·재매입이 가능

② 인증사항 위반시 과징금 부과율(3%→5%)과 상한액(100억→500억) 대폭 상향

• 시행일 2017년 12월 28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044-201-6716)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철강, 비철 금속, 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 또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조건 등을 재검토, 기술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해나가게 됩니다.
-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 석유정제, 반도체, 전자제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http://ieps.nier.go.kr)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추진 계획 • 추진배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주요내용
 ① 10개 개별허가→1개 통합허가

② 획일적 기준 적용→기술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적용

• 시행일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 ('17~) 발전, 소각, 증기공급 ('18~) 철강, 비철, 유기화학 ('19~)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20~) 펄프, 종이, 전자제품

('21~)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2)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여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구매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화학물질관리법관리법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 • 추진배경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

•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거친 후 판매

-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 2017년 12월 28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의무화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2)

유해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은 안전한 유통과 취급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안전기준 고지가 의무화됩니다.

- (판매업 신고) 기존에는 시약 판매자는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되었었으나(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 장은 영업허가 대상), 앞으로는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고지의무)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화학물질관리법관리법 시행규칙

시약 판매업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및 고지의무화

• 주요내용 ① 시약 판매시 판매업 신고 및 대표자·상호·소재지 등 변경시 변경신고

- 미신고·거짓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시약용기나 서면, 판매장 입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약의 안전기준 안내

-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행일 2017년 12월 2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 지금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시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 취급시설 가동 중단시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6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입법예고 중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화학물질관리법관리법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시 안전기준 강화

• 추진배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범위 확대

•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 중단시 신고

- 미신고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행일 2017년 12월 28일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 044-201-6885)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자동차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구매 시 혜택 지원 중
- 지금까지는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관할 지자체에 본인의 저공해자동 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 2018년부터는 자동차제작사에서 저공해차량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회할수 있게 되어,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 발급을 신청할 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할필요 없이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저공해자동차 표지 주요 혜택: 공영주차장 20~6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지자체별 혜택 확인 필요)

참고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http://hybridbonus.or.kr)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 운영),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역할 분담
 ① 자동차사: 저공해자동차 제원 입력

② 시군구 표지발급 담당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차 여부 확인 및 표지발급, 발급대장 관리

③ 시스템 운영: 한국환경공단(환경인증검사처 자동차환경계획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 044-201-6887)

정부의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단계적 축소·폐지 방침에 따라 '18년부터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을 5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 '17년까지는 1대당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일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 적용대상은 '18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백만 원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자료> (참고)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산,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2018년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축소 • 추진배경 2018년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인하

• **주요내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인하(100만원→50만원)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 신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7367)

화재·폭발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4월부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 2018년에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유해성 정보를 작성, 취급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게시하도록 하여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천만원이하), 행정처분기준(경고, 영업정지 등) 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신설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화 추진 계획

- 추진배경 폐기물 취급 현장의 지속적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
- 주요내용 ① (배출자)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변경시 재작성), 게시
 - ② (처리자) 유해성 정보자료 비치(수집·운반차량 또는 처리시설 등)
 - ※ 그 외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대상 폐기물 종류, 작성방법 및 과태료,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함
- 시행일 2018년 4월 19일(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진행중('17.10.27~12.6)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54)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도가 시행됩니다.

- 적용대상은 연평균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18개 업종 약 2,500개 사업장이며,
 - 환경부는 각 개별 사업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매립저감 및 순환이용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8년 6월 최초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적용 대상자가 자원순환정보체계에 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시행
- 주요내용 ① (목적) 국가 자원순환목표('18년 수립 예정) 달성을 위해 사업장별 목표 설정 및 실적 점검·관리
 - ② (적용대상)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18개 업종, 약 2,500여개소) *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 ③ (이행절차) 사업장 별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 설정, 미이행시 사업자 명단·실적 공개, 기술진단 및 지도 등 조치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47)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토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순환자원 인정은 최초 인정 시 3년, 이후 재인정받을 때마다 5년씩 그 효력이 유지되며,
 -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인정 취소를 통해 다시 폐기물로서 관리되게 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 추진배경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 주요내용 ① (목적) 일정 기준(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순환이용 촉진

② (신청대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재활용업자, 고물상 등

③ (이행절차) 사업장별 신청을 받아 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인정여부 결정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47)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 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부과요율은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이며.
 -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하는 경우, 매출액 120억 미만인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소각량에 대해서 연 1회 부과·징수되며.

• 주요내용

-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분할납부,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 추진배경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시행

- - ① (목적)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약 3만개소)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
 - ② (부과요율)

폐기물 등	분류	매립	소각		
생활폐기	기물	15원/kg	10원/kg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25원/kg	10원/kg		
사립성페기물	불연성	10원/kg	-		
건설폐기	기물	30원/kg	10원/kg		

③ (감면기준)

감면기준
당해연도: 100%, 이후 2년: 50%
75% 이상: 75%, 60~75%: 60%50~60%: 50%
100%
10억원 미만: 100%, 120억원 미만: 50%
100%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55)

새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온실가스 통계관리는 국무조정실, 배출권거래제 총괄은 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 등 집행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환경부·농림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 2018년부터는 기본·할당계획 수립,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 등 총괄업무와 업체별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집행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부문별 관련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 부문별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소관분야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추진배경 새정부 국정과제로「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정상화」채택

• 주요내용 ①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설정·관리(국조실-총괄·조정, 환경부-실무지원)

② 배출권거래제 운영(환경부-총괄·운영, 부문별 관련부처-소관업계 감축사업 지원)

③ 관계부처 협업강화(배출권거래제 협의체 운영, 주요 운영지침 공동고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7)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중 석면과 오존 항목을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 하이드 등 유지기준 5개 항목과 라돈, 석면, 오존 등 권고기준 5개 항목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였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권고기준 5개 항목 중 초과사례가 없고 실내오염원이 적은 오존은 삭제하고, 공기중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반면, 위해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가 새롭게 권고기준으로 추가되어 관리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뉴스·공지〉보도·해명자료〉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변경 • 추진배경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 재검토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 변경

 (기존) 석면, 오존 → (변경) 미세먼지(PM2.5), 곰팡이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 044-201-6673)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의 인센티브 산정시기를 가입일 다음 월부터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신규 참여가구는 가입일 기준으로 다음 반기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 2018년 1월부터 가입일 기준으로 다음 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하여 인센티브 지급시기를 반기 정도 당길 예정입니다.
- 따라서, 2018년 2월에 가입한 가구의 경우, 3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에 인센 티브를 받을 수 있어 기존의 규정보다 반기 정도 지급시기가 빨라집니다.
 - ※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18.2월 가입자는 다음 반기인 7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이 시작되어 다음연도('19년) 6월에 지급 받음
 - ※ 인센티브 정산은 반기 단위로 실시되는데, 상반기에 대해서는 7월~11월, 하반기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5월에 이루어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 추진배경 신규 참여가구의 인센티브 산정시기와 지급시기를 당겨서 온실가스 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로 제도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인센티브 산정시기 변경

(기존: 가입일 다음 반기 → 변경: 가입일 다음 월)

• 시행일 2018년 6월 1일 (예정)

※ '18.1월 가입자부터 소급적용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2018년 6월1일부터 선박과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선박·해양시설의 구조 도면 등의 정보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2018년부터 주요 설비의 변경 및 개조 등 오염비상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오염물질 이송·배출작업을 지휘·감독하도록 의무화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 선박입출항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안전법 등 해수부 법률 9건, 국회통과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추진배경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주요내용
 ① 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의무화(최초 작성 시 검인 → 주요 내용 변경시도 검인)

②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인 지정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12

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 신고 의무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042-481-498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이를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해당 종의 개체 수 및 사육·증식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

• **주요내용** 제41조(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주요내용
 2018년 5월 29일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 대비표**

01 금융·재정·조세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신설	■ 직무 관련 금품수수 세관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 신설 • 세관공무원이 금품수수 시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 에 요구 ※ 단, 형사 처벌 받거나 변상책임 등	관세법 (' 18.1.1)
및 납세자 처벌 강화		이행시 감경 가능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금품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내 과태료 부과 ※ 단, 형사처벌 받은 경우 미부과 또는 부과 취소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 세관장은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경우도 조사 가능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 수시 관세조사 사유 확대• (좌 동)	관세법 (' 18.1.1)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신설》 ■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조사 받은 자를 재조사할 수 없음 •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할 경우 • 기조사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시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 〈신설〉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조사 사유 추가·조정 (좌 동) 산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다만, 재조사 범위를 결정서 주문 범위 내로 한정 (좌 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한도)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 중증환자 공제한도 폐지 • (공제한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한도없음 (추가)	소득세법 ('18.1.1.)
대상 확대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7)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공제율)신용카드: 15%체크 카드·현금영수증: 30%대중 교통·전통시장 사용분: 30% • (공제한도) 200~300만원대중 교통·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공제율) (좌 동) (좌 동)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 서·공연비 지출분 : 30% • (공제한도) (좌 동)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전통시장 등, '18.1.1.) (도서·공연비 '18.7.1.)
등 소득공제 확대	원 추가	의 도서·공연비 지출분: 100만원 추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7)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신설	■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 100% • (적용대상)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 *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	조세특례 제한법 (' 18.1.1)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ਧ ੱਡ	업에 직접 사용되는 육상양식장 토지 등 • (감면한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적용기한) '20.12.31. [조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경산지에 대한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 (감면율) 자경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조세특례 제한법 (' 18.1.1)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신 설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년 이상 50%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영농자녀 증여세	■ 증여자·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5년간 1억원 한 도로 감면 • 적용대상 - 농지(40,000㎡ 이내), 초지 (148,500㎡ 이내), 산림지 (297,000㎡ 이내)	• 적용대상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1.1)
감면 특례 대상 확대	〈추 가〉	- 어업용토지(40,000㎡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 이내)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 기관 - 일부 연구중심병원 등	■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 - 모든 연구중심병원 등	관세법 시행규칙 ('18.2.)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소득세법 (*18.1.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대주주 : 20% -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 양도소득세율 인상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좌동)	소득세법 §104① §107② (*18.1.1)
누진세율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엔젤투자 소 득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엔젤투자 소득공제 1천5백만원 이하분 1천5백만원 기하분 5천만원 이하분 5천만원 초과분 (투자대상기업) 벤처기 창업 3년이내 기술신용 금・중소기업진흥공단 우수평가기업, 창업 3 R&D투자 3천만원 이	용보증기 기술성 년이내	• (추 창압 - 투자 이니 * 투자 연년 • (적	제율 상향 및 대상 확 3천만원 이하분 3천만원 이하분 5천만원 이하분 5천만원 조과분 가) 크라우드펀딩을 : 겁 7년 이내 기술우수 나 당시 벤처기업 등이 대* 이예 해당되게 되는 말 이내 용기한) '20.12.31. 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17년 세법개정안 :	100% 70% 30% 통해 투자하다기업 등 추 이니더라!는 기업 추;	가 도 3년 가 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16 (' 18.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절 세특례 •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 하고 만기 인출 시 - 소득 200만원까지 비교 원 초과분은 9% 분리교 - 저소득자(총급여 5천민 소득 3천5백만원이하) 원까지 비과세, 250만 9% 분리과세) - (신설)	익을 통산 사세 200만 사세 원, 종합 250만	• (좌 - 저소 5백 만원 - 농아	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동) 느득자(총급여 5천만원 만원이하) 400만원까 년 초과분 9% 분리과 러민 400까지 비과세, 분리과세)	^실 , 종합소= 가지 비과세 세)	등 3천 , 400	조세특례 제한법 §91의18 (* 18.1.1)
(ISA)제도 개선	인출제한: 의무가입기: 저소득자의 경우 3년)(계약을 해지하거나 인: 세액 추징 -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 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	이전에 출시 이한 사유	농(거니 세약 - (좌동	출제한: 의무가입기긴 거민의 경우 3년)이전 나 납입원금을 초과히 백 추징 동) 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17년 세법개정안	에 계약을 는 금액을 기〉보도자료〉	해지하 인출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 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 시가 적용	■ (좌 동)	소득세법 (' 18.1.1)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신설〉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소득세 1년간 감면한도 • 1억원 ■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①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 -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좌 동)5년간 감면한도 일원화	조세특례 제한법 (*18.1.1)
한도 정비	② 3억원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만 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 2억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매수청구·협의매수·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 •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조세특례 제한법 (' 18.1.1)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 (적용기한) '17.12.31.	• (적용기한) '20.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 자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은	■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연도합신의 모합신입구원은 제외) • 미등기양도자산 〈추 가〉 ■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보유: 50%	(좌 동) (장 동)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단일세율 적용	소득세법 (분양권:' 18.1.1 주택:' 18.4.1)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 1년 미만 보유: 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 2년 이상 보유: 6~42%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과 조합 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보유한 자 포함)가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제 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 가산)	• 보유기산에 관계없이 50% 단일세울 석용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2주택자 또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보유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제55 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 가산 •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 주권의 수가 총 3개 이상인 자가 주택 양도시: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 가산 ■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삭 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준공공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양도 소득세 100% 감면 * 의무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 제한규제가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 - 준공공: 1호 이상 임대 - 기업형: 100호 이상 임대 • (감면대상) ' 15.1.1.이후 신규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주택 • (감면요건) 85㎡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 (적용기한) ' 17.12.31,까지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18.12.31.까지 취득분	조세특례 제한법 (* 18.1.1)
정도보극세 남편 적용기한 연장	취득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의 7% 세액공제	■ 공제율 인하 - ('18년) 7% → 5% - ('19년 이후) 5% → 3%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8.1.1)
신고세액공제 축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 수혜법인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 요건 • 수혜법인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아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 ▼ 가〉 	■ 과세 적용 요건 추가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 공시대상 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 증여의제이익 과세 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8.1.1)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40%)×(주 식보유비율-10%)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 래비율-5%)×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전기자동차) 면제한도: 대당 200만원적용기한: '17.12.31. 〈추 가〉	■ 대상 추가 • (전기자동차) 면제한도: 대당 300만원적용 기한: '20.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 18.1.1)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044-215-43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나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	■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를 한 물품 : 물품을 수입한 화주 ■ 연대납세의무자 • 공유물이거나 공동 사업에 속하는 경우 : 공유자 또는 공동 사업자 •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 관세를 추징할 경우, 화주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인	■ 납세의무자 명확화 •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연대납세의무자 대상 추가 • (좌 동) • 관세 포탈 등을 위해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	관계 부서 관세법 (* 18.1.1)
		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 관세 포탈, 부정 감면의 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 된 자(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도 포함). 단, 관세포탈 또는 면탈로 인한 이득 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공개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공개 대상 확대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관세법 (' 18.1.1)
공개 대상 확대	체납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설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 • 보세구역 반입 없이 수출 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관세법 (' 18.1.1)
신고 제도 운영 강화	선 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환특법에 따른 부정환급 포함)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과세표준, 세액결정을 위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확대 • 관세법상 모든 범칙사건*을 (환특법상 모든 범칙조사 포함) 조사하는 경우 *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밀수출입죄 등도 포함	관세법 (* 18.1.1)
파구네'S 됩내	*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 보세 판매장에 대한 조사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사건 의 경우 변호사·관세사가 조사에 참여, 의견 진술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 특송화물업체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는 대상 • 목록통관상의 수하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하게한 경우 〈추 가〉	■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 (좌 동)	관세법 (*18.1.1)
정보 제출대상 확대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는 탁송품을 수입신고서 상 납세의무자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하거 나 하게 한 경우 * 自家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다량의 건강 식품, 약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 다음 업무 종사자는 형법상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 대행기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수탁기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 ・다음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관세법 (*18.1.1)
대상 확대	심사업무 수탁기관 등 〈신 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품목분류위원회 -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 관세심사위원회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 원산지확인위원회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내역	■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인출 내역 • (제출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제출대상)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 - 신용카드 물품구매* 내역 * 해외사이트 온라인구매도 포함	■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제출대상 확대 • (제출기준) 물품,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불이상 기준 적용 • (제출기한) 실시간	관세법 시행령 (*18.2.)
제출대상 확대	- 신용카드 현금인출 내역 • (제출기준) 분기별 총액 (물품+인출) 5천달러 이상 • (제출기한) 매분기 다음 달 말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 세액의 결정·경정·처분 또는 사 전승인일로부터 2개월 내 경정 청구 가능	■ 3개월로 확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관세법 ('18.1.1)
기간확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044-215-4453)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의제기 기간 규정 없음	■ 동종·동류 비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관세법 시행령 (* 18.2.)
이의제기 기간 신설		2017년 후속 시행령개정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044-215-4453)
금지금에 대한 관세	■ 금거래소 거래용 금지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 •'17.12.31.까지	■ 금거래소 거래용 금지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 ' 19.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18.1.1.)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거주자의 국외전출시 보유국내주식의 평 가차익에 대해 과세	
		• (과세 대상) 국내주식	
		• (납세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전출하는 거주자	
		i)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 보유	
		ii) 국내주식을 일정 비율(금액) 이상 소유	
		• (세율) 20%	소득세법 ('18.1.1.)
		• (과세표준) 국외전출일 당시의 국내주식 등의 시가	(10.1.1.)
	신설	•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세액공제신청서 제출시 세액공제 허용(既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방식)	
		 (손실공제) 실제 양도시 국외전출시보다 가격이 하락한 경우 가격하락분 관련 세액 에 대해 손실공제 허용(既납부한 경우 경 정청구 방식)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 출세') 신설		• (신고·납부)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납부	
		- 무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납부유예) 일정 요건(납세담보, 납세관 리인 지정 등) 충족시 5년을 한도로 납부 유예 허용	
		- 실제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내 세액 납부	
		-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 하여 납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환급) 국외전출일로부터 5년 내 국내재 전입 등으로 거주자가 되는 경우 등 기납 부세액 환급	(044-215-4422)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공제 • (요건) 투자·고용 동투자금액의 3~8% 중투자금액의 3~8% 중투자금액의 3~8% 중 등이만원 추가) • (점용대상) 상시근로 • (지원기간) 1년 • (다른 제도 중복 여부료 세액공제, 각종 투등과 중복 적용 배제	시 증가시 공제 1인당 중소기업은 자 자 보) 사회보험 투자세액공제	를 통합 • (요건) 연간 일 상시 근로자 청년 정규직, 장애인	당출투자사합·재설계 투자가 입 무자가 입 실정금액 : 중소 수도권 700 만원 1,000 만원	네액공제 하여 고 냈더라도 공제 기업 지방 770 만원 1,100 만원		대기업 - 300 만원	관계 부서 조세특례제한법 (' 18.1.1)
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고용증대세제 • (요건) 청년정규직 근시 1인당 1,000만원 만원, 대기업 300만 • (지원기간) 1년 • (적용기한) '17.12.3	!(중견 700 원) 공제	수준으로 • (지원기 * 고용 한 다 • (다른 기 세액공 중복 작 • (적용기	로 지원 'I간) 대기 인원이 유 아음 해도 네도 중복 제, 각종 석용 허용 'I한) '20.	I업 1년, 수지되는 세액공자 여부) 사 투자 세 ⁽⁾ 12.31. 보홈페이기 I법개정인	중소·중건 경우 고용 네 적용 - 사회보험료 백공제 등	년 2년* 양이 증가 문 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과 표 0~2억원 2~200억원 200억원 초과	세율 10% 20% 22%	2· 200 3,00 (참고) 7 2	2017년 세	대원 과 보홈페이지 제개편 보 선소득세법	세 월 (좌 등 (좌 등 259)〉보도자료 및도자료 및 보도자료 및 법인세별 도자료	(5) (6) (6) (2) (2)	법인세법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 사업목적 구조조정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 • 승계받은 사업 폐지 •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50% 이상 처분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에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 (좌 동) • (좌 동)	법인세법 (*18.1.1. 이후 합병·분할 하는 분부터)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 는 근로자 수 합의 80% 미만인 경우*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 로 완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100%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18귀속) 70% → ('19귀속) 60% (좌 동) 	법인세법 (70%, '18.1.1. 60%,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한도적용 제외대상 •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 (좌동)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세관장이 결정 · 경정 전에 수입 자가 수정신고 ·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현행과 같음) •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 18.1.1)
	수정신고 하는 경우로서 ①수입 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②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 명하는 경우	로서 ①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②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 을 증명하는 경우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 (044-215-4321)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 맥주의 재료범위 •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	■ 재료범위 확대 •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 유된 맥주를 제조 가능	개별소비세법 (*18.1.1)
11 -1 - 11 -1 -1 -1 -1 -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044-215-433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특수관계자간 내부 가격 결정자료 등 제출요구	■ 내부 가격결정자료에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이포함되도록 명확화	관세법 시행령 (*18.2.)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 제출범위에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추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후속 시행령개정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044-215-4453)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적용요건) '16.6.30. 현재 비정 규직 근로자를 '17.12.31.까지 정규직 전환 ■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요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 18.1.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 700만원 • 중견기업 : 500만원 ■ (고용유지기간) 1년 ■ (적용기한) '17.12.31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고용유지기간) 2년 【적용기한) '18.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신 설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대상)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대상 근로자)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 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상당액 × 50% • (적용기한) '18.12.31.	조세특례제한법 (* 18.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 (공제금액) 재고용후 2년간 인건비의 10% ■ (적용기한) 17.12.31.	 ■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중견기업 추가 •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 20.12.31. 	조세특례제한법 (*18.1.1)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이행후 복직 기업 세액공제 • (대상)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 (공제금액) 복직후 2년간 인건비의 10% ■ (적용기한) '17.12.31.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중견기업 추가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 (적용기한) '20.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 분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종 전	말라지는 내용 ■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대상 (①과 ② 요건 충족) 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② '17.6.30.기준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가능성 없는 체납액 ■ 적용대상자 (①~⑤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기준 미달자 ② '17.12.31. 이전 폐업 ③ '18.1.1.~'18.12.31. 중 사업자등록을신청하거나취업하여신청일현재 3개월이상근무 ④ 신청일 직전 5년이내「조세범처벌법」에 따른처벌·처분을받거나진행중인재판이 없을 것 ⑤ 신청일현재「조세범처벌법」에 따라진행중인 범칙사건조사가 없을 것 ■ 다음의경우납부의무소멸을취소한후체납처분속행 ・'17.6.30.기준 징수가능한다른 재산이 있었던경우 ・사업자등록신청후 1개월이내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지못한경우등	
		• 사업자등록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등 ■ 소멸신청: '18.1.1.~'19.12.31. 중 관할	조세법령운용과
		세법개정 보도자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면제대상) '18.1.1.~'20.12.31. 중 납세 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 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적용대상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조세특례제한법 ('18.1.1)
		■ 적용요건(①~③ 요건 모두 충족)	
		① (업종)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 위하는 벤처기업	
		② (수입금액)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신설	③ (R&D)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③ 또는 ⑥에 해당	
		- @ R&D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 10% 이상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특허권 보유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적용제외(벤처기업 및 출자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준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 나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사기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준「조세범처벌법」 에 따라 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있는 경우	(044-215-4153)
		■ 면제한도 : 1명당 2억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 공제한도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연부연납 기간 • 가업상속재산 비율 - 50% 미만시 2년 거치 5년 납부 -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납부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시 총 10년 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시 총 20년 납부(5년 거치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8.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 공제율(대통령령에 규정) • 음식점업: 6/106 - (개인): 8/108 - (유흥장소): 4/104 • 제조업: 4/104 • 그 외: 2/102	■ 공제율(법률에 상향) • 음식점업: 6/106 - (개인): 9/108 ('19.12.31까지) (나머지 세율은 현행과 동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가가치세법 (' 18.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 (044-215-4321)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 관세 감면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 관세 감면 적용대상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물품 	 ●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9. 12. 31.까지 ● 관세 감면 적용 관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조세특례제한법 ('18.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유연탄 과세기준·기본세율 ・30원/kg	■ 기본세율 조정 • 36원/kg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 탄력세율 •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 27원/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 33원/kg (5,500kcal 이상)	■ 탄력세율 조정 •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 33원/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 39원/kg (5,500kcal 이상)	개별소비세법 (' 18.4.1)
개별소비세율 조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2019 광주세계	ALM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감면대상: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대회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감면율: 관세액의 50% 	조세특례제한법 (' 18.1.1.)
수영선수권대회 관련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신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구 분	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흩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부양자녀 또는 홑벌이, 맞벌 • 30세 이상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최대) 77만원 185만원 230만원 가구요건 = 배우자가 있는 이 가구	부모 부양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 18.1.1)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 대한민국 국	려금 적용 제외 적을 보유하지 아니 음의 자는 제외 검을 가진 자와	한부모 외국인 합부모 외국인	 럭의 자녀를 양육하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어음 최장만기	■ 1년	■ '18. 5. 30.부터 6개월로 단축하여 시행 하고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1. 5월부 터 3개월로 단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18. 5. 30.)
단계적 단축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 어음만기 단축으로 경제활성화 및 기업 환경개선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 (일반 사인) • 연 25%	■ 모두 연 24%	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8. 2. 8.)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 연 27.9%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이 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2.8.)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이자제한법 시행령]
		〉 18. 2.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외국인관광객	■ 없음	■ 외국인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18. 1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71)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규모 점포 관리비	■ 관련 규정 없음	 ■ 관리비 청구·집행내역 공개 ● 연 1회 회계감사 의무화 ● 행정기관 대규모 점포현황 관리·감독 	유통산업발전법 (' 18. 5월)
투명화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알림·뉴스〉 보도자료〉대규모 점포관리자 관리비내역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203-4822)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혼부부 전용구입	■ 대상 : 연소득 6천 이하 신혼 부부■ 우대 : 0.2%	■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 득 7천이하의 신혼부부 ■ 우대 : 최대 0.55%	기금운용계획 변경 ('18. 1월)
자금출시		☞기금포털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 대상 : 연소득 5천 이하 신혼 부부	■ 대상 : 생주택보유 경험이 없는 연소득 5천 이하 신혼부부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한도 : 수도권 1.4억원 수도권외 1.0억원	■ 한도 : 수도권 1.7억원 수도권외 1.3억원	('18. 1월)
신혼부부 전용전세 자금 출시	■ 대출비율 : 70%	■ 대출비율 : 80%	
	■ 우대 : 0.7%	■ 우대 : 최대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기금포털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	(044-201-3341)
	■ 없음	■ 대상 : 만 19세 이상 ~ 25세 미만	기금운용계획 변경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 한도 : 2천만원	('18. 1월)
		■ 주택 : 보증금 3천만원 이하임차전용면적 60㎡ 이하	
		☞기금포털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 특성에 적합한	■ 한도 : 720만원(월 30만원) ■ 상환 : 25%	■ 한도 : 960만원(월 40만원) ■ 상환 : 10%	기금운용계획 변경 ('18. 1월)
월세 자금 지원 강화		☞기금포털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아동이 있는 가구	■ 버팀목전세 2자녀 우대금리 없음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2자녀 양육 가구에 우대금리 0.2% 신설	기금운용계획 변경 ('18. 1월)
지원 확대		☞기금포털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국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장주식 대주주	■ 유가증권시장・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 (2018.4월) 1% 또는 15억원 (2020.4월) 1% 또는 10억원 코스닥시장 	기금운용계획 변경 (' 18. 4. 1.)
범위 확대	• 지분율 2%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	• (2018.4월) 2% 또는 15억원 • (2020.4월) 2% 또는 10억원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법령정보 〉법령〉개정세법해설(2017)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044-204-3492)
국내 주식 양도 소득세	■ 국내 주식 거래시 분기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국내 주식 거래시 반기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소득세법 (' 18.1.1.)
예정신고 횟수 조정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법령정보 >법령>개정세법해설(2017)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044-204-3492)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설	■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점) ■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으로 비정규 직 등의 사용비중이 업종별 기준비중의, • 0.5배 미만인 경우 +2점 •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점 •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점 •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점	조달청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 (최저임금법 위반은 '18.1.1, 기타사항은 '17.12.1.시행)
신인도 평가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 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464)
	 신규채용 우수기업 신인도 배점 상한 +3점 사회적기업 신인도 +1.7점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 신인도 +0.5점 	 ● 신규채용 우수기업 신인도 배점 상한 +7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 신인도 +2.0점 ●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 신인도 +1점 	조달청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 (*17.12.1.)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 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464)
최저임금법 위반자 입찰 감점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기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타. 고용 노동관련 법령 준수 • "B.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 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2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181.1)
		☞(참고) 조달청홈페이지〉조달청뉴스〉보도자료〉 2290번 고용·노동분야 사회적책임 조달 강화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16)

방송<mark>통</mark>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 도입(이용자정책국)	■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 추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2018년 상반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1)

02 교육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 일부만 국고 지원 ('17년 기준 '41.2%)	■ 전액 국고로 지원('18년 기준 100%)	'18.1월
전액 국고 지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초중고 교육급여	■ 초등학생 학용품비 미지원	■ 초등학생 학용품비 5만원 신규 지급	기초생활보장법 ('18. 3월)
지원 확대	■ 낮은 지원단가	■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등 항목별 지원 확대 및 학교급별 단가 차등화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524)
중·고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시작됩니다.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간이한 친생추정 배제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前 남편 만이 친생부인 소송을 통하여 친생추정 배제 가능	 어머니, 前남편, 생부(生父) 모두 가정법원의 하가를 받아 간이한 비송절차를 통하여 친생추정 배제 가능 	민법, 가사소송법 ('18. 2월)
절차 마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그고리이리이지 하듯	■ 국공립(3,129개소) * '17.11월 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 450개소 확충	영유아보육법 (2018.1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5)
MONLHO = TIO	■ '17년 보육료 동결	■ 보육료 : 9.6% 인상 - 부모보육료 2.6%, 기본보육료 21.8%	영유아보육법 (2018.1월)
영유아보육료 지원	■ 3월부터 인상	■ '18년 1월부터 인상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2)
	■ (해당 지자체)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 ■ (인접 지자체) 산후조리원과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폐지 ('18. 6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부족할 것 (신생아 수 대비 60% 이하) ■ (인근 공급초과지역) 공급이 충분한 지자체에 60분내 접근 이 힘들 것	지자체 산후조리원 입지 관련 세부 설치기준 삭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월 150만원	■ 월 160만원으로 지원 확대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고시 (' 18.1.1)
		☞(참고) 고용노동부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고시안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60%지원	■ 통상임금 80%로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 18.1.1)
		☞(참고) 고용노동부부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위기 청소년	■ CYS-Net 224개■ 청소년동반자 1,146명■ 청소년쉼터 123개소	 ■ CYS-Net 운영 226개 지역으로 확대 ■ 청소년동반자 1,261명으로 확대 ■ 청소년쉼터 130개소로 확대 	- ('18.상반기)
맞춤형 지원 확대		☞(참고)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전화 ☎(지역번호)1388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6278)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 서울·수도권 지역만 지원	■ 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 지원	- (' 18.1.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7)
청소년방과후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250개)	■ 방과후 아카데미 10개소 확충(260개소)	- (' 18.1.1)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참고) 지원문의 : 방과후아카테미 홈페이지 (www.youth.go.kr/yaca), 방과후아카테미지원단(02-330-831~4)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9)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6개 분야)	■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7개 분야)	청소년활동진흥법 (' 17. 9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 확대	■ 꿈드림센터 202개소	■ 꿈드림센터 206개소 확충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
	■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7개소	■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8개소	('18.1월)
		☞(참고) 지원문의 : 꿈드림 홈페이지 (www.kdream.or.kr), 청소년 전화 (1388)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9)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295호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315호 운영	- (2018년 상반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6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7개소 운영 ☞(참고) 지원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 -6394)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100 -6424,6426)
여성 고위공무원단·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최초 수립·시행('18~)	양성평등기본법 (2018년 1월)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200)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 시설종사자 위주 시스템 운영 • 국민은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 대국민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전환	- (2018년 1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확대	■ 1인당 지원금 월 2백77만5천원 ・생활안정지원금 월 백29만8천원 ・간병비 월 평균 백8만7천원 ・건강치료비 월 평균 39만원	■ 1인당 지원금 월 3백23만7천원 • 생활안정지원금 월 백33만7천원 • 간병비 월 평균 백12만원 • 건강치료비 월 평균 78만원	- (2018년 상반기)
	E6/12-1 2 6E 00 EE	E6444 3 86 70EE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100 -643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 전국 66개 시군구 운영	■ 전국 113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 ※ '18년 47개 시군구 신규 운영	- (2018년)
		☞(참고) 지원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 1577-933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3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영상삭제 등) 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도 상담, 무료법률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 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창구(gateway)로 운영 •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 (2018년 상반기)
		 방송통심의위원회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실시 전문적인 상담, 의료비, 무료법률서비스등 지원 ☞(참고) 지원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100 -6433)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 전국 47개소	■ 전국 61개소로 수행기관 확대 ※ '18년 14개소 신규 운영	- (2018.1.1.)
		☞(참고) 지원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 1577-9337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27)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저소득 한부모)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으로 확대	- (2018.1.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17만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18만원 지원 □ (참고) 신청 및 문의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상담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 go.kr) 온라인신청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5) (02-2100-6346)
	■ 정부지원비율(소득계층별) • 영아종일제: 30~70%	■ 시간제·영아종일제정부지원비율 (가형~다형): ('18)소득계층별 5%p상향 ※ 시간당 이용단가(돌봄수당):	(2018.1.1.)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 시간제: 25~75% ■ 시간제정부지원시간 (가형~다형): 연 480시간	('17) 6,500원→('18 안) 7,800원 ■ 시간제정부지원시간(가형~다형): 600시간 □ (참고)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 go.kr), 서비스제공기관(통합안내) □ 1577-2514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3) (02-2100-6344)

방<mark>송통</mark>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1113-111	■ 이동통신 3사 중 KT, LGU+만 시행 중	■ 미성년 자녀가 정보이용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부모가 알 수 있도록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이동통신	('18.1월)
미성년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실시 (이용자정책국)		3사 모두 시행 ※ KT 2006년 7월 시행 LGU+ 2017년 9월 시행 SKT 2018년 1월 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02-2110-1548)

04 보건·사회복지

통일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	■ 주거지원금 • 1인: 1,300만원 • 2인~4인: 1,700만원 • 5인 이상: 2,000만원	■ 세대별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 • 1인: 1,600만원 지원 • 2인~4인: 2,000만원 지원 • 5인 이상: 2,300만원 지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침 ('18. 1월)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02-2100-59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23)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내 휴지통 제거		■ 휴지통을 제거하고 여성화장실에 위생 용품수거함 비치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18.1.1.)
		■ 청소·보수를 위해 작업자 출입시 안내 표지판 설치	
		■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치, 남자 화장실 소변기가림막 설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374)
		☞(참고) 행정안전부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공중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1인당 연 6만원지원	■ 1인당 연 7만원 지원 <u>으로</u> 확대	- ('18. 2월)
지원금 상향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요정책〉 알기쉬운 정책〉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18)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 적용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장애(장해) 등급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18. 1월)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6)
입양, 장애호전 시 으조여그 스며이 아니	■ 입양 또는 장애호전 시 유족 연금 소멸	■ 입양 또는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되어, 입양 후 파양 또는 장애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 유족연금을 다 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국민연금법 제75조 ('18. 4월)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 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28일 국회본 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5개 직군	■ 24개 직군으로 확대	아동복지법 ('18. 4월)
신고의무교육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2-202-3435)
	■ 제한없음	■ 주 80시간(교육적 목적 8시간 연장가능) ■ 연속수련 36시간 (응급상황 시 40시간 가능)	전공의 특별법 (*17. 12월)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전공의 수련환경 주당 80시간 추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4)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 보건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체계 부재	■ 보건산업에 특화된 창업플랫폼 운영을 위한 전주기적인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보건산업 진흥원법 제6조
학원성 합시한센터 설치·운영(신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044-202-2905)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 (1분위) 122만원 • (2~3분위) 153만원	■ 소득하위 50%의 소득수준을 고려, 본인 부담상한액을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 으로 인하 • (1분위) 80만원 • (2~3분위) 100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04년 ~)
본인부담상한제	• (4~5분위) 205만원 • (6~7분위) 256만원	• (4~5분위) 150만원 • (6~10분위) 현행 유지	
	• (8분위) 308만원 • (9분위) 411만원 • (10분위) 514만원	■ '4014 421 401日⊑J JIŘI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 '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 질환만 지원	■ 전 질환으로 지원대상 확대(입원 시)	시범사업 실시계획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심 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성 인 정 시 지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사업은 '18.하반기 시행 예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 도화 시범사업 실시 (지원 확대)	■ 최대 2천만원까지만 지원	■ 입원의료비, 고가약제비 등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재산 수준, 질환 특성 등에 따라 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성 인정 시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8)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 134만원('17년, 4인가구)	■ 135.6만원('18년, 4인가구)으로 확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 7월 개정·시행)
최저보장수준 확대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3)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없음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 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건강권법 ('18. 4월)
있는 장애인건강 검진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5)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13세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기초수급가구 아동	아동복지법 제42조 ('18. 1월)
기소수급가구 아동 가입 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9)
국가 치매극복기술	■ 치매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연구 부재	■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연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 지원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배포예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치매관리법 제10조 ('18. 4월)
연구개발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2-202-2931)
	■ 장기요양 1~5등급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치매증상 악화	('18.1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언제시천중급 무급자는 시배중정 역와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이용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2) (044-202-3497)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192 만원	■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 최저보장수준: '17년 대비 (기준임대료)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18. 1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2.9~6.6% 상향,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8% 상향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정보마당>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2018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회과 (044-201-3359)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어촌거주 65세 이상 가구, 수급자(중위 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연간 최대 12일	('18.1.1)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경로당은 24일) 가사도우미 지원 * 가사도우미 업무 : 청소, 취사, 목욕보조 등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3)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세척제 등 복지부 공중위생법 (9종), 화장지 등 산업부 전기 생황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위생용품 관리법」(17종)으로 통합 관리	위생용품관리법 (' 18. 4월)
위생용품 관리	(3종), 일회용 포크 등 식약처 식품위생법(3종), 일회용 행주 등 비관리제품(2종)	☞(참고) 식약처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2018.4.18.)	식약처 위생용품· 담배관리TF팀 (043-719-1734)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 잔류물질 곤		■ 기준이 설정된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	■ 기준이 설정된 유해물질뿐 아니라 기준 미설정 유해 잔류물질에 대해서도 잔류 조사 및 위해평가를 통해 수산물 안전 확보	-
프로그램(N	IRP) 확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53)
	취급대장	■ 마약류제조·수입·도매·조제· 투약 기록·보관 (2년)	■ 마약류 제조·수입·판매·구입·조제·투약 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18.5월)
	보고내용	■ 취급사항 중 일부 보고 • (마약) 수입·제조·도매·조제 • (향정) 수입·제조	■ 취급사항 전체 보고 • (마약·향정) 수입·제조·판매·구입·조제· 사용·투약 등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보고시점	■ (수입·제조) 10일 및 연보고 (마약 도매·소매) 월보고	 ● (중점관리대상) 마약 및 식약처장이 공고한 항정신성의약품 성분 ● 취급한 날의 7일 이내 보고 ● 일련번호 정보 기반 보고 ■ (일반관리대상) 공고한 이외의 항정신성의약품 성분 ●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 수량 정보 기반 보고 	식약처 마약관리과 (043-719- 2894)
	보고방법	■ 행정포털, 온나라, 팩스 등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타		■ 시행일 : 2018. 5. 18.	

<mark>과학기술정보통신부</mark>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치안현장 맞춤형	■ '18년 신규	■ 치안현장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과제 지원	- ('18. 2월)
연구개발 시범사업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과 (02-2110-2413)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 정부 지정공고 후 신규신청	■ 필요기업에서 언제든지 신규 지정·신청 가능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뉴스·일 정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게시번 호797번 (공고 제2017-24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 고시 (* 17.10.26.)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기자전거를 정의하여	■ 없음	 전기자전거를 정의하여(자전거법 제2조 제1의2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 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것과 이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함 (자전거법 제20조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8.3.22.)
자전거에 포함		☞(참고) 행정안전부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 료〉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 도로 달린다/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 갖춘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26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업재해	■ 처벌조항 없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교사·공모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 17.10.19.)
	발생은폐 금지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3)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산업재해 미보고	■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중대재해 미보고 및 거짓보고 3,000만원 일반재해 미보고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17.10.19.)
	과태료 부과기준	3차 1,000만원 ■ 거짓보고 1,000만원	3차 1,500만원 일반재해 거짓보고 1,500만원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3)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12시간 간격의 해구별 예측 정보 제공	■ 3시간 간격의 해구별 예측정보 제공	-
상세한 바다날씨 정보 제공	o± ⁽¹¹⁰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날씨〉바다날씨〉 해상예보〉해구별 예측정보	기상청 해양기상과/예보기술과 (02-2181-0750/0661
기상청 방재업무	■ 非법정 교육으로 방재교육 수행	■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 담당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방재기상교육) 실시	기상법 (' 18. 4. 19.)
담당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기상법 35조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02-2181- 0435)
세분화된	■ 기상첨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서	■ 기상청 홈페이지 뿐 아니라 정보활용 취약	-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개시	비스 제공(*17)	계층을 위해 문자서비스 제공 등 더위체감 지수 정식 서비스 운영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02-2181-0928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도로 외 주·정 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5. (생략)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 제2조(정의) • 1. ~ 25. (현행과 같음) • 26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 10호	도로교통법 (' 17 10월)
	사항을 제공하 지 않은 경우 처벌의 근거 규정 마련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 27. ~ 33. (생략)	 • 27. ~ 33. (현행과 같음)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552)
<u>도로</u> 교통법	음주운전자 적발 시 견인의 근거	■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 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교통법 ('18. 4월)
개정내용	및 비용부담 규정 마련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
	특별교통안전 교육개편 및	■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u>도로교</u> 통법 ('18. 4월)
	긴급자동차 교육 신설	제1호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1. ~ 7. (생략)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 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 1. ~ 7. (현행과 같음) ② 다음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 18. 4월)
도로 교통법 개정내용	특별교통안전 교육개편 및 긴급자동차 교육 신설	2. 공동 위험행위,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1. 당전면 하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제1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 인 경우만 한정한다)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5.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
		〈신 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 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받은 사람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④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받아야한다. 	도로교통법 (* 18. 4월)
도로 교통법 개정내용	특별교통안전 교육 개편 및 긴급자동차 교육 신설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 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 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에 처한다.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 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 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 한다)까지 및 제5항, 제15조 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 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 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 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 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 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 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	• 1	도로교통법 (*18.4월)
도로 교통법 개정내용	특별교통안전 교육 개편 및 긴급자동차 교육 신설	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 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 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 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 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 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 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 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 반한 차마의 운전자		경찰청 교토기회과
		■ 제16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략) 〈신 설〉	■ 제1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통기획과 (02-3150-2253)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도로	특별교통안전 교육개편 및	■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② (생략)	■ 제163조(통고처분) ①	도로교통법 (* 18. 4월)
개정내용	고급자동차 교육 신설	■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 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 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 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 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 1. ~ 2. (생략) 〈신 설〉 ②·③ (생략)	■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내시장에 영향을	■ 일반심사 (심사기간 30일에서 최대 120일)	■ 간이심사로 전환 (심사기간 15일 이내)	기업결합 심사기준 (' 17년 12월말)
미치지 않는 해외합작 법인 설립심사 간이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044-200- 4364)
	■ 실손해배상	■ 고의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 부과	제조물책임법 ('18. 4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	■ 원고가 ①제품 결함 및 ②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 직접 입증	■ 정상적으로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입증 시, 결함 존재 및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 추정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 소식〉보도〉 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8)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1)
통신판매업	■ 제17조(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 제17조(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17. 12월)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u> </u>	부한다)하여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67)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 33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1단계 서비스를 개시	■ 상품·안전 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2018년 1월부터 본격 운영 ■ 57개 기관과의 추가 연계를 통해 내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본격 운영 개시 (' 18. 3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 본격 운영 개시		부터는 더욱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 (044-200-4912)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 경력증명서 발급	■ 병 전역시 전역증(종이, 전자) 발급	■ 병 전역시 전역여부만 확인하던 전역증(종이, 전자) 대신 군 복무간 성실성을 확인할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개인희망시 전역증(종이, 전자) 발급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 (*17. 12월)
군 성극증정시 결합		가 게인의당시 선역공(공이, 전자) 결합 가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8)
		 대상: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 신뢰도 제고 및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인원 위촉권자: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수여범위: 명예 하사~대령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 ('17. 9월)
민간인의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부여	신 설	■ 임기: 위촉된 날부터 2년(재위촉 가능)	
위촉 및 명예계급 부여		 권리·의무의 한계: 명예계급은 개인의 명예에 한정되며, 군무에 종사할 권리· 의무는 없음 복장착용 및 계급장 부착: 군 관련 대내·외 행사시에만 가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학위취득 및 격오지 근무	■ 각 군 자율로 시행	 학위·학점 취득자 장기복무·진급 심사시 우대가점 부여 격오지 근무자 그 경력기간만큼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우대가점을 부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17. 12월)
부사관 인사우대		■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자격 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가점을 부여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28)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	■ 여군의 신체적 특성과 부대환경 을 고려하여 여군 보직 제한 규정 정립	■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여 양성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 체계 정립 (~' 17. 12월)	국방인사관리훈령 ('18.1월)
		■ 미래지향적 여군 인사관리 제도 정립 (~' 18.3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병장기준 216,000원)	■ 병장 기준 405,700원으로 인상(87.8%)	군인보수법 ('18. 1월)
병 봉급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원기년 메고 U.=	■ 북한군 개량탄(강심탄)까지 방호가능한 방탄복 지급	■ 북한군 철갑탄까지 방호가능한 방탄복 지급	('18. 3월)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지급	* 탄환 관통력 : 권총탄 → 보통 탄(납탄)→ 개량탄(강심탄) → 철갑탄 순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7)
병사자기개발	■ 병사자기개발비용 미지급	■ 병사자기개발비용 지원 시범실시 (10개부대 2,000명, 1인당 5만원)	('18. 4월)
비용 지원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02-748-5184)
취업자비 지크그의 미	■ 진로교육 120회, 1.2만 명	■ 진로교육 대상인원 확대 (350회, 3.5만 명)	국방전직지원업무훈령 ('18. 2월)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	■ 1:1상담 미시행	■ 1:1 취업상담 최초 시범 시행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02-748-6635)
	■ 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데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 이용시 치료비 전액(본인부담금+건강	 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 경우에도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급 	군인연금법 ('18. 2월)
공상 직업군인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보험부담금)을 개인이 부담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군인연금법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7)
예비군훈련보상비	■ 동원훈련 보상비: 1만원 ■ 예비군훈련 교통비: 7천원	■ 동원훈련 보상비: 1.5만원 ■ 예비군훈련 교통비: 116.4원/km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18. 3월)
인상	11-1C-C-C-40-91-7-C-C	(30km 초과 시)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없음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께 생활지원금을 매월 지급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지급신청을 받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 하여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 인 경우 468천원, 70% 이하인 경우 335 천원 지급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0)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공지사항〉독립유공 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팝업창으로도 확인	
	■ 60% (참전유공자)	■ 90%로 확대	
고령 참전유공자		☞(참고) 국가보훈처홈페이지〉예우보상〉지원안 내(의료지원)〉2018년 달라지는 의료 지원제도	참전유공자법시행령 (' 18. 1월)
진료비 감면율 확대	■ 20% (7급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 10%로 완화	국가보훈처
	경도판정자)	☞(참고) 국가보훈처홈페이지>예우보상>지원안 내(의료지원)>2018년 달라지는 의료 지원제도	보훈의료과 (044-202-5644)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유지·관리비 지원 (매년 기당 20만원)	독립유공자법제26조의2
유지·관리비 지원	신설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044-202- 5585)
새게고라 그것이고다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0만원 상당 장례 지원	보훈업무시행지침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신 설	00 04I ME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044-202- 5585)
위문품 지원 확대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태극·을지 무공수훈자(153명)까지 확대	보훈업무시행지침
	■ 보훈병원 및 복지시설 입소자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044-202-5588)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전까지	■ 병역법 시행령에 병역의무 대상자 별 각각 명시	■ 병역법 제6조2항 및 3항 신설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로부터 30일전까지 송달 •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일전까지 송달 • 천재지변, 전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송달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병역법 제6조 ('18. 5월)
송달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15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9조(장기대기기간) ① 영 제135조제8항에 따른 장기 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 자의 대기기간은 제48조의 장기 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4 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9조(장기대기기간) ① 영 제135조제8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은 제 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	병역법 제65조 및 영135조 ('18. 1월)
면제기간 단축	EVI 04 E 71 B — E 24.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7
국무위원 후보자 등	■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 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 사항만 공개	■ 국회에 임명동의안, 선출안 또는 인사 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공개	병역공개법 (' 18. 5월)
인사청문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병역청 병역공개과 (042-481-2775)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Q1 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연구개발	■ 방산업체만 지원 가능	■ 방산업체 뿐 아니라 일반업체도 지원	방위사업법 (*18.3월)
방위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 6474
용자 지원 대상 확대	융자 지원	선자금 사지원 신설	■ 일반업체의 연구개발 참여 지원사업에 대해 최우선 지원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18. 1월)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 6474
			■ 분할된 신설업체는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인증 신청	방산원가관리 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인증업체 분할 시 신설	신 설	■ 인증요건 확인 후 인증(유효기간: 분할일 ~ 분할하는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일)	('18.1월)	
업체의 인증절차 마련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 행정규칙>(개정내역)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02-2079-4271)

외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특별한 경우에만 로마자 성명 표기의 변경을 허용	■ 미성년자의 로마자 성명 표기를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 허용	여권법 시행령
여권 수록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 한글 성명과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 간 발음의 유사성 기준을 비공개	■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간 발음의 유사성 기준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공개	('17.12월)
개선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외교부 여권과 (02-720-2736)
기조심기 돼드 꿰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자에게는 거주여권 발급	■ 거주여권이 폐지되고 대신 일반여권 발급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	여권법 시행령 (' 17. 12.21)
거주여권 제도 폐지		입법예고〉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외교부 여권과 (02-720-2736)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	■ 집체교육	■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으로 실시 ☞(참고) 행정안전부홈페이지〉뉴스·소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18. 1월)
		보도자료〉보도자료〉승강기 안전관리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받는다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5)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 국내 주소 관리 방법 없음 (거주불명등록 등)	■ 해외체류신고로 국내 주소 관리 가능 ☞(참고) 행정안전부홈페이지〉뉴스·소식〉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규칙 ('17.12.3.)
관리방안 마련		보도자료〉거주불명등록되는 불편 해소 를 위한 해외체류신고, 12월 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842)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외국인 배우자 등 주민	■ 배우자(국민) 동반하여 읍·면·동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시 등본 하단에 별도 표기	■ 신청 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동일하게 표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18. 3월)
외국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록표 등본 표기 개선		☞(참고) 행정안전부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842)
주민 등록표 등본 표기	외국인 배우자 등 주민	■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인터넷(정부24)으로도 발급 신청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18. 3월)
	등록표 등본 발급 개선		☞(참고) 행정안전부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842)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국관광	■ 다양한 인증주체에 의한 개별 인증제 운영(84개)	■ 관광분야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관광진흥법 제48의10 신설)	관광진흥법 제48조 개정 ('18.상반기 예정)
품질인증제 시행		■ 내·외국인 관광객 접점에 따른 분야별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숙박, 쇼핑 등 분야별 관광경쟁력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최저임금 인상	■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 1,573,770원 (7,530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8.1.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년 미만자에 대한	■ 1년 미만 재직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2년차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전년도 사용일 수 만큼 차감	■ 1년 미만 재직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 도 2년차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미차감	근로기준법 제60조 ('18.5.29)	
1년 미만자 및 육아 휴직자에	년 연차휴가 역차휴가 확대 유아 변화 전 기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044-202-7549)		
대한 연차휴가 확대	육아 휴직자에 대한	■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 ('18.5.29)
	"는 연차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044-202-7549)
통상적 경로		■ '사업주 지배관리 하 출퇴근 중 사고' 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1월)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 에 대하여 산재보상			취약 노동자「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안」입법예고 (10.25~12.3)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
소규모 기업	<u>업</u> 의 노동자	■ (지원대상 월 보수) 140만 원 미만 ■ (신규가입자 지원 비율) 60%	■ 190만 원 미만 ■ 1~4인 90%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징수법 ('18.1월)
사회보험료			■ 5~9인 8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0)
최저임금 감액규정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수습근로자는 수습사용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감액 가능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계약 기간 관계없이 최저임금 감액 없이 100% 적용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사용 중에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18.3.20.)	
개정			있는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001110111	지원기간	■ '17.12.31 지원기간 종료	■ '20.12.31 지원기간 연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18. 1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연장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지원금액	■ 지원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분기별 18만원	■ 지원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20년까지 30만원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시 ('18. 1월)
인상	인상		(20년) 30년년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장애인 고용	2	■ 812,000원	■ 945,000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00호 ('18. 1월)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4)
		■ 중증남성 :40만원	■ 중증남성: 5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00호
장애인 고용	R 장려금	■ 경증장애인근속연차별 장려 금 감액	■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18. 1월)
지원확대		• 경증남성: 15~30만원	• 경증남성 : 30만원	
		• 경증여성: 20~40만원	• 경증여성 : 40만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4)
		■ 6급 장애인 4년간 한시지원	■ 6급 장애인 한시지원 폐지	(044-202-7404)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	■ 사회적경제기업50만원 지원으로 확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18. 1월)	
확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4)
부정수급 형사고발	성사고 발	■ 부정수급액 300만 원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	■ 부정수급액 관계 없이 형사고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8. 1월)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적립된 기본재산은 해당 사업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외에는 목적사업에 사용 할 수 없음	■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 인 기금법인이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까지 복지수혜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 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46조4항3호 ('18.2.1.)
기본재산 사용 허용		금액을 5년마다 사용 가능 *하청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원청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원 · 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제외: 국가 등 공공부문, 고소득 (과세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지원요건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고용 유지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 18. 1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044-202-7353)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시스템 구축비용을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 내 지원	■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18. 1월)
설치비의 지원비율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영업자 고	1용보험	■ 창업 후 1년까지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가능	■ '18.1.1. 이후 창업 후 5년까지로 가입 요건 완화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징수법 ('18. 1월)
가입요건 온	반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66)
측정·특검	비용지원	■ 측정(1.6만개소)	■ 측정(5만개소)	산업안전보건법 ('17.10.19.)
수혜 사업장	당 확대	■ 특검 (10만명, 10인 미만 사업장)	■ 특검 (35만명,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202-7747)
		■ 1일 5만원(월 30일 기준 최대 150일 지급)	■ 1일 6만원으로 인상(월 30일 기준 최대 180일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18. 1월)
실업급여 1 상한액 인성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 e-고용노동뉴스〉 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4)
고용보험 미	비적용자	■ 지원 대상에 미포함	■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직업훈련 지원 신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18.1월 예정)
직업훈련 지	1원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21)
	청년구직	■ 없음	■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 지급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 ('16.12월)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수당 확대	촉진수당 지급		☞(참고) 비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동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취업성공	■ 최대 100만원(6개월 근속시))	■ 최대 150만원(12개월 근속시) • 3개월(30만),6개월(40만),12개월(80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 ('16.12월)
	수당 지급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 시간당 임금단가 6,520원	■ 7,580원으로 인상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 훈련,예규고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00호 ('18. 1월)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4)
생활안정자금융자 혼례비 융자한도액	■ 융자 한도 1,000만원	■ 융자 한도 1,250만원으로 상향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18.1.1.)
상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구직자 및 재직자 대상프로그램 ■ 구직자 및 재직자 대상프로그램	■ 재직자의 경우 연령별(40대-50대-60대) 로 세분화·전문화 ■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워크넷 PC 및 모바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8.1월)
프로그램 다양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0)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훈련 등 개인사유로 인한 근로 시간단축으로 임금 감소시 지원 제외	■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개인사유로 인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 감소 시 지원에 포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18. 1월)
지원 사유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통계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통계 승인마크	新名(國名)% (國名)%	THE SOL	통계법 시행규칙 ('18. 2월)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디자인 개선	승인(협의)번호 제 호	☞(참고) 통계청 홈페이지〉새소식〉보도자료〉국가 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통계청 통계조정과 (042-481-2065)
	국가통계 승인마크	■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 서식에 표기	■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 및 보 도자료, 통계간행물, DB 등 통계결과 공 표 시에 표기	통계법 시행령 (' 18. 2월)
	활용 확대		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통계청 통계조정과 (042-481-2065)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 (www. weather.go.kr)" 제공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 go.kr) 한 사이트에서 기상행정 정보 및 날씨정보 제공	■ www.weather.go.kr 을 통해 종합날씨 정보 제공 • 첫 화면 경량화 및 메뉴 구성 개선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 기존 www.kma.go.kr 은 기상행정정보 제공	-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02-2181- 0415)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alog H crol Hind	■ 지상파 UHD 수도권 본방송	■ 지상파 UHD 광역권 및 평창·강릉 일원 으로 확대	('17.12월)
광역시 단위 UHD 방송개시(방송정책국)		·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상파UHD로 시청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6)
	■ 24시간 요금제	■ 마지막날 12시간 단위 요금제 신설	('17.12월)
해외로밍제도개선 (이용자정책국)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02-2110-1542)

국민권익위원회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5대 분야 •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 5대 분야 이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추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8.5.1.)
공익신고 대상 분야	■ 279개 법률 위반사항	■ 284개 법률 위반사항으로 확대	
및 법률 추가		• 채용절차법, 자본시장법,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중소기업창업법 추가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시행령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공익신고자 보복시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044-200-7754)
	■ 보호조치 신청기간	■ 보호조치 신청 기간	
	• 불이익 조치가 있은 날부터 3개월	•1년으로 연장	통계법 시행령 (' 18. 2월)
	■ 구조금 제도	■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	
공익 신고자	• 보상심의원회 심의·의결 이후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전	
보호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신설	통계청 통계조정과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042-481-2065)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공익신고자 보복시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공익신고 대상 분야 및 법률 추가 공익 신고자	■ 5대 분야 •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 279개 법률 위반사항 □ 보호조치 신청기간 • 불이익 조치가 있은 날부터 3개월 ■ 구조금 제도 • 보상심의원회 심의·의결 이후	■ 5대 분야 -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 279개 법률 위반사항 ■ 284개 법률 위반사항으로 확대 - 채용절차법, 자본시장법,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중소기업창업법 추가 □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공익신고자 보복시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 보호조치 신청기간 - 불이익 조치가 있은 날부터 3개월 ■ 구조금 제도 - 보상심의원회 심의·의결 이후 □ 건급 구조금 제도 도입 - 보상심의원회 심의·의결 이후 □ 건급 구조금 제도 도입 - 보상심의원회 심의·의결 이후 □ 장벌적 손해배상 제도 신설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나	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빵, 과자 등패스트푸드위주 간식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I 표준규격 상(上)품 이상(150g, 주 1회, 연간 30호	학생 1인당 1회	식생활 교육지원법 ('18.5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간식비는 보호자 부담	■ 과일 간식비는 100% 정 50%, 지방비 50)	부 지원(국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0 보도자료〉과일간식 공		(044-201-2254)
		감면대상	농업농업진흥진흥지역 안지역 밖	
		마 을공동 운영 농산 어촌 체험시설	100 100	농지법 시행령 (' 18. 2월)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0 50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신설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	0 50	농림축산식품부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 정 〉 법령정보 〉 훈령· 호797번 (공고 제201	예규·고시 > 게시번	농지과 (044-201-1732)
외식 창업·경영 역량	■ 창업 인큐베이팅 1개소, 참가자 부담 50%, 이용 기간 4주	■ 인큐베이팅 시설 확대 (5 부담 축소(30%), 이용기 개월)		농림사업시행지침 ('18.1월)
강화 지원		■ 외식경영주 대상 경영역	량 강화교육 지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0 자료〉청년 외식창업 인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4)
		■ 농업법인이 만18세~39세이하 미취업 청 년을 단기 채용시, 1인당 월100만원 한	월100만원 한	- ('18.1월)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신설	도, 최대 6개월 간 인건비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 자료〉농업법인 청년 추) 지>알림마당>보도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을 선발, 영농 초기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급(월 최대 100만원)	- ('18.1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 설	■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영농 전과정을 본 인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영실습 임대시 설 지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청년농업인육성대책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2)
		■ 논에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쌀 생산조정제 시행 ('18.1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신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쌀 생산조정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2)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 인증종류별 차등지급 ■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3년) 제한	■ 인증종류별·품목별 지급단가 차등 인상 • 논 1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10만원, 밭(과수) 20만원 인상 ■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3년) 폐지로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시행지침 (*18.1월)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 폐지		계속지급 가능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가금) 보조30%, 융자50, 자담20	■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시 지원 • 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	- ('18.1월)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 서〉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 농지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35천원/3.3㎡ 한도내 지원	■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55세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게 3.3㎡ 당 45천원 지원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시행지침 (' 18.1월)
첫 농지취득 지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7)
농식품 벤처·창업		■ 농식품 벤처·창업 청년인턴 선발·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8.3월)
인턴제 실시	신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60)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 영농도우미 단가: 6만원 ■ 3일이상 교육 참여시 지원	■ 단가: 7만원■ 2일 이상 교육 참여시 지원	- ('18.1월)
농업인에게 영농 도우미 지원 확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축산차량	■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 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쌀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 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18.7월)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 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추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 법령정보〉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 53개 품목	■ 57개(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 버 섯 추가)	- ('18.2월)
농작물재해보험	■ 종합위험 보장방식 사업범위 : 사과·떫은감(30개 시·군)	 사과, 떫은감 종합위험보장방식 사업범위 전국으로 확대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할인	■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추가할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사업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지연금, 맞춤형	■ 종신형■ 기간형	□ 인출형(종신형 신규상품)□ 경영이양형(기간형 신규상품) 출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7.11.14 개정)
신규 상품 출시	■ /IUS	■ 63이 3성(기단성 단ㅠ3놈) 출시 ☞(참고)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농지의 타용도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농지 훼손이 미미하고, 농한기 등에 단기 간 사용하는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농지법 시행령 (' 18.5월)
일시사용 신고제 도입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 법령정보〉농지법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9)
여성농업인(배우자)	■ 공동경영주 등록 시 경영주의 동의 필요	■ 공동경영주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 경영여부를 표기 하도록 개선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18.1월)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참고) 농식품부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 행정·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80)
		■ 육묘업 등록제 : 일정한 시설+16시간 이상의 육묘교육과정 이수 후 등록 신청	종자산업법 시행령 (' 17.12.28)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신설	■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 판매 시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 법령정보〉종자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해외농업·산림자원	신 설	■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통지 * 단,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18.1월)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U' 'B	교을 구니한 것으로 한구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 법령정보〉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중소 식품기업 대상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신용보증(최대 5천만원) 및 보험료 지 원(50%)	식품산업 진흥법 ('18.3월)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지원	신설	* 수출바우처 사업 미선정자는 기존 8개 사업에 대해 개별 신청 가능 [57(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 지원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0)
농식품 수출업체	■ 각 사업별로 지원신청 및 사업 자 선정	■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바우처 8개 대상사업을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	- ('18.1월)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6)
	■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 장묘업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동물보호법 (*18.3.22)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 동물생산업 신고제	■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미신고·미등록시 100만원이하 벌금	■ 미허가·미등록시 500만원이하 벌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동물보호법	(044-201-2362)
	■ (지정 평가 기준) 전통성, 정통 성, 경력 및 활동상황, 보호가치	■ (지정평가기준) 산업성, 윤리성 추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18.1월)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 식품명인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 위임 규정 부재	■ 농촌진흥청에 위임하는 규정 제정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 정보〉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축산 자재 기술 개발 및 농식품 안전성	신설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 신규 지원 ('18년 10억원)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신규 지원('18년 34억원) 	농림축산식품연구 개발사업 시행지침 ('18.1월)
확보를 위한 관련 분야 R&D 확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사업안내 서비스〉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 연간 17~18개소	■ 전 군지역(82개)으로 확대	_
	■ 지자체 자율성 및 권한 제한적	■ 이용요금 등 지자체 자율선정 추진	('18.1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확대·개편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 서〉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8)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선택사항	■ 창업기업에 신규과제의 40% 이상 의무할당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5)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항만 예선제도 개선	■ 부두여건에 따른 등록 제한 규정 부재■ 운용선령 부재	 예선 정계지가 부족할 경우 등록 거부 가능 노후 선박은 자동 퇴출되도록 장치 마련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20.11.1)부터 시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18. 5월)
	■ 예선운영협의회 예선배정 방법 결정	■ 업체가 자율적으로 예선배정방법을 선택 (다만, 업체간 공동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자에게 공표	
	■ 적정 예선 척수 관리 수단 부재	■ 항만별 적정 예선 척수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등록제한이나 조건 부여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2)
	■ 운용선령 부재	■ 예선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대 또는 불이익 조치 가능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 신고 업무가 간소화 됩니다.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개별 운영 (3개청, 4개 PA)	■ 해수부 내 통합센터 운영(전국 단일 헬프데스크 등)으로 민원창구 단일화 및 신고업무 간소화	통합 Port-MIS 운영 개시 ('18.1.29.)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6211)
수산직불금 지원단가 인상	■ 55만원 지원	■ 60만원 지원으로 확대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수산직불금 지원단가 5만원 인상	- (' 18.1.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3)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7만원 지원	■ 10만원으로 지원금액 확대	(' 18.1.1)
어업도우미	■ 자부담 30%	■ 자부담 비율을 20%로 소폭 인하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 〉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 등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지자체
수산경영인 육성사업 (융자) 지원한도 상향	■ 단계별(누계) • 어업인후계자 1억원 • 전업경영인 2억원 •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 선정 단계별 융자 지원액(누계) 상향 • 어업인 후계자 2억원(증 1억원) • 전업경영인 2.5억원(증 0.5억원) •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전년과 동일)	(' 18.1.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3)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외항화물운송사업 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해운법 ('18. 1월)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의 보조금 지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민간자격(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유사자격 보유 기술자(식물보호 기사, 산업기사)가 나무병원을	■ 국가자격(나무의사 등)을 갖춘 기술자만 나무병원 설립 및 수목진료 가능	산림보호법 ('18.6.28)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설립하여 수목진료 실시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산림보호법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 휴게음식점, 임산물판매장 설치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 시설의 규모 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12월)
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	신설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000㎡ 이하까지 허용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 이하까지 허용, 다만 휴게음식점은 연면적은 200㎡ 이하로 한정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참령 개정안 (참절) 하지하는 총 사이를 함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106)
산림보호구역 내	■ 3만m² 미만	■ 10만m² 미만	산림보호법 시행령 ('18.1월)
사설수목장림 설치면적 확대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 학교시설:「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 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 에 규정된 학교시설	산림보호법 시행령 ('18.6.28)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신설	 ► 농로시설:「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 1항 농어촌도로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산업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와「방위사업법」제3조의 방위산업 및「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의 항공우주산업 시설 ■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법률」제2조의 국방・군사시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신설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에 필요한 운반장비·기자재 지원 ■ 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백두대간보호지역 거주기간(3년) 설정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18.1월)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042-481-8815)
귀산촌인 창업자금	 ● 융자총규모 • 240억원 ● 융자한도 • 정착지원 50백만원 	 ● 융자총규모 • 340억원 ● 융자한도 • 정착지원 75백만원(목조주택 100백만원)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18.1월)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 공지사항〉2018년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안내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임업인경영자금	AI M	 ■ 자금용도 : 임업인 경영비 지원 ・산림경영, 임산물의 생산·이용·가공·유통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경영비 ■ 융자조건 : 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융자기간 2년, 한도 1천만원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18.1월)
(융자금) 신설	선 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 >공지사항>2018년 임업인경영자금 지 원 안내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지관리법 상의	11.44	 산지에서의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 처리결과 또는 지연 사유를 신고자에게 미통보시 신고가 수리 된 것으로 간주 	산지관리법 (' 18.6월)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	신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예고〉산지관리법 개정안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 목재제품명인이 만든 목재제품 등에 한하여 우선구매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 결하려는 경우 국산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여야 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8.5.29)
등 우선구매 의무화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한 관한 법률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4)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18. 2월)	
정비에 관한 시행	: ¬'		관한 특례법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7)
	항공사진 공개지역	■ 일부지역	■ 공개대상 25cm급 공개지역 국가보안 기관 통보 일부지역에서 전국확대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국가공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17.12월)
항공사진 해상도	확대		정보보안관리규정(*17.12월말 게제예정)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62)
25cm급 전국공개 확대 국제행사 지역은 25cm II		■ 제공판매 불가	■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제공판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17.12월)
	정밀한 항공사진 제공판매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62)
조정금 분할	갈납부	■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기한 및 납부 횟 수: 6개월, 3회 이내	■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기한 및 납부 횟수 : 1년 이내, 4회 이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7. 10월)
기준 완화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044-201-4652)

10 산업·에너지·자원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인 영세 소상공인	■ 전액 본인부담	■ 월 고용보험료의 30% 지원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1.1)
고용보험료		자료)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 험료를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361)
정책자금 제조현장		■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 신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	'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7.12월)
스마트화자금 신설	신설	법령정보〉공고〉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0000)
	■ 공제금수급계좌 없음	■ 공제금수급계좌를 통해 가입자의 공제금 이 채권자의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7.12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공제금 수급권 강화			동법시행령 ('18.6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042-481-3952)
	■ 제조업 중심의 63개 산업	■ 지역주력산업을 48개로 조정하고, 이중 융복합 산업을 35개로 비중 확대	
지역특화(주력) 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 산업	■ 지역기업에 일반적인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중추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스타기 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전담 PM의 매칭에서부터 사업화를 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17.12월)
		☞(참고)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14개 시·도 지역주력산업 개편 방안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모집시기 연초 집중	■ 모집시기 분산·확대	
중소기업 R&D 수요자	■ 과제중단 불가, 최종평가 2가지	■ 과제중단제, 최종평가 유예제 도입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18. 上)
친화적 선진화		☞(참고)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 자료>중소기업 R&D 혁신방안 발표(예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2-481-4404)
	■ 모바일환경 제공불가	■ 모바일환경 제공 가능	
			-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중소벤처부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528)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검사대상기기 사고 시 검사대상 기기 설치가가 사고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018. 5. 1)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203-538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모든 어린이 활동	■ '09년 이전에 설립된 소규모 사 립 어린이집, 유치원 적용 제외	■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확대	환경보건법 (*18.1.1)	
공간에 환경 기준 적용	병안전관리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환경보건법(2016.1.27. 공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자동차 배출가스	교체·환불·	■ 부품교체만 가능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기 판매된 경우 부품교체 외에도 차량의교체·환불·재매입이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7.12.28)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 환불· 재매입	재매입 기준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	과징금 부과율 및	■ 부과율 매출액 3%, 상한액 100억	■ 부과율 매출액의 5%, 상한액 500억 • 부정인증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배출가스 증감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 등 기준 세분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7.12.28)
과 <u>율</u> 과 상한액 상향	사한액 상향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오염시 통합관리 대 확대		■ 17년도 업종(발전·증기·폐기물 처리업) 시행	■ 18년도 적용 업종(철강·비철·유기화학) 추가 시행 ☞(참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 (http://ieps.nier.go.kr)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21년까지 단계적 시행)
77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 없음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 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거친 후 판매하여야 함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17.12월)	
양진 후 판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없음	■ 유해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용· 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하는 자는 시약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7.12월)
시약 판매시 고지의무 신설 및 시약판매업 신고 의무화		■ 유해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 할 경우에는 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②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	
		• 고지 방법은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면 으로 고지하고, 판매장 입구나 인터넷 홈페 이지에 추가적으로 게재하여야 함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2)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	
유해화학물질	■ 없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일정 기간* 이 상 가동중간하려는 경우에는 휴·폐업신고 와 동일하게 1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함 * 6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7.12월)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신고하도록 입법예고 중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2)
저공해자동차 표지	■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제출	■ 증명서 제출 불필요, 전산으로 확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18. 1월)
발급 간소화		☞(참고)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http://hybridbonus.or.kr)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044-201-6885)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인하	■ 100만원 지원	■ 50만원 지원으로 축소 □ 50만원 지원으로 축소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 자료〉(참고)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2018년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8.1.1)
1-11-11-11-11-11		예산,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044-201-688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 부재	■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18. 4월)
작성, 공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자원순환	■ 없음	■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별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실적 점검 및 평가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자원순환기본법 ('18. 1월)
성과관리제도 시행		시행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4)
순환자원 인정제도	■ 없음	■ 사업장별 신청을 받아 환경성, 경제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 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	자원순환기본법 (' 18. 1월)
시행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매립·소각 처분	■ 없음	■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매립·소 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 한 재활용되도록 유도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	자원순환기본법 ('18. 1월)
부담금 도입		(점고) 완성구 홈페이시/필담·홍보/보도·해정/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 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온실가스 통계관리	■ 국무조정실	■ 환경부(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이관)	녹색성장법 시행령 (*18.1.1)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044-201-6960)
	배출권 거래제	■ 기재부 총괄, 부문별 관장부처 집행	■ 환경부 총괄·집행 일원화 • 외부사업은 부문별 관장부처 체계를 유지하여 감축사업 활성화 유도 ※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배출권 거래제 협의체' 참여를 통해 제도 운영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18. 1. 1)
			내실화 ☞(참고))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044-201-6960)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		■ 유지기준 :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중 석면, 오존이 미세먼지(PM2.5), 곰팡이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18. 1월)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뉴스·공지〉 보도·해명자료〉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7)
탄소포인트제 신규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조정		■ 가입일 다음 반기부터 인센티브 산정 시작	■ 가입일 다음 월부터 인센티브 산정 시작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18. 6월)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044-201-6673)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환경 오염사고	■ 임의	■ 선박·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지정 의무화	해양환경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8. 6월)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선박입출항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안전법 등 해수부 법률 9건, 국회통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문화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의 수입·반입 신고	■ 관련 규정 없음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2017년 11, 28일 공포	문화재보호법 (*18.5.29.)
의무화		(시행일 : 2018. 5. 29.)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042-481-4981)